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077 호

2024. 6. 7(금)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1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2호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3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6호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3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7호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3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8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4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9호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4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0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4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1호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2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4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3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4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5호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6호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0

회								
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8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7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1호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73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76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62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3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177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4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97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11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2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1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12

훈 령

강원특별자치도 훈령 제191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218
강원특별자치도 훈령 제191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238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39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44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245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7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고시	27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8호	섬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세목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273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9호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277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51호	원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설치(변경)인가 고시	278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8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280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86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286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95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87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4-301호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수립 고시 288
춘천시 고시 제2024-31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324
원주시 고시 제2024-18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원주홍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327
원주시 고시 제2024-188호	원주 도시관리계획[햇빛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33
원주시 고시 제2024-19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706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37
원주시 공고 제2024-1569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20호, 중로2-30호)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351
원주시 공고 제2024-158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2-6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 357
강릉시 고시 제2024-19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8호선, 중로3-50호선, 중로3-51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59
강릉시 고시 제2024-20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369
강릉시 고시 제2024-202호	강릉시 회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70
강릉시 고시 제2024-203호	강릉시 회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4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73
동해시 공고 제2024-715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어달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375
횡성군 고시 제2024-124호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3-41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377
영월군 고시 제2024-105호	영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80
정선군 공고 제2024-668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사업(철도, 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384
양양군 고시 제2024-61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386

조 례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5.)에서 의결된 강원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1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 조례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명하거나출연금”을 “명하거나 출연금”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2호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토지등소유자”를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토지주택공사등”을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가목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를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단독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세대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제다목4)”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나대지”를 “나대지(裸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3조제2항제2호제가목”을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8호”를 “법 제22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1호”를 “영 제26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27조 제2호”를 “영 제2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27조제4호”를 “영 제2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7호제가목” 을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의 공급” 을 “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합” 을 “경합(競合)” 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법 제49조제7항” 을 “법 제49조의2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9조제9항” 을 “법 제49조의2제5항” 으로, “100분의 30” 을 “100분의 20” 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6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장·군수 소속으로 설치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절차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3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행정국·특별자치추진단·경제국·산업국·문화체육국·복지보건국·농정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관광국”을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행정국·특별자치추진단·경제국·산업국·문화체육국·복지보건국·농정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관광국·해양수산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 17. 국가 사무이양·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 18.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9.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3호 중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를 “국외본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 청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 20. 디지털 혁신 및 융합 사업 발굴, 정책 추진
- 21. 정보문화기술·소프트웨어 융합·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22.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운영
제1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10.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9.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11. 자연경관영향 협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핵심광물 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20조제10호 중 “경기장” 을 “유산 마케팅 및 경기장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 카” 를 “삭도” 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해양수산물) 해양수산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양수산물 정책의 종합기획·조정
- 2. 수산물단체 지도·감독
- 3.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허가 처분
- 4.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조정
- 5. 어항시설·사용허가·사후관리 및 감독
- 6.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7.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 수립
- 8.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 9.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 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 1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 1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 13.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 14.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승인·시행
- 15.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시행
- 1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 17.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제21조제5호 중 “의무소방대” 를 “사회복무요원” 으로 한다.

제39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4호 중 “해양수산물정책관” 을 “해양수산물국” 으로 한다.

제50조 앞에 “제5장 출장소” 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06조제6호 중 “제30조제4항” 을 “경찰법 제30조제4항” 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조례 제5036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2024년 10월 31일” 을 “2024년 6월 30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양수산정책관 “을 “해양수산국장 “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 “을 “해양수산국장 “으로, “해운항만과장 “을 “해양항만과장 “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 “을 “해양수산국장 “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 “을 “해양수산국장 “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육법무과장 “을 “정책기획관 “으로 한다.

⑥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법무과장 “을 “인재육성과장 “으로 한다.

⑦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바이오헬스과 “를 “전략산업과 “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기구설치 자율화에 따라 ‘해양수산국’ 을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전담부서 신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올림픽 지원부서 통합, 각종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원 : 2,343명” 을 “정원: 2,34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정원 :” 을 각각 “정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원 : 58명” 을 “정원: 60명” 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이상	1%이내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 이내	20% 이내	36% 이내	31% 이내	5% 이상	1%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7% 이내	73% 이상	28% 이내	72% 이상

3. 소방공무원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9% 이내	10.5% 이내	18.5% 이내	34% 이내	24%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10% 이내	65% 이내	20% 이내	-	5%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경제자 유구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 관
총 계	7,048	1,763	137	4,593	18	39	438	60
정무직 계	4	-						
도지사	1	1						
감사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11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0	9	1					
일반직 계	2,259	-						
1급	1	1						
2급	2				1	1		
2 ~ 3급	2	1	1					
3급	14	12		1		1		
3 ~ 4급	2	1						1
4급	109	72	11	7	1	3	14	1
5급 이하 소계	2,108	1,386	123	126	16	34	368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5	1	5			4	
연구직 계	237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9	7		139			43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9			9				
지 도 사	24			24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출장소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을 “소속행정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 을 “소속기관장” 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재난안전	1	승강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의 수리 나.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청문포함) 및 사업정지명령,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다.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맞게 보원조치·하도급계약 해지명령 라.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의 보고 및 검사 마.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제7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82조		
	2	제3중시설물 지정, 고시 및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	1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4조		
	2	도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3	도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변상금의 조정·징수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81조		
경제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등록, 등록종교부, 등록부열람, 등록의 갱신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명령의 내용 통보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실태조사 타. 등록수수료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2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바.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교부 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수리 아.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제70조의2	
			3	어린이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수입물품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부과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43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3항
산업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2	산업단지의 지정 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3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4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포함) 및 고시 나.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제55조
	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 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6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수리 나. 시공업 등록의 말소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열사용기자재의 제조, 수입, 판매,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7	20만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20조
	8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나. 계량기의 자체수리 다. 폐업의 신고 라. 검정증인의 표시 등 마. 정기검사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아. 검사증인의 표시 등 자.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차. 소비자감시원 위촉, 교육, 해제 카. 과징금 타. 신고포상금 파. 지위승계 하.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거. 청문 너. 수수료 더. 업무의 위탁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55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제63조2항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9	러. 과태료	같은 법 제76조제3항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0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활용품의 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보고·검사 명령 등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11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운자 등을 표시하는 업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	
		12	전기사업(송배전 부문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1,000KW이하 발전사업)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1,000KW이하 발전사업)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1,000 KW이하 발전사업)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1,000KW이하 발전사업) 마.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청문(1,000KW이하 발전사업)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1,000KW이하 발전사업) 사.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1,000KW이하 발전사업) 아.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1,000KW이하 발전사업) 자.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1,000KW이하 발전사업) 차.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계획의 알림(1,000KW이하 발전사업) 카.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1,000KW이하 발전사업) 타.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1,000KW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0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2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61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71조,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0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1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2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9조의2
	복지보건		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임면보고 수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노인복지법」 제42조
4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5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나. 업무정지 다. 허가 등의 취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4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라. 과징금 부과 마.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바.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사. 폐업 등의 신고수리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출입. 검사와 수거 차. 청문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69조
	6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	마약류관리자 지정(의료업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4조, 제46조
	8	물수 마약류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물수 마약류의 인수 및 보관·폐기 나. 물수 마약류의 처분 및 공급신청 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제53조
농정	1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	「식물방역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지방 관리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 관리법」 제6조
	3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료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4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5	가축의 방역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6	시장·군수(도지사유자 포함)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준공검사(법제2조제5호나목)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7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받기반정리, 대구획경지정리, 소규모배수개선)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예정지 조사 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 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서 수해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 다. 재산의 관리·처분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4조
	8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한국농어촌 관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산림환경	1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 라. 과태료 부과·징수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9조
	2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에 따른 조건부허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마. 과징금의 부과·징수 바.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25조제11항, 제12항 같은 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아.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자.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차.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0조
		카. 위임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파.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 변경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하. 적합성확인 신청접수, 확인·통보, 자료제출, 조치요구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 제3항
		거.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접수, 반입재개 여부통보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항
	3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 및 처리금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
	4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2
	5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자연공원법」 제20조
		나. 공원의 접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
		다. 원상회복 면제승인	같은 법 제24조
		라. 공원입장료 결정정수 및 공원시설사용료 결정 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마. 공원정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바. 공원구역 등 출입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8조
		사.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아. 영업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9조
		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차. 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제35조
		카.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타. 공원구역안에서의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처분에 관한 협의는 제외)	같은 법 제71조
		파.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권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7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의 연장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8	건설폐기물업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21조제3항, 제22조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25조
		라.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6조
		마. 건설폐기물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신고수리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3항
		바.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8조
		사. 개선명령 또는 중지명령	같은 법 제29조
		아.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1조
		자.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3조
		차. 청문	같은 법 제57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9	카. 과태료 부과·징수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 요구 나. 처리이행보증의 조치 다. 처리명령 라. 승계자에 대한 처리명령 및 행정대집행 마. 처리이행보증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형금수령	같은 법 제6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10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1	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	「물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12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대집행은 시장, 군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4항
	1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14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15	가족분노업무담당자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16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의 기술인력,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제5항, 제6항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에 의한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철단산업단지 및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 강원경 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등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 아.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자.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카.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쇄조치 등 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3 같은 법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18	황합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19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20	보고명령 및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1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22	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23	고체연료의 사용승인(1종사업장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2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7조
	25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폐기처분 등	「먹는물관리법」 제47조
	2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
	27	먹는물 관련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28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9	품질검사 위탁감사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1조제2항
	30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31	계시물의 제거 또는 봉인의 해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2항
	32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그 용기와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제2항
	33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정지(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34	청문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0조
	35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1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3항
	37	산림용 중요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폐기 등의 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1호, 제2항
	38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9조제2항
	39	보호수의 관리	「산림보호법」 법 제13조의2
	40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41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3항
	4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제4조제2항
	43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등 허가 등 나.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등 영업의 승계 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등의 취소 등 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설정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허가 등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른 사무 사. 해양심층수관련업 관련 시설의 출입·검사 및 수거 등 아. 과징금 자. 청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제36조의4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2조
	4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잔류성오염물질항유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 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마. 청문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45	물놀이 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놀이행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제1항
	46	산림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47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48	산지(山地)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4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1조
	50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물원의 등록 등 나. 동물원의 등록의 취소 다. 동물원의 개방 및 휴·폐원에 따른 신고·반납 등 라. 동물원 안전관리 마. 동물원의 운영 등 자료의 제출 바. 지도·점검 등 사. 조치명령 아. 동물원 등록 취소 관련 청문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8조
건설교통	1	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의 점도구역 관리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2	도로점용료나 기타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단, 도로점용료는 2006.1.1이전 부과대상에 한한다)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3	지방하천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정·군수가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5조제2항
	4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6조
	5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하천법」 제15조
	6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법」 제74조
	7	지방하천의 하천공사(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27조제5항
	8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하천법」 제27조제6항
	9	지방하천 하천공사의 준공고시(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27조제7항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0	지방하천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하천법」 제29조
	1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천법」 제30조제1항, 제2항
	12	동 공사비의 예치명령,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	「하천법」 제30조제4항, 제5항, 제6항
	13	동 공사의 준공인가 및 필요한 검사의 의뢰(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0조제7항, 제8항
	1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2조제3항
	15	동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천법」 제32조제6항
	16	지방하천에서의 토지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17	동 하천시설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18	동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하천횡단 시설물(교량, 보)를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19	동 토지의 굴착·성토·절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20	동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21	동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353호가 규정한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22	동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3조제7항
	23	동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비 예치,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준공인가 신청 접수 및 준공인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3조제8항
	24	동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36조
	2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37조제1항, 제5항, 제50조제5항
	26	동 변상금의 징수	「하천법」 제37조제3항
	27	지방하천의 총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법」 제38조
	28	동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9	동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시의 설치	「하천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30	동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공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48조
	3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68조
	32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69조
	33	동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통지	「하천법」 제70조
	34	하천감시원의 임명	「하천법」 제72조
	35	지방하천에서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하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36	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75조
	3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예정지 지정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따른 협의(하천관리청 시행 하천공사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76조제2항, 제3항
	38	지방하천에서 토지등의 수용·사용(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78조
	39	동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90조
	40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한 청문(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91조
	4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면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 통지, 보상금의 공탁,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금액 산정 및 지급통지	「하천면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
	42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3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44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수리, 등록이전, 등록의 경정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45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46	건설기계 등록원부비치·관리 및 등록원부의 등·초본교부, 열람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47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명령) 및 재부착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48	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9	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50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5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신청접수 및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및 수리 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8조의2
	52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의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53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54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는 제외)	「주택법」 제15조
	55	감리자의 지정, 감리자 교체, 이의신청의 처리, 부실감리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43조
	56	다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한다. 단, 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공장 사.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에 한한다) 샤. 공공공지 아. 수도공급 설비 자. 전기공급 설비(변전시설 및 배전사업소에 한한다) 차. 가스공급 설비 카. 열공급 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에 한한다)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으로써 둘 이상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더. 문화시설 러.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및 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 머. 연구시설 버. 사회복지시설 서. 공공직업훈련시설 어. 청소년수련시설 저. 하천(소하천에 한한다) 처. 유수지 커. 저수지 더. 방화설비 퍼. 방풍설비 허. 방수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고. 사방설비 노. 방조설비 도. 장사시설 로. 도축장 모. 종합의료시설 보. 하수도(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광역시설을 제외한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폐차장 초. 공동구 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7	경미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5항
	58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제4항
	5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같은 법 제48조제2항
	6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 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또는 폐지 및 이에 관한 고시 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다. 관권인·허가 등의 제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라. 공시송달의 승인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같은 법 제98조
	6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62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 변경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정 및 변경지정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바. 공사의 감리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 아.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자.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차.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제정 타. 신탁계약의 승인	「도시개발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58조
	6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모란 시공 등의 조치	「도시개발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2
	6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등록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재교부 및 등록의 거부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 마. 자동차변경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이전등록의 처리 사. 자동차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아.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6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84조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및 취소 등 나. 과징금 부과 다. 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67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점검·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나. 검사기간의 경과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마.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합병 사.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 아.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폐업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차. 등록 카. 자동차 대여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타. 차령연장 파. 등록취소 등 하. 청문 거.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0조제5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나.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 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41조
		라. 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같은 법 제43조
		마.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의 명령	같은 법 제45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사업의 상속신고수리, 사업의 휴·폐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
		사. 사업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71	여객자동차의 사용정지(시외버스는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72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7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차량의 연장(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
	74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다.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56조의2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23호
		마.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7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7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의 교부·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77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78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79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변경 중 시행령 3조에 의한 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같은 법 제12조
		라.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13조
		마.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같은 법 제16조
		바.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19조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0조
		아. 준공검사,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및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21조
		자.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같은 법 제22조
		차.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23조
		카.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24조
관광	1	설악산 문화시설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가.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같은 법 제27조
		라.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
		마. 연체료 징수	같은 법 제80조
		바.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81조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	1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항지역 및 분구의 설정 나.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다.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 (국가에서 설치한 종합여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 제외) 라. 항만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결정에 관한 사항 마.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아. 보고 및 검사 등 자. 장기채류 화물의 처리 차. 토지애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카.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타.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 하.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거.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항만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7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3조, 제94조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105조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	1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농업기술원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2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승급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3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임용제청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4	지방농업연구사 및 지방농촌지도사의 임용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5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원 산하기관 내의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6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질계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7	6급이하(연구사포함) 일반직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및 사업소장
건설교통	1	도로연결허가	「도로법」 제52조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
	2	도로점용허가	같은 법 제61조	
	3	도로점용공사의 준공확인	같은 법 제62조	
	4	도로점용허가 취소	같은 법 제63조	
	5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65조	
	6	도로점용료 징수 및 반환 등	같은 법 제66조	
	7	점용료 징수의 제한	같은 법 제68조	
	8	도로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9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같은 법 제70조	
	10	부과 점용료 이의신청 적부 심사 및 통보	같은 법 제71조	
	11	초과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72조	
	12	점용 원상회복 명령 및 준공확인 등	같은 법 제73조	
	1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제74조	
	14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15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등	같은 법 제100조	
	16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101조	
	17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18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106조	
	19	도로점용허가 관련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17조	
소방	1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소방서장
	2	방염처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소방서장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방서장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행정	1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경정계	같은 법 제6조제2항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개방형 직위는 제외)	같은 법 제6조제2항	
	4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복지보건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 병원에 한함)	「의료법」 제33조제4항, 제5항	
	2	의료기관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1항	
	3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의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4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5	식품위생(취급)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나. 관계공무원을 통한 영업소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	
	6	식품위생(취급)업소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가. 시정명령 나. 폐기처분 등 다. 시설 개수명령 등 라. 폐쇄조치 등 마. 청문실시 바.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제83조	
	산림환경	1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다.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마. 측정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조치명령 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등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자. 허가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타.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5조
		2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4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2조
		5	고체연료의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6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8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p>9</p>	<p>가. 보고명령 및 검사 나. 과태료 부과·징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조치명령 마.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p>	<p>「물환경보전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8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p>
	<p>10</p>	<p>토양오염도 측정 등</p>	<p>「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p>
	<p>11</p>	<p>토양정밀 검사</p>	<p>「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p>
	<p>12</p>	<p>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p>	<p>「토양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p>
	<p>13</p>	<p>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구서 접수 나. 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p>	<p>「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제3항</p>
	<p>14</p>	<p>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양 정밀 조사 명령 나. 토양 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라. 환경부장관 요청에 의한 조치명령 및 결과보고</p>	<p>「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7항</p>
	<p>15</p>	<p>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계)</p>	<p>「물환경보전법」 제23조</p>
<p>산업</p>	<p>1</p>	<p>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에 한함),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한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아.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자.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납부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3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34조 같은 법 제14조, 제35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p>
	<p>1</p>	<p>경제자유구역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 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바. 공공시설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사.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p>	<p>「도시개발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p>
	<p>2</p>	<p>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p>	<p>「도시개발법」 제13조</p>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필증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해양수산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립면허 나. 매립면허의 고시 다. 매립면허 수수료 징수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및 승인 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의 협의 및 승인 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고시 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 신고처리 야. 준공검사 전 매립지의 사용허가 자. 준공검사 및 보완공사 명령 등 차.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카.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확인 및 고시 타. 매립목적의 변경 승인 및 고시 파. 매립지의 사용의 확인 하.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및 조치명령 거.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너. 원상회복 명령 더.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제4항 같은 법 제4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3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 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6호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민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3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 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상담 방법) 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처리)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 리해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 는 안 된다.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촉된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상담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률상담관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7호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생활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체류하려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소 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②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 1. 별지 서식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
- 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강원생활도민을 선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제5조(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 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 2. 강원특별자치도정 홍보 및 귀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3.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강원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강원생활도민의 선정 취소)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및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정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현 주 소			
첨부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생활도민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8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속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들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분야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3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4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수렴)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충돌을 예방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강원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9호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3.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 2.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3.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5. 퇴소청소년 주요 추진과제 조사·연구
-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
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도
4. 퇴소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및 주거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0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 2. 자립지원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5.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조사·연구
 -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2. 안정적인 주거 지원

-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
- 4. 자산형성 지원
- 5. 신체·정신건강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
- 7.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자립지원 관련 교육
-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사후(事後)관리
-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 3. 진로·진학·취업 교육 및 지원
-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
-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6. 후원자 발굴 및 후원 연계
- 7.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1호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로, “유도하는 것”을 “수립하는 예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내외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인쇄물과 영상물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15명이내”를 “1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강원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의 대표
3.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자치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11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신뢰를 증대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2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 2. “기계화영농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화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 방향과 목표
-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 3. 농업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
- 4. 제5조에 따른 농업기계화촉진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 5.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기계화촉진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
- 2.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 3. 농업기계 보급·확대 및 농업기계 보관시설 설치
- 4.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관리, 점검·정비 및 농업기계 수리기술 지도를 위한 기계화영농사 선정 및 육성
- 5. 농업기계 제조업자의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
- 6.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
-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3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중집합장소,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각 호”를 각각 “각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각 “각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산불방지 활동)”을 “(산불방지 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의식”을 “의식”으로, “각 호와 같은”을 “각호의”로, “행사활동”을 “행사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각종 산불방지”를 “산불방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단체”를 “도민·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불방지에”를 “산불방지를 위하여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을 “산불예방캠페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산불진화 경연대회에 대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조문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시책 도입을 통한 산불방지 효과를 증대하고, 조례 내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4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 를 “규정함으로써” 로 한다.

제2조 중 “지속가능한” 을 “지속 가능한”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 이란 세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목의 기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나.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기능이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3. 삭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할 때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시·군(이하 “관할 시·군” 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 를 “협력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변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 을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으로,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의 제목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 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계획 수립)” 을 “(관리계획 수립·시행)”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를 “각호” 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으로, “해당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 ” 를 “시장·군수(이하 “관할 시장·군수” ” 로,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를 “관련 단체 등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목적” 을 “지정 목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을 “기본 시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획에 관한 사항” 을 “구획”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을 “경관 보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확충에 관한 사항” 을 “확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업·생계지원” 을 “전업·생계 지원” 으로,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을 “경제 발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요 발전사업

8. 시범사업, 주민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

9.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제7조제1항제10호 중 “밖의” 를 “밖에” 로, “필요한” 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 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거주하는” 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요청) 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5년 마다 조사하여야” 를 “5년마다 조사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를” 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로, “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관리위원회” 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설치)” 를 “(관리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물권보전지역의” 를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중요정책” 을 “중요 정책” 으로, “관리위원회” 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능)” 을 “(위원회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능” 을 “각 호의 사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에 관한” 을 “변경 관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을 “관리계획” 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 을 “변경”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을 “운영·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을 “정책 조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기관” 을 “관련 기관” 으로,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을 “협력 증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리와 관련하여” 를 “관리를 위하여”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구성)” 을 “(위원회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2. 중앙행정기관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시·군의 부단체장
4. 관련 기관·단체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관할 시·군의회의원
 - 나. 환경·산림·관광·문화·경제·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 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 라.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임기)”를 “(위촉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하지 못하는”을 “수행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개최하며”를 “소집하고,”로, “수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의 제목 “관리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사무를 총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이하 “관리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전담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둔다.

제18조제1항 중 “두어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전담기구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담기구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지자체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전담기구”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전담기구”로,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를 “구성·운영에”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품질관리”를 “품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직참여와 활성화”를 “조직 참여·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반사업의”를 “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중 “자 체”를 “자체”로,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3조)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로고의 개발과 활용”을 “로고의 활용 및 관리”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활용)”을 “(로고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를 “생물권보전지역 대표”로, “특성화하고”를 “특성화하고,”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로고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화는”을 “도지사는 로고를 통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특성화할 때,”로,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를 “산출물을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로고의 관리) 도지사는 로고의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 사용 등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을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의 자발적 발의에 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를 “토론, 포럼, 협의회 등을 장려하는 등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지역주민은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 방안,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리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전담기구의 장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주민지원사업)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참여 회의
2. 주민조직체 개최 세미나
3. 주민조직체 정기 운영 프로그램
4. 주민 교육
5.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주민 생활 영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는 등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5호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춘천시”를 “사업 관련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재산”을 “정관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2. 정부 등의 보조금

3. 연구사업비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를 “스크립스연구원의”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를 “평가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례 제3792호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6호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를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범위)” 를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 중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이하 “소속 직원등” 이라 한다)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정착 장려
2. 소속 직원등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소속 직원등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
4. 그 밖에 소속 직원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재단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전입 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 2.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 3.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 소요비용의 보조
- 4.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 5.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에 대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6.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주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4.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조정
- 3.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 내 지장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6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명 : 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 위 치 :
- 기 간 :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 사업량 :
- 시행방법 :

3. 지원 필요성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 1) 사회적 기여도
 -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 2)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기여도
 - * 본 사업 지원으로 귀 기관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자금 활용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00년 예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	산 출 내 역	'00년 예산액
합계					
보조금	소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자부담	소계				
		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세입과 세출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내에 공공기관등을 유치하는 활동 및 유치된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8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 을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 으로, “운영에 관한” 을 “운영 등에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 간”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총장” 을 각각 “사무처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차례” 를 “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사무총장” 을 “사무처장” 으로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 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매년 1회” 를 “연 1회, 매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를 “각 호에 관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출에 관한 사항” 을 “선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운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과에 관한 사항” 을 “결과” 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예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비용

-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3.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 비용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활동 비용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방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하고,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합회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을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로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협약하여 각급 학교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을 “교육감” 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제6조(중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제1항” 을 “제4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 전부개정(2024. 6. 8.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정비(제1조)
-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 추가(제3조)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 사업 추진 항목 추가 (제5조)
-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가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4. 학생, 학부모의 경제·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5.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자료 등 개발·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1. 경제·금융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금융의식 함양
-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 4.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 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금융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교육자료 등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제5조)
- 선도학교 지정·운영, 경제·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경제금융교육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9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1호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 장학관(또는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팀장”으로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각각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팀장”으로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예산1담당사무관”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예산담당사무관” 을 “예산팀장” 으로 한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산담당 사무관” 을 “예산팀장” 으로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법무담당” 을 “법무팀” 으로 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담당사무관” 을 “경리팀장” 으로 한다.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재산담당 사무관” 을 “재산팀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관의 명칭	구분	기금관리 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팀장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정팀장 또는 교육공무직 재산팀장(춘천, 원주, 강릉)

제13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을 “시설기획팀장” 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을 “시설기획팀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 2024. 3. 1. 본청 조직개편 및 교육행정기관 팀제 변경 운영에 따라 부서의 명칭 및 직위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 13건을 일괄개정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2024.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조문 정비(제1조, 제5조)
 - 더나은학력지원관 → 미래학력담당관
 - 미래체육특수교육과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2024. 3. 1.자 팀제 변경에 따른 직위 명칭 조문 정비 (제2조~제4조, 제6조~제13조)
 - 담당(장학관·사무관) → 팀(팀장)

규 칙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2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3조(분장사무의 조정) 실·국·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등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과·담당관 등에 대한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를 조정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본청

제4조(보좌기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며,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둔다

② 도지사의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관, 도정협력관, 대외협력보좌관, 정책홍보보좌관을 두며, 경제협력관, 도정협력관, 대외협력보좌관, 정책홍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

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 및 여론 정보 수집
3.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작성 및 기록보존
5. 도보발간에 관한 사항
6. 국·도정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7. 도정 홍보물의 종합기획·제작 총괄
8. 관광·지역산품의 이미지 및 홍보물 기획·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9. 뉴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10. 도정의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11. 도정 관련 보도사항의 정리, 분석
12.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3. 홍보용 기자재 운영관리

제6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2. 국제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3.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4. 국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 운영 및 관리
7.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제7조(SOC정책관) ① SOC정책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SOC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SOC 정책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국책사업(도로, 하천, 철도)의 정부예산 확보
3. 국가도로(고속도로, 위임국도 등) 신설 등 기획
4.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5.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도시기획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지역소멸대응정책관·예산과·인재육성과·접경지역과·도청이전추진단·재정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인재육성과장

· 접경지역과장· 재정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발전 정책개발
 3. 도정시책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4.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5.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
 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7.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8. 강원연구원의 지도·감독
 9. 서울본부 운영 지도·감독
 10. 도민 및 공무원 제안·창안제도 운영
 11. 정책관리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12.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13. 의회업무 협조
 1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통계결과의 분석 및 공표
 17. 인구·주택·농림어업·경제 분야 통계조사
 18.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및 분석
 19. 보고통계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
 20. 통계품질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1.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3. 강원자치도 자치법규(조례·규칙) 법제심사
 24. 강원자치도 행정규칙(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25.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관리
 26. 강원자치도 조례 재의 및 제소에 관한 사항
 27.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등 공포 전 심사
 28. 소송사건의 조정·통제
 29. 소청에 관한 사항
 30.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2. 동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
3.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
4.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5.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업무
- 6.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 7.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이행
- 9. 인구정책(저출산)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0. 지역소멸대응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1. 자치분권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12.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시군 협의체 운영
- 13.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외국인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
- ⑤ 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강원자치도 예산의 편성·집행·운영 총괄
 - 2. 지방교부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 3. 시군 재정조정, 보조금·교부세 관리 및 재정 운영 지도
 - 4. 전시예산 편성 및 종합조정
 - 5. 지방채 승인신청 및 관리 운영
 - 6. 민간투자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 7.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8.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 9.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
 - 10. 강원개발공사 경영지도
 - 11.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등 투자분석 조사에 관한 사항
 - 1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출자·출연 사전심사제 운영
 - 13.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
 - 14.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관리
 - 15. 강원자치도 재정부담 리스크 관리
 - 16. 민간투자사업 총체적 재정부담 관리
 - 17. 기업 사회공헌기금 확보, 계획수립 등 기획·조정
- ⑥ 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술진흥 및 교육관련 협조·지원
 - 2. 초중고교생 교육 지원
 - 3. 대학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4.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 6. RISE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지원
 -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 8.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 9. 글로벌대학 육성전략 수립 및 지원
 - 10. 강원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⑦ 접경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시설·환경 개선 분야 정책 기획 및 지원
3.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 업무 추진
4. 접경지역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회 운영
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7. 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응
8.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희부지 활용 업무 추진
9. 군관협력전문관 운영 및 관계 기관 군관협력 지원
10.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
11. 접경지역·비무장지대 관광자원 조성
12.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및 광역연계사업 관리 운영
13.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14. 접경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육성·마케팅 지원
15.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
16. 접경지역 경관 및 시가지 환경개선 추진
17.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18.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19. 강원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20.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
21.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⑧ 도청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건립(신청사와 2청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획업무 총괄
2. 청사신축 관련 조례 및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사신축 건립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4. 현 청사 활용방안(교환, 매각, 유치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계획 심의 업무 추진
6. 청사신축 국비 발굴·확보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청회·설문조사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8. 도의회, 언론보도 및 각종 민원, 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
9.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청사건립 관련 도시계획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⑨ 재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예산(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확보 지원
2. 국비확보의 전략적 협조 지원
3. 시군 대규모 국비사업 지원 협력
4.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 지원
5. 재정분권 정부정책 대응 지원

제9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중대재해대응과·비상기획과를 둔다.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중대재해대응과장·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재난안전실 조직 및 인사관리
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
6.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총괄)
8.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9. 국민안전교육 기반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
10.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
1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12.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
13.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보 기반시설 구축 운영 추진
14.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전파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④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구호계획 수립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대비 자원관리,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7.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8. 자연재해 위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
12. 자연재난 복구 추진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15. 그 밖의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2. 사회재난(대규모 감염병,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 3.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현장훈련
- 4.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 수습, 기부금, 물품 지원
- 5.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 6. 지하안전 관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감
- 8. 내수면 도선 면허관리 및 유·도선 안전관리
- 9.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행정지도
- 10.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관리
- 1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업무 총괄
- 12. 전력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협력
- 13.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매뉴얼, 대응훈련, 실태점검)
-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 15.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
- 16. 특별사법경찰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 17. 그 밖의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조정 기획
-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매뉴얼 마련
- 3.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
-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확인 점검
- 5.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6. 도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점검
-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이행 확인 조치
-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 확인 및 평가관리
- 9.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10.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11.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
- 12.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분야 관련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
- 13. 강원자치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수칙 이행 인식 확산,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중대재해대응에 관한 사항

⑦ 비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 2.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추진
- 3. 제대군인 정착지원 및 센터 운영·지원
- 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5. 비상대비계획, 중점자원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6. 방사능 누출사고 등 원전 업무에 관한 사항
- 7. 국가지도통신망 및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운영
- 8. 민방위계획 수립 및 민방위대원 편성·교육

- 9. 경보발령·전파, 장애관리 등 경보통제소 운영
- 10. 접경·경보사각·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
- 11. 그 밖의 군부대 관련 민원 등 총괄·조정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회계과·재산정책과·정보화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산정책과장·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 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 3.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4. 복무관리(복무점검,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 5. 민간인 포상 및 명예도민 선정에 관한 사항
- 6.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운영
- 7. 인사행정·인사정책·인사운영 제도 개선
- 8.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징계·포상 운영
- 9. 성과상여금 및 보수·수당 제도 운영
- 10. 공무원외출장 심사 및 허가
- 11.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 12.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 13. 공무원·공무직 직무 전문교육 운영 및 상시학습 시스템 관리
- 14.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및 운영 지원
- 15. 각종 공인 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 16.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 2. 강원자치도와 시군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조정
-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 4.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 5.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도·시군의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 7. 사무분장 조정,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 8. 사무위임·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9. 주요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관리 및 협조 지원
- 10.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관리
- 11.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 13. 미수복지구 실향민 지원 및 관련단체 지원
- 14.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 15. 정부혁신 및 혁신평가 업무수행

- 16. 적극행정 지원, 협업과제 발굴·지원
- 17.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18.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인감 업무 지도
- 19.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 20. 강원자치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21.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운영 및 지도관리
- 22.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 ⑤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
- 3. 지방세 권리구제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 소송에 관한 사항
- 5. 지방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 6.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도 금고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부금품 및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 9.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 10. 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11.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
- 12. 시가표준액 시가조사 및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 13.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 14. 시·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6. 체납관리 총괄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7.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세입징수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 19.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 5.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 6.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증축 등 기술 지원
- 7.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 ⑦ 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유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 2. 공유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3. 국유지 및 기관 간 재산활용 계획 수립
- 4.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운영
- 6.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관리
- 7. 미활용 일반재산 활용 관리
- 8. 관사(官舍) 운영·관리 및 재산 공제가입 관리
- 9. 용도폐지 도로재산 매각 등 처분 관리
- 10. 폐천부지 매각 등 처분 관리
- 1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재산매각 총괄
- 12.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 13. 무단점유 도유재산 발굴 및 양성화 추진
- 14. 도로 및 하천구역 계획 시설 변동 현황 모니터링
- 15. 도로 및 하천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관리
- ⑧ 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화 업무 기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 2. 정보화(ICT)·지능정보화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추진
 - 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 4. 행정시스템 운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 추진
 - 5. 시도행정,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6. 강원자치도 누리집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7. 정보보안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8.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 9. 개인정보보호 종합 전략 기획·조정
 - 10. 행정통신 현대화 전략 수립 및 기획·조정
 - 11.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 12. 정보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 13.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
 - 14.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계획 지원
 - 15. 디지털전환 행정서비스 발굴·개발·이용 활성화 추진
 - 16.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및 활성화 추진
 - 17.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제11조(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 ① 특별자치추진단에 자치법령과·특례정책과·규제혁신과를 둔다.

② 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특례정책과장·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운영 총괄
- 2. 강원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 3.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및 정부협약체결·평가 추진
- 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 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 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 7. 홍보 및 붐(boom) 조성, 도민 교육, 강원자치도 출범 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강원자치도 총괄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특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특례발굴 및 자치입법권 총괄에 관한 사항
- 2.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및 분과별 협의체 구성·운영
- 3. 자치·재정·미래산업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 4.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 5. 주민생활·균형개발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 6. 시군 특례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7. 특례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⑤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강원자치도 토지구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 2. 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 3. 강원자치도 및 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효과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 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일자리청년과·기업지원과·소상공인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청년과장·기업지원과장·소상공인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3. 경제진흥 확대회의 운영 및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 4. 지역경제 관련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 5. 경제동향 분석 및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작성 관리
- 6. 물가대책 및 착한 가격업소 관리
- 7.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 8.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 9. 가격표시제 운영지도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 10. 경제위기대응 대책 수립 및 기획에 대한 사항
- 11. 국·내외, 지역경제 분석 및 보고
- 12. 전자상거래 업무 총괄 및 조정
- 13.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지도
- 14. 그 밖에 경제진흥정책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5. 강원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
- 16. 방위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17. 도내 국방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 18.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 ④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강원자치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강원자치도 일자리 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3.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추진실적 관리
 - 4.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5.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7.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8.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 10.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 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 12.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13.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1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
 - 15. 청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6.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 17.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청년실업 해소 시책 수립 및 추진
 - 19.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
- ⑤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 2.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및 지원자금 운영
 - 3. 강원자치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육성
 - 4. 공산품 국내 판로 확대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지원
 - 5.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홍보 지원
 - 6.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사항
 - 7.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8. 중소기업 애로 해소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9.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운영 등 육상지역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 10.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 등 심층수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 11.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총괄
 - 12. 노동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13. 노동정책 실태, 연구조사 총괄
 - 14. 노동쟁의 예방 및 노동단체 동향관리·지원, 노·사·정 협의 업무
 - 15. 기능인 양성·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고용 촉진
 - 16. 비공무원(기간제근로자, 공무원 등) 노무관리 및 정규직 전환 등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17. 대외통상 및 수출지원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8.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 19.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 20. 수출유통망 구축·지원
- 21.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 22.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관리

⑥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상공인 종합정책 수립
-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3. 소상공인 육성사업 관리 및 교육
- 4.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
- 5.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
- 6.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7.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8.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 9. 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 10.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11.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관리

제13조(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산업국에 전략산업과·반도체산업과·바이오헬스과·투자유치과·디지털산업과·에너지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전략산업과장·반도체산업과장·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디지털산업과장·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략산업 육성 기획·조정
- 2.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강원테크노파크 육성 지도·감독
- 4.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 5.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 6. 미래항공산업(도심항공교통·드론 등)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전략과제 총괄에 관한 사항
- 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9.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
- 10. 특허권 관리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11.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 12.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사업
- 13.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
- 14. 그 밖의 신산업·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④ 반도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강원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수립

- 2. 반도체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공급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지원
- 5.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원방안 강구
- 6.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
- 8. 그 밖의 반도체산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⑤ 바이오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2. 지역특화 바이오헬스 선도산업 육성 및 전략 기획·조정 총괄
 - 3.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위원회 운영
 - 4.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
 - 5. 항체-천연물 융합 연구개발 지원 및 고도화 추진
 - 6. 바이오·디지털헬스·의료기기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7. 보건의료데이터기반 AI·ICT 융합산업 육성
 - 8. 디지털헬스케어·정밀의료 관련 특구사업 추진
 - 9.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 10. 강원자치도 내 바이오헬스 혁신기관 협력사업 추진
 - 11. 강원자치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 12. 그 밖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 2. 지역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 3. 첨단신산업(연구·개발센터, IT, NT, ET) 및 에너지산업 유치
 - 4. 수도권 이전 및 타시도 이전기업·국내 북귀기업 유치
 - 5. 유치 및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6.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7. 외자유치 정책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
 - 8. 국가별 외투 개별상품 개발 및 해외 IR 실시
 - 9.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 11. 공장입지 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지정 관리
 - 12.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입지 지정
 - 13.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 14. 노후 산업(농공)단지 재생에 관한 사항
 - 15. 혁신도시·기업도시 구역 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16.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⑦ 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산업과 총괄 업무 기획 조정
 2. 디지털 진흥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3.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
 4. 디지털 산업정책 과제 발굴 및 기획
 5. 권역거점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산업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개정
 7. 인공지능 지역확산 선도사업
 8. 데이터산업 창업 벤처기업 발굴·육성·지원(TIPS)
 9.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
 10. SW 융합 클러스터 특화사업 추진
 11. 정밀의료 및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 ICT 전문인력 및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13. 메타버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4.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지역거점센터 구축 운영
 15. 1인 미디어산업 기반 구축
 16.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 추진
 17.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18. 투자선도지구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 추진
 19.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20.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21. 의료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
- ⑧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2. 지역에너지 정책수립 및 조정
3. 「에너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 사무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
8.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사업 추진
9.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및 산업화 촉진 지원
10.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원
11. 그 밖에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추진
12. 발전사업 인가·허가 및 등록업체 지도·감독
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
1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송·변전, 발전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전기 공급에 관한 사항
16.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인가·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인가·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 1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인가·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 19. 천연가스 공급 및 수급계획 추진
- 20.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1. 계량기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인가·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 23. 「석탄산업법」에 따른 연탄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24. 서민연료 수급 안정대책 등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 25.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6.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7.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적응 등에 관한 사항
- 29. 기후변화대응 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30.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1. 에너지신산업(융합) 육성에 관한 사항
- 32.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33. 에너지 수요관리 발굴 및 확산
- 34. 에너지 신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35. 에너지 전환사업(섹터커플링) 추진
- 36. 광업관련 인가·허가 및 광업권·조광권 관리
- 37. 지역자원세 특별회계 사업 추진
- 38. 비금속 광물 산업화 및 희소 금속광물 개발에 관한 사항
- 39. 그 밖에 에너지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체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2. 조형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3. 박물관, 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5.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 인쇄,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 6. 영상 콤플렉스 조성
- 7. 컴퓨터 게임장업 관련 사무
- 8.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 9. 국악진흥 및 공연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지역문화 이벤트에 관한 사항
- 11.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박물관 등록 및 관리
- 1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종무행정(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 포함) 및 전통사찰의 등록·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 축제 및 향토의 얼 선양 사업 추진
5.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원·향교·누정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재해·재난대책 및 안전점검 수립·시행
9. 국가유산 상시관리 활동 지원
10.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관리
11.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
12. 도난·도굴 등 국가유산사범 단속
13. 국가유산 명예관리인 및 행정모니터제 운영
14. 국가유산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육성지원
15. 국가유산에 준하는 향토유물, 유적지 보존관리
16. 국가유산 보수·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조사
17.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
18.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안 마련
19. 국가유산 수리업체 및 기술자 등록 관리
20. 국가유산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및 운영
21. 건축문화유산 조사·보호 및 관리
22. 국가유산 지정·해제·보호구역 관리
23. 국가유산 수리현장 안전점검
24.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
25. 세계유산 정책 수립 및 등재 업무
26.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사업 추진
27. 동산문화유산의 조사·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29. 무형유산 조사·보호 및 관리
30. 무형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31. 천연기념물(기념물) 국가유산 조사·보호 및 관리
32. 천연기념물(기념물)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33. 천연기념물(기념물) 유지보수 사업
34. 문화재연구소 지원 및 관리 감독
35. 매장유산 지표·시책·발굴조사
36. 강원특별자치도사 편찬 및 강원학 체계 정립
37.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38. 그 밖에 문화유산정책에 관한 사항

⑤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체육진흥협회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 체육회 업무협조·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
4. 국민건강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공·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
7. 신고체육시설 운영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9.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0. 레저스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
11.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15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① 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청소년가족과·보건 식품안전과·공공의료과·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노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보건식품안전과장·공공의료과장·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6.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7. 보훈과 관련한 사무
8.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9.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금 관리
10. 다자녀 우대정책 및 국 소관 저출산 대책 기획·조정
11.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12.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13.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및 주택알선
1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추진
15. 아동학대 예방사업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2.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주거 및 의료 등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4.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5.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문화 의식 개선
- 7. 노인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8. 어르신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 9. 어르신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 10. 그 밖에 노인 및 장사시설 관련에 관한 사항
- 11. 장애인재활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
-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 5.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 8. 장애인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실행
- 9. 그 밖의 장애인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⑦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여성정책 총괄 기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 3. 여성가족연구원·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감독
- 4.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 5.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연구 개발
- 6. 강원여성의 열 선양사업·홍보
- 7.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 8.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 9.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0.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
- 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보호 지원
- 12.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지원
- 13. 여성일자리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14.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및 관리
- 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 16.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17.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운영
- 18.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추진
- 19. 학교폭력근절 등 교육 분위기 조성

- 20.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지도·감독
- 2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⑧ 보건식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2. 보건의료 등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
 -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
 - 4.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운영 지도
 - 5. 특수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
 - 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7. 건강생활실천(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을 말한다)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9.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0.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
 - 12. 강원자치도 부속의원 운영 관리
 - 13.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민건강 영양조사
 -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15. 치매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16.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 17.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아토피·천식 예방에 관한 사항
 - 1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 20. 식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21. 충무계획 관련 식품동원 계획수립 및 자원 조사
 - 22.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조정
 - 2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24. 식품진흥사업 육성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25. 음식문화 및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2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27. 식중독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28. 어린이 식생활안전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 29.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지도 및 부정불량 식품 단속·관리
 - 30. 부정·불량식품신고(1399)센터 운영
 - 31.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관리
 - 3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가격표시제 지도 관리
 - 33.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지도단속
- ⑨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추진
 -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 3. 공중보건의료 위기대응 기획·조정
- 4.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원
- 5. 취약지 의료안전망(중환자실) 운영 지원
- 6. 공립요양(재활)병원 설립·운영 지원
- 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시행
- 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지방의료원 임원 추천·승인·임명 등에 관한 사항
- 10.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1. 지방의료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12. 지방의료원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13.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4.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專用) 헬기 설치 및 운영 지원
- 15.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장비에 관한 사항
- 17.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인가·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8. 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연휴비상진료 대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19. 재가 진폐환자 의료지원
- 20. 암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21.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
- 22. 폭염·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 24. 출산장려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5. 의사, 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 26.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 27.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⑩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감염병 위기발생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 4. 생활방역 매뉴얼 작성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5. 재해비축 등 방역약품 및 방역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6. 감염병 전문(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감염병 홍보·교육과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 8.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9.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10. 감염병 발생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1.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2. 신종 및 국외 유입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 13. 인수공통감염병 및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 14.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증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 15. 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 16.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7. 질병보건통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역학조사 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19. 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20. 비상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1. 결핵·한센병·성병관리 및 한센협회 지도·감독
- 22. 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

제16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정과·축산과·농산물유통과·친환경농업과·동물방역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농산물유통과장·친환경농업과장·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2.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지도
 -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 4. 농정사업 및 농정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
 - 6. 영농조직의 육성 지도 및 농어민 교육훈련, 후계자 육성
 - 7.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
 -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특별회계 관리
 - 9. 농림계 특성화대학 및 자영자 양성 농고 지원
 - 10.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관리
 - 11. 농어촌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 12.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
 - 13. 농어업대상제 운영
 - 14.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운용관리
 - 15. 농지조성비 부과에 관한 사항
 - 16.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17. 자유무역협정 농업대책에 관한 사항
 -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추진
 - 19. 향토산업 육성
 - 20.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 21.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22.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23.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④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 2. 축산업 지원 대책 수립추진

- 3. 양계산업 및 계열화사업 관련 업무
- 4. 축산업·종축업 허가관리 및 축산기관·단체 관련 업무
- 5. 한우·양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추진
- 6. 낙농진흥 및 원유수급 관리
- 7. 축산업 6차 산업화 업무
- 8. 축산 재해 대책 업무
- 9.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 대책 수립·관리
- 10.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산지 생태축산·초지개발 업무
- 11.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 및 사료 품질관리
- 12. 꿀벌 산업 지원 대책 수립 및 브랜드화 추진
- 13. 동물복지 및 동물 관련 산업 육성
- 14. 축산기술연구소 지도·감독
- 15.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 16.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 17.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제 운영
- 18.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추진
- 2. 농산물 판매대책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
-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
- 4.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관리
- 5. 농산물 시장 및 산지공판장 관리지원
- 6.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
- 7. 강원특별자치도 농특산물 고유상표 승인 및 사후관리
- 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9. 농산물 안전성 관리
- 10. 농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 운영 및 전통식품 관리
- 11. 원예특용작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 12.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화 대책 추진
- 13.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 14.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재해대책
- 16. 기능성 양잠 및 곤충산업 육성
- 17. 농축산물 군납 관련 업무
- 18.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9.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20. 농축산식품 수출 육성 지원

⑥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3.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소득 보전
5.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추진
6.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추진
7. 농업재해 대책 추진 및 복구 지원
8. 농산물 병해충 방제 추진
9.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
10. 감자산업 활성화대책 추진
11. 발작물 안정생산 및 공급
12. 식량작물 종자 생산·공급·관리
13. 양곡수급계획 및 수불관리
14. 정부관리 양곡 보관·가공·수송업무
15.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16. 양곡매입 및 수입양곡 관리
17.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관리
18. 쌀·전작물 전업농 및 농업법인 육성
19.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지원 및 수급 조절
20.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21. 농작물 재해보험업무 추진
22. 발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2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24. 비료 생산(수입) 판매업체 등록 및 생산관리
25. 농업용수 및 기반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26. 대구회경지정리 추진 및 환지계획 인가
27. 발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8. 수리시설 개보수 관리 추진
2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0.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31.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2. 배수개선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
33. 농업기반시설물 및 양수장비 관리
34. 한발대비사업 및 개간업무 추진
3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6.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
- 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동물방역) 행정 종합기획
 2. 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3.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상시방역체계 구축
- 4.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 근절대책 추진
- 5. 동물방역분야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
- 6.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 7.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수의사 처방제 관리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 9.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및 약사감시
- 10. 양봉 및 토종별 질병관리
-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 12. 축산차량등록제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 13.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 14.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단속
- 15. 축산물 작업장 인가·허가 및 지도·감독
- 16. 동물위생시험소,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지도·감독

제17조(산림환경국에 두는 과) ① 산림환경국에 산림정책과·산림관리과·환경정책과·자연생태과·수질보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산림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산림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수질보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림정책 총괄 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조정
- 2. 산림·임업통계·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용
- 3.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운용 관리
- 4.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책, 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사항
- 5. 산림과학연구원 등 사업소 및 산림특수법인·협회 관리
- 6.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및 실행
- 7.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
- 8. 특별관리 임산물 및 임산물 지리적표시제와 생산자 조직 육성
- 9. 산림경영계획 및 임목별채·굴취에 관한 사항
- 10. 임업정책자금 운용·관리 및 임업기술 보급·지도
- 11. 목질계 연료제조 및 관련 보일러 보급
- 12. 산림 사업용 임업 기계·장비 보급
- 13. 목재수급계획 수립조정 및 목재산업 육성
- 14. 독립가(篤林家: 모범임업경영인)·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 육성
- 15.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 16.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자생식물원, 산림박물관, 수목장림 조성관리
- 17. 산촌개발 및 녹색·생태관광의 개발·육성
- 18. 치유의 숲, 생태숲 등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 19. 산림박람회 등 산림문화축제 개최
- 20.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 21. 산림자원 관리지침 운용 및 임업진흥권역 지정·관리
- 22. 산림용 종묘 생산수급 및 채종림 등 관리
- 23.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도
- 24.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지원
- 25. 도시숲·생활림·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관리
- 26.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 27.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
- 28. 경제림육성단지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관리
- 29. 산악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 30. 숲길(등산로) 신규 조성·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 ④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림내 위·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 2.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관리
 -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 4. 산림사업법인 관리 및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리
 - 5.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운영
 - 6. 산지구분 및 보전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 7.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해제
 - 8.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
 - 9.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10. 채석단지 지정,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에 관한 사항
 - 11. 민복지역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 12.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13.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기반시설 설치 및 실행지도
 - 14.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해안사방 사업
 - 1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리
 - 16.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영
 - 17. 산림생태복원 계획수립 및 시행
 - 18.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 실행 및 사업지 사후관리
 - 19.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 20. 산림이용진흥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 21.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고시·취소 등 관리
 - 22. 산림이용진흥지구 종합계획심의회 구성·운영
 - 23.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고시
 - 24. 산림이용진흥사업 인가·허가 의제협의회 구성
 - 25.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 26.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27.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토사) 채취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8.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⑤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총괄기획·조정
2. 환경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 발전
3.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 관리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5.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 및 관리
6. 환경기술인 교육 및 대기오염 저감
7. 공공폐기물처분시설 인가·허가 관리
8.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9. 지정·건설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
10. 자원순환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11.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추진
12. 영농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13.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14. 사회재난 중 초미세먼지, 황사 대응 및 매뉴얼 제정·개정 업무
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영계획수립·추진
16.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17.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 및 시설물 관리
18. 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
19.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 추진

⑥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행 및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관광 운영
5. 야생동물 질병 확산방지 및 관리
6.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추진
7. 지질공원 인증·관리 및 사업추진 등
8. 설악산, DMZ 등 생물권보전지역 인증·관리 및 사업추진
9.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반환사업
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총괄
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2.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육계획 수립·운영
13.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환경영향보고서 검토
1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및 관련민원 처리
1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현지조사
16. 자연경관심의
17. 도,시군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⑦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대책 총괄조정 및 추진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3. 하천·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5.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운영
6. 한강살리기 운동 추진
7. 먹는 샘물·먹는 해양심층수 수원개발·제조업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8. 농촌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
9. 공중화장실·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관리
10. 상하수도 사업계획 인가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지도
11.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검토 및 협의
12. 중수도 관리
13. 간이상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
14.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지정
15.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16.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17. 지하수 개발·이용관리
18. 토양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오염원 관리
19.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관리

제1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지역도시과·건축과·토지과·도로과·교통과·하천과·도시재생과·철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도시과장·건축과장·토지과장·도로과장·교통과장·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재생과장·철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토지수용 관련 공공용지의 취득 보상
3. 종합건설업체 등록·관리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6.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조정
7.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추진
8. 전원 신도시건설 관련 사항
9.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및 환지계획 관련 사항
10. 도시공원 조성·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11.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무
12.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4. 토지 형질변경 인가

15.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
18.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항
19. 건설기술정보 및 신기술·신공법 관련 사항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21.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토지이용계획 완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축행정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건축위원회 운영(사전승인, 분쟁, 징계심의)
 3. 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
 4.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사항
 5. 도시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사업체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
 8.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
 10. 공공건축물 및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1.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정비
 12.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허가 및 행정처분
 13. 옥외광고업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경관형성계획 수립·시행
 15.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16. 노후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지재생)에 관한 사항
 18.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관리사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
 19.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해주택 복구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1.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2.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에 관한 업무
 23. 한옥건축 사업 지원
 24.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한옥전문위원회 운영
 25.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지원·추진
 26. 공동주택(분양, 임대) 관리 업무
 27. 건축관련 행정심판·소송 및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28. 임대주택건설 공급 및 지원업무(행복주택)
 29. 저소득가구 주택바우처 및 주거복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디자인업무 총괄

⑤ 토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토지관리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2. 부동산 투기대책 수립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 3.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관리
-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5.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
- 6. 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7.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 8. 위성측량 및 측량기준점 설치·관리
- 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수행자 관련 업무
- 10. 지적복구 및 토지이동 조사·등록에 관한 사항
- 11. 지적재조사 및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
- 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
- 13. 측량업 등록 관리
- 14. 지적전산 정보 관리 및 운영
- 1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업무
- 16. 국가 기초구역 설정에 관한 사무
-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 18.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 19. 생활지리, 3차원공간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
- 20. 도유지 규모화(집단화)·의미화 업무 추진
- 21. 투자유치 대상 토지 국·공유재산 양여·교환업무 지원
- 22. 투자대상지 및 개발가능 입지 선정 조사분석 제공
- 23. 국·공유지 및 대규모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로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2. 도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3.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4.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 5. 군도 노선지정 및 변경인가 지정(변경인가 포함) 및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
- 6.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및 지도·감독
- 7. 도로의 개설 및 포장, 유지관리
- 8.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지도·감독
- 9.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 10.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 11. 도로 위험시설물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행
- 12. 위임국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3.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인가·허가 에 관한 사항

- 14.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 15.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 16. 도로·교량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
- ⑦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통·물류정책의 종합기획·조정
 - 2. 도시교통정비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 3. 자동차운수사업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
 -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터미널) 인가·면허와 등록에 관한 사무
 - 5. 자동차관리사업·창고업 등록 및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 6.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7. 주차장 관리
 - 8.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무
 - 10.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무
 - 11. 물류단지 지정 및 준공관련 사항
 - 12.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 13. 지역 물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 14. 강원 내륙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원
 - 15. 물류단지 지정 및 국제 물류주선업 등록
 - 16. 화물·택시운송사업 인가·허가 및 관리
 - 17.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및 화물운송 파업 관리
 - 18. 희망택시사업 운영
 - 1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 ⑧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2. 댐 관련 현안대책 추진
 - 3.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댐 관련 업무 협조·지원
 - 4.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등 업무 추진
 - 5. 하천재해예방사업·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추진
 - 6.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7. 폐천관리에 관한 사항
 - 8. 하천분야 국·공유 재산관리
 - 9. 골재수급계획 수립
 - 10.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 11. 그 밖에 수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⑨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강원자치도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총괄 기획·조정 관련 사항
 - 2. 경제기반형·일반근린형·주거정비지원형·중심시가지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 3. 시군 문화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 촉진 지원

- 4.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⑩ 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철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철도종합계획 및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행
 - 3. 철도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4. 철도건설 예산 확보 및 지원
 - 5. 철도건설 신규사업 발굴 및 예타사업 등 협의·지원
 - 6. 철도건설 설계·시공 및 사업 관리·지원
 - 7.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계획 및 철도물류계획 수립·시행
 - 8.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시설(센터) 구축계획 수립·시행
 - 9. 철도운영 활성화 방안 및 철도이용객 증대방안 수립·시행
 - 10. 철도건설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리
 - 11. 남북 철도교통망 연결에 관한 사항
 - 12. 역세권 개발 총괄 기획·조정
 - 13. 역세권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 역세권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철도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19조(미래산업육성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육에 에너지산업과·폐광지역지원과·대체산업육성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에너지산업과장·폐광지역지원과장·대체산업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소산업 및 수소 신산업 발굴 및 육성
 - 2.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 3. 그린수소 및 액화수소 초광역 협력 사업
 - 4. 수소특화 전문산단 조성 및 수소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 5. 수소경제 특구조성사업
 - 6.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
 - 7. 수소산업 연구·개발 기관 유치 및 지원
 - 8. 수소기반사업 발굴 및 육성
 - 9. 수소산업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관리
 - 10. 수소 소재부품 전환기업 육성 지원 및 수소활용 기술개발 업무
 - 11. 수소시범 도시 개발 및 기획
 - 12. 수소충전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추진
 - 13. 첨단소재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4. 강원자치도 탄소 전략산업 육성·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15. 그 밖에 수소산업 및 첨단소재, 탄소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 ④ 폐광지역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

-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영 관리
- 3.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 4.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관리
- 5. 강원랜드 운영 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
- 6. 폐광지역 시·군 역점사업(도공통분 활용) 추진 및 지원
- 7.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8.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 9. 폐광지역 비영리법인단체 설립인가 및 관리
- 10. 폐광지역 기업 및 주민 창업지원 사업
- 11. 폐광지역 주민(학생) 교육 지원 사업
- 12.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 13.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사업
- 14. 사복사건, 위령제 등 폐광지역 기념식 행사 지원
- 15. 기타 폐광지역 시·군 현안사업 지원

⑤ 대체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비축무연탄관리 및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용
- 2.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 수립 지원
- 3.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중앙단위) 설립 지원
- 4.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5.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
- 6.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산단 유치
- 7.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 8.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 9. 폐광지역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 10. 석탄 등 활용 원료·소재산업 발굴 및 추진
- 11. 경석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
- 12.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 13. 기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지원

제20조(관광국에 두는 과) ① 관광국에 관광정책과·관광개발과·올림픽유산과·삭도추진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관광개발과장·삭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올림픽유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광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강원관광 현황 및 관광통계 관리
- 3. 관광사업체 지원 및 지도·관리
- 4.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관광교류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관광 마케팅 관련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

- 6. 국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마케팅사업 추진
- 7. 관광상품, 콘텐츠 및 특화사업 개발·운영
- 8. 문화관광축제 및 우수지역축제 육성지원
- 9. 관광두레 업무
- 10. 관광수용태세 개선
- 11. 동계 관광상품 및 한류 관광상품 육성·운영
- 12.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및 국제 관광교류 운영
- 13. 국외 강원관광사무소 총괄 관리
- 14. MICE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 15. DMZ박물관 지도감독
- 16.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1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 18. 온라인 강원관광(누리집, SNS) 관리 운영
- 19. 해안권 발전선도사업 추진
- 20. 해양관광 진흥대책 추진
- 21. 해양 레포츠 및 어촌민속문화·축제 지원·관리
- 22. 해변운영 및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23. 그 밖에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광개발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광역 관광개발사업
 - 3. 광역권 관광협의회 운영
 - 4. 문화관광·생태녹색 자원 개발사업
 - 5. 관광특구 관리·운영 및 광역관광특구 추진
 - 6. 길 관련사업, 관광지내 삭도·궤도 업무
 - 7. 관광단지 및 관광지 인가·허가
 - 8. 관광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관리
 - 9. 관광시설분야 재난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총괄
 - 10. 관광시설 투자유치 및 인가·허가 지원
 - 11.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및 관광기반 여건 개선
 - 12.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추진
 - 13. 항공산업 및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⑥ 올림픽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동계올림픽 유산에 관한 사항
 - 2. 동계올림픽 관련 사료 및 기록유산 수집·제작 관리
 - 3. 국제 동계스포츠관련 기관·단체협의·대응에 관한 사항
 - 4. 올림픽기념관 관리에 관한 사항
 - 5. 2018평창기념재단 관리

- 6. 동계올림픽 경기장 통합 위탁관리
- 7. 설상,빙상 분야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시설 지원
- 8.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시설 공유재산(토지, 건물) 관리 총괄
- 9. 동계올림픽 경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동계올림픽 경기장(각종 설비 포함) 보수·보강공사 등 유지관리
- 11. 동계올림픽 경관조형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12.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 13.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14. 동계올림픽 특구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5. 특구실시계획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인가·허가 의제사항 처리
- 16. 특구 관련 내외국인 투자 및 거주 유도

⑦ 삭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삭도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총괄
- 2. 사업 재원 확보 관리(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 3.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관리
- 4. 개별법 인가·허가 추진(산지전용, 백두대간 개발행위 등)
- 5. 사업계획 변경 심의(문화재현상변경, 공원계획)
- 6. 삭도시설 건설 추진(실시 설계 및 본공사 시행)
- 7. 국립공원지역 환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8. 환경영향평가 환경자문협의체 구성·운영
- 9. 삭도시설 운영 국립공원공단 공동관리 방안 마련
- 10. 케이블카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업사업 발굴

제21조(해양수산물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물에 수산정책과·어업진흥과·양식산업과·해양항만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수산정책과장·어업진흥과장·양식산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양수산정책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 2. 관할구역안의 6급 이하 시군 수산직공무원 조정
- 3. 수산정책 종합·기획 조정
- 4. 수산단체 지도·감독
- 5. 어촌지역 경제진흥대책
- 6. 수산물생산 및 어업구조 조정
- 7.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허가 처분
- 8. 어업기본통계·조사
- 9. 어업분쟁 조정 및 어구피해 예방
- 10. 어구·어업개발 및 어업제도 개선
- 11. 해양과학 기술산업 육성
- 12.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조정
- 13. 해양 관련 어촌종합개발

- 14. 수산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
- 15. 인공어초시설 및 시험어초 개발
- 16. 어항시설·사용허가·사후관리 및 감독
- 17.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18.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 수립
- ④ 어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 2. 노후어선 대체사업 및 어로시설사업 집행 사후관리 지도
 - 3. 낚시어선 운영 관리지도
 - 4. 범칙어선 행정처분
 - 5.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 6. 어선안전·월선조업 예방 및 동해어로보호본부 운영
 - 7.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수립
 - 8.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 9.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
 - 10. 한·일 어업협정 지도 및 위반어선 사건 처리
 - 11. 해양수산분야 국제교류협력
 - 12. 어업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 13. 자율관리어업 육성
 - 14. 연구교습어업 및 시험사업 운영
 - 15. 적조(赤潮) 및 해파리 예찰 관리
 - 16.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 등
- ⑤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 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 3. 면허(해외)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
 - 4. 면허처분 양식장 실태조사 및 관리(외해양식장 포함)
 - 5. 적조 대책 수립 및 대응대책 수립
 - 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리
 - 7. 어장정화·정비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추진 등
 - 8. 수산증·양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9. 수산물 유통조사 및 판매촉진
 - 10.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 11. 수산물특산물 전통식품 발굴 및 품질인증 지도
 -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단속
 - 13. 마을어장 목장화 및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 14. 수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 15.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 16.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17.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⑥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승인·시행
-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시행
- 3. 연안관리 및 오염실태 조사 조치
- 4.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
- 5. 매립면허 및 공사실시계획·준공인가
-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 7. 항만시설 및 관리
- 8. 연안어장 및 항·포구 환경정화
- 9. 연안어장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 10. 어장환경조사 및 해역 지정·관리
- 1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추진
- 12. 해양심층수 개발 및 심층수 활용 증식·양식 등 해상지역 사업 추진
- 13. 속초 및 삼척 항만관리사무소 운영
- 14. ㈜강원심층수 관리
- 15. 해운산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
- 16.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 17.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사업 지원
- 18. 국제항로 활성화, 홍보, 편의시설 지원사업
- 19. 강원자치도 항만 물류계획 수립
- 20.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21. 그 밖의 해운산업 및 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소방장비회계과·예방안전과·화재대응조사과·구조구급과·소방감사담당관·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소방장비회계과장·예방안전과장·화재대응조사과장·구조구급과장·소방감사담당관·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성적 평정, 상훈
- 3. 소방공무원 채용, 교육훈련, 체력관리
- 4.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개선
- 5. 소방행정 종합기획
- 6. 사회복지요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7. 소방관서 기구·정원 관리 등 소방조직 관리
- 8. 소방관서 설치·운영
- 9. 소방력 확충 및 조정
- 10. 소방 시책 및 평가·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재난현장 연락관 및 소방분야 행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실·단)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소방장비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방분야 중기재정계획 수립
- 2. 소방 예산 편성·관리 및 결산 운영
- 3. 소방안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
- 4. 소방본부 급여, 연금, 지출 전반에 관한 사항
- 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6. 소방청사 신·증축에 관한 사항
- 7. 소방차량 보강 구매 및 정수배정에 관한 사항
- 8. 개인안전장비 및 소방복제에 관한 사항
- 9. 소방청사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10. 물품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11. 소방본부 및 소방서 2천만원 이상 통합계약에 관한 사항
- 12. 소방물품 외자구매 및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
- 13. 소방관서 기술·일반용역 및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 14. 대금청구채권 양도·양수·압류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재예방대책 기획운영·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4. 건축허가 동의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5. 소방 관련업 등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6. 소방 예방관련 법령에 관한 정비 및 질의회신
- 7.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9.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10.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업무에 관한 사항
- 11. 방염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위험물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단속에 관한 사항
- 13. 화재위험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측정장비(점검기구)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5. 예방소방행정 통계 작성 및 분석
- 16. 소방안전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소방안전활동 영상물 기획홍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19. 언론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 제공에 관한 사항
- 20. 홍보기자재 보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21.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2. 화재예방강화지구 승인에 관한 사항

⑥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방활동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 2. 화재원인의 통계 분석
- 3.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화재진압훈련 및 진압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5. 의용 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6. 산림화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7. 주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 9. 인명구조·피난유도 및 화재예방·진압
- 10.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에 관한 사항
- 11. 전시대비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12.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지도
- 13.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4. 광역화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소방사범 수사·송치에 관한 사항

⑦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원,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운영·평가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 4. 특수재난 소방대책 강구 및 인명 구급·구호에 관한 사항
- 5. 내수면 등 수난구호 종합대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6.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7. 소방 구급업무의 기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8. 구급기법 연구지도 및 의료정보 수집운영에 관한 사항
- 9. 구조·구급 장비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 1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1.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12. 구급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13. 감염병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4. 감염병 구급지원 등 소방대응에 관한 사항
- 15. 생활안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6. 119생활안전대에 관한 사항
- 1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
- 18. 안전약자 등 생활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 19. 도민 소방안전교육·체험·지도에 관한 사항
- 20. 항공대 구조·구급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 2.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3.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 4. 지휘부 특명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5.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6. 감사·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7. 소방정책·제도의 개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 8. 감사·감찰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9.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 10.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11. 소방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 12. 소방분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13. 민사·행정소송 방침수행 및 소송대응에 관한 사항
- 14. 소방업무 사전컨설팅 및 법률자문

⑨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119신고접수·상황 관제 및 주요 상황업무 통계분석
- 2.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협조 및 상황전파
- 3. 응급환자 안내·상담 및 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 4.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및 통계분석
- 5. 긴급구조시스템 운영관리
- 6. 소방전용망 및 전용회선(119회선 포함) 운영관리
- 7. 지령방송 및 유·무선통신시스템 운영관리
- 8. CCTV 및 차량정보 단말기(MDT) 운영관리
- 9. 소방 GIS 및 DB 운영관리
- 10.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소방정보화 사업 추진
- 11.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12.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
- 13. 119위치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관리
- 14. 119신고 확대서비스 운영 및 통계분석
- 15. 위성중계통신망(ESC차량 포함) 운영관리
- 16. 소방관서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운영관리
- 17. 재난상황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18. 계절별 재난상황 전망 분석
- 19. 재난현장 촬영 및 언론 브리핑
- 2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취약점 분석·평가
- 21. 소방정보통신보안 및 소방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 2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복구·훈련에 관한 사항
- 23. 재난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23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미래농업교육원을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 문서, 인사 및 공인관수
- 2. 예산, 회계, 물품조달 및 재산·청사관리
- 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6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① 연구개발국에 연구협력과·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농업환경연구과와 특화작목연구소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이하 “농식품연구소”라 한다)·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이하 “옥수수연구소”라 한다)·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감자연구소(이하 “감자연구소”라 한다)·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산채연구소(이하 “산채연구소”라 한다)를 두며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농업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2. 시험연구 사업의 기획·조정·성과관리·예산 총괄
- 3. 농업 연구직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수립 및 시행
- 4. 대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산학연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5. 농업경영 및 정보화에 관한 조사연구
- 6. 농가 경영분석 소득증대 및 유통에 관한 연구
- 7. 정보화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및 운영
- 8.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9.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10.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 11.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 12. 스마트팜 통합시스템·문헌정보실·기관 누리집 운영 관리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식량·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 2. 식량·특용작물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 3. 식량·특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 4. 식량·특용작물 연구성과 현장 실용화 사업
- 5.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
- 6.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산업화 연구

7. 식량·특용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8. 신품종 시범단지 확대 및 지원
9. 벼 작황조사 및 보고
10. 식물 유전자원 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관리

⑤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2. 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종자 생산
3. 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
4. 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
5. 신소득 원예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
6. 유망 수출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 연구
7. 자유무역협정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8.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지역적응성 연구
9. 원예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10.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지원

⑥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농업 연구
2.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 연구
3. 유기자원 활용 및 시비량 설정 연구
4. 지속농업을 위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모니터링
5. 토양·비료·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
6. 주요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확립
7. 재배작물 주요 병해충 조사, 방제 및 농약등록 연구
8. 천적·익충 이용 곤충 산업화 연구
9. 자원식물·미생물 은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농특산물·미생물 활성화 및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11. 생물자원 이용 농자재 및 생물농약 개발 연구
12. 그 밖에 작물이상 증상 진단 및 처방 민원사무

⑦ 농식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2. 식품 중간 소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3. 가공식품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4. 농식품 제품 표준화 공정기술 개발
5. 농식품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6. 식품관련 창업지원 기술 컨설팅
7. 농산물 식품성분 분석 및 지원
8. 유용 균주를 이용한 발효 가공 상품 개발
9.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0.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⑧ 옥수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 2. 옥수수 기본식물·원원종·보급종 종자 생산
- 3. 옥수수 종자생산 기술개발
- 4.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 5. 기능성 옥수수 산업화 확산 및 지원
- 6. 옥수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
- 7. 옥수수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8.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9.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 10.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⑨ 감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감자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 2. 감자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 3. 감자 현장애로 및 실용화 기술개발
- 4.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보급
- 5. 감자 산업화 확산 및 지원 기술 개발
- 6. 감자 바이러스 검정기술 개발
- 7.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및 농업환경 연구
- 8. 고랭지채소 현장애로기술 지원
- 9. 고원야생화 식물원 유지 및 관리
- 10.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11.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 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⑩ 산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채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 2. 산채 경영비 절감 및 재배기술 개발
- 3.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 연구
- 4. 산채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연구
- 5. 산채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
- 6. 과채류 현장애로기술 지원
- 7. 파프리카·토마토 품종특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
- 8. 고온기 극복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실증 연구
- 9. 파프리카·토마토 안정생산 및 스마트팜 기술 도입 실증
- 10.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11. 청사·시설·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 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27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기

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예산편성 및 평가
2.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 4-H) 육성 및 지원
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관리 지원
4.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5.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
6.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
7. 농촌진흥사업 홍보
8.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9.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원
2. 농업 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원
3. 생력재배 새기술 보급
4. 주요농작물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5.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기술지원
6. 원예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7. 산채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8. 특용·약용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9. 스마트농업 현장확산 기술지원
10. 축산기술 지원 및 조사료 품질관리
11. 특화작목 육성 및 소득원 개발 기술지원
12.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13. 병해충 발생 분포조사 및 예찰·관찰포 운영관리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
15.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및 손실보상
16.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17.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 지원

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자원 소득화 지원
2.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 및 마케팅 지원
3. 농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4.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5.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역량강화
6. 향토음식산업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및 산업화
8. 농업·농촌 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9. 도시농업 및 생활원에 기술지원
- 10. 식문화 창업기반 및 가치소비 확산
- 11.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관리
- 12. 그 밖에 농촌자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8조(미래농업교육원) ① 미래농업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농업교육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미래농업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 2. 청사·장비·물품·재산의 유지 관리
- 3. 미래농업 교육 및 영농기술 교육
- 4. 농기계훈련 및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
- 5. 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
- 6. 그 밖에 농촌발전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제29조(원장)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공무원교육원에 총무과·교육운영과 및 교육기획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관인관리
- 2. 직원복무 및 복리후생 관리
- 3. 예산·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4. 청사·물품 및 재산관리
- 5. 교육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
- 6. 교육생 후생·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 7. 도서실 및 행정사료관 운영관리
- 8. 방송실 및 교육기자재 관리
- 9.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 2. 교육생 선발등록 및 근태·학적 관리
- 3. 강사 초빙·안내
- 4. 교육교재 편찬·수급
- 5. 사이버 및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 6. 사이버교육계획 및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운영
- 7.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 8. 누리집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관리

9. 의무실 운영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2.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연구
- 3.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4. 교과목 편성 및 교육교재의 개발
- 5. 교육훈련 평가분석·설문 및 성과 측정기법 개발
- 6. 지방공무원의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 7. 액션러닝 등 문제 해결형 교육기법의 진행
- 8. 우수강사 풀(Pool) 구축 및 관리
- 9.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0. 도민 자치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 교육
- 11. 찾아가는 도민 현장교육 및 각급 기관 단체 직무 관련 교육
- 12. 도민강좌 및 도민 사이버 교육
- 13. 시범교육과정 및 위탁교육과정 운영
- 14.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31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물환경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원을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원으로, 물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 인사, 직원관리 및 공인관수
- 2. 예산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 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감염병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 2. 감염병대응, 질병조사 및 수인성질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보건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식약품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 2. 식품분석 및 약품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부내 업무 총괄

⑥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물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 2. 물환경분야 연구·검사에 관한 사항
- 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지도
- 4.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환경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⑦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 2. 대기환경분야 연구·검사에 관한 사항
- 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지도
- 4. 그 밖의 부내 업무총괄 및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⑧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먹는 물 수질검사
- 2. 식품, 식품용기·포장·기구제품 등의 검사
- 3.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 4.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 5.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

제33조(감염병·식품·물환경·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대응과(科)·질병조사과(科)·수인성질환과(科)를 두고, 식품연구부에 식품분석과(科)·식품미생물과(科)·약품화학과(科)·농산물검사과(科)를 두며,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먹는물분석과(科)·생태환경과(科)·토양화학과(科)·산업폐수과(科)를 두고, 대기환경연구부에 청정대기과(科)·대기공학과(科), 환경안전과(科), 생활환경과(科)를 둔다.

② 감염병대응과장·질병조사과장·수인성질환과장·식품분석과장·약품화학과장·농산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식품미생물과장·생태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수계조사과장·먹는물분석과장·토양화학과장·산업폐수과장·청정대기과장·대기공학과장·환경안전과장·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감염병연구부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2. 감염병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진단
- 4.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확인 진단
- 5.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 6.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확인진단
- 7. 세균성 호흡기질환 확인진단
- 8.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
- 9. 119 구급차 병원성 미생물 안전성 검사
- 10.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 11.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 12.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
- 13.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 운영
- 14.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15. 지역거점 진단기관 표준실험실 운영

- 16. 그 밖에 감염병연구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
 - 2. 일본뇌염 예측 조사(매개모기 발생 및 병원체 조사)
 - 3. 말라리아 예측 조사(매개모기 발생 및 원충 감염률 조사)
 - 4. 진드기(참진드기, 털진드기) 발생감시 및 분포 감시
 - 5.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에 관한 유행 감시 및 진단검사
 - 6.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쯤쯤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열성질환 진단검사
 - 7.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감염병 진단검사
 - 8. 진드기매개질환(SFTS, 라임병) 진단검사
 - 9. 모기매개질환(일본뇌염, 말라리아) 진단검사
 - 10.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 11. 디지털 자동 모기계측 시스템 운영
 - 12. 매개체감염병 환자 발생지역 현장 역학조사
 - 13. 감염병자문위원회 운영
 - 14.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 15. 그 밖에 질병조사에 관한 사항
 - ⑤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집단 환자발생 원인진단 및 역학적 특성조사
 - 2. 장티푸스 등 2급 법정감염병 진단 검사
 - 3. 세균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 4. 바이러스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 5. 원충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 6. 세균성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
 - 7. 바이러스성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
 - 8. 장내바이러스 질환진단 및 유행 조사
 - 9. 항생제 다제내성균 발생감시 및 조사연구
 - 10. 의료관련감염병(CRE, VRSA) 진단
 - 11. 에이즈 및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검사
 - 12. 결핵 감염 진단 검사(IGRA)
 - 13. 기생충감염퇴치를 위한 실험실적 진단 및 조사
 - 14. 집단발생 역학(원인)조사 교육 및 기술지도
 - 15. 보건소 실험실진단업무 교육 및 기술지도
 - 16. 그 밖에 수인성질환에 관한 사항
 - ⑥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식품 등의 규격 기준 검사
 - 2. 식품첨가물 검사
 - 3. 식품, 식품재료 등의 성분 분석
 - 4. 식약품연구부 소관 행정 종합 기획 및 조정

5. 식품 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6.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실태에 관한 조사
 7. 식품 및 식품재료에 대한 생리활성과 기능성에 관한 연구
 8. 식품 제조업소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 등 기술지원
 9. 식품 중 방사능오염물질 검사
 10. 영양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양성분함량 검사
 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등 영양표시제 검사
 12.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및 식품품질 보증체계 구축 업무
 1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검사
 14. 식품 등의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품질관리 지원
 15. 그 밖에 식품분석 및 식약품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⑦ 식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제조업체 미생물 규격기준(자가품질) 검사
 2. 유통식품 중 미생물 규격기준(수거검사) 검사
 3. 유해물질(식품미생물) 안전관리
 4. 의약품 중 미생물 안전성 검사
 5. 화장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
 6.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7.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8. 학교급식 중 미생물 안전성 검사
 9. 농·수산물 중 미생물 오염 예방조사
 10. 식의약품 중 미생물 오염 예방조사
 11. 도내 식품 제조업체 미생물 관련 교육 및 지도
 12. 식품 미생물 분야 숙련도 평가
 13. 위생용품 미생물 검사
 14.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
 15. 그 밖에 식품미생물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⑧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
 2. 생약 등의 규격기준 검사
 3. 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검사
 4. 화장품의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검사
 5. 의약외품(방역약품 포함) 검사
 6. 위생용품 검사
 7. 유해물질 검사
 8. 수산물의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검사
 9. 의약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
 10. 의약품의 위·수탁계약 및 자가 품질 검사
 11. 최초수입 의약품, 의약외품 검사

- 12. 향정신성의약품 검사
- 13.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
- 14.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관리
- 15. 소관업무 분야의 조사 및 연구사업
- 16. 그 밖에 약품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⑨ 농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부서 행정업무(기획·보고, 의회, 예산) 총괄
 - 2. 시험·검사기관 운영(매뉴얼, 지침서, 절차서) 품질관리문서 구축
 - 3.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농산물 자체 수거
 - 4.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5. 현장검사소 미설치지역(원주시, 강릉시) 농산물 검사
 - 6. 18개 시군 유통단계 수거(각 시군 위생계) 의뢰 농산물 검사
 - 7. 민원(개인) 의뢰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 8. 농산물, 생약(한약재) 및 식약공용 농·임산물 중금속 검사
 - 9.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지역농산물 내 농산물 검사
 - 10. 생약(한약재), 식품원료의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 11. 식품 이외의 식약공용 농·임산물 검사
 - 12.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표시제품 검사
 - 13.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검사
 -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잔류농약 검사 숙련도 평가 실시
 - 15.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연구사업
 - 16. 부적합 농산물 압류 및 폐기
 - 17. 그 밖에 농산물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⑩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하천·호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
 - 3.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 4. 하천, 호소의 저질에 관한 오염도 검사
 - 5. 광산지역 갭내수 수질 오염도 검사
 - 6. 양어장 배출수 수질오염도 검사
 - 7. 수계유역관리 오염원 조사 및 영향평가
 - 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9. 수질오염총량 관련 기획 및 연구
 - 10.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 11. GIS 구축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 12. 수질분야 국가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 13.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
 - 14. 오염우심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감시
 - 15.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먹는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 2. 전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 3. 지하수(먹는물) 수질검사
- 4. 먹는샘물원수 및 제품수,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
- 5.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 6. 먹는물 공동시설(샘터수, 약수) 수질검사
- 7. 민간합동 수질안전성 확인검사
- 8. 저수조, 옥내급수 등 수돗물 오염 수질조사
- 9. 지하수 국가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 10. 수돗물 정수처리용 수처리제 등 규격기준 검사
- 11. 먹는물분야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 12. 정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 13. 먹는물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 14. 지하수 오염관련 수질모니터링 업무
- 15. 그 밖에 먹는물 분석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⑫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분야 수질시료에 대한 미생물검사
- 2.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 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 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 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연구
- 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8. 생태독성실험에 대한 조사연구
- 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
- 10. 지하수(생활·농업·공업용수) 수질검사
- 11. 목욕장 및 수영장 수질검사
- 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 13. 조류경보제 운영 및 하천, 호소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 14. 그 밖의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⑬ 토양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
- 2. 토양오염도 검사
- 3.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 4. 토양오염 실태조사
- 5.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 6. 토양,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수행

- 7.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 8. 폐기물과 토양 중 벤조(a)피렌 분석
- 9. 폐기물자원재생 및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 10. 폐기물이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 11. 그 밖에 토양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⑭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검사
 - 2.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 3.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 4.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
 - 5. 정화조 수질검사
 - 6.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 7.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
 - 8.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검사정 수질검사
 - 9.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
 - 10. 하수 및 분뇨처리장 처리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 11. 폐수시설의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 12. 오·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 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연구
 - 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 15. 그 밖에 산업폐수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⑮ 청정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 3. 도시대기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운영
 - 4. 대기오염경보제(미세먼지, 오존) 운영
 - 5.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
 - 6.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및 관리
 - 7. 측정소 운영관리 실태 점검
 - 8. 기상관측표준화 품질관리
 - 9.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0. 온실가스 측정망 운영
 - 11. 강원자치도 미세먼지 발생특성 조사·연구
 - 12.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 13.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관리
 - 14.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⑯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업장 등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 2.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도 및 진동도 검사

- 3.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분진 검사
- 4. 대기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5.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 6. 소음도와 진동도에 관한 조사·연구
- 7.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 8.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 9. 대기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 10. 미량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연구
- 11. 산림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연구
- 12. 대기환경 기동반 운영
- 13. 그 밖의 대기공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⑰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석면 분석
- 2.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 3.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 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 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
- 6. 어린이놀이터시설 바닥재 오염도검사
- 7. 석면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 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연구
- 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관리법에 따른 검사
-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평가업무
- 11. 그 밖에 환경안전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⑱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및 관리
- 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5.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6.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오염도 검사
- 7. 소규모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8. 주택 라돈 정밀 조사
- 9.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 등 조사·연구
- 10. 악취 민원발생사업장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 1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
- 12.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검사
- 13. 그 밖의 생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4조(동부지원에 두는 과) ①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科)를 두고, 감염병진단과장은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보한다.

② 감염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진단
- 2.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 4.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
- 5. 병원성 비브리오팀속 발생 감시 및 조사연구
- 6. 잠복 결핵 감염검사
- 7.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

③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획·사무·관인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2. 예산·물품·장비 및 청사관리
- 3. 먹는 물 수질검사
- 4. 식품, 식품용기·포장·기구제품 등의 검사
- 5.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

제35조(관할구역 등)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제36조(학교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지휘역량강화센터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2. 인사·징계·보안에 관한 사항
- 3.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문서·상훈 및 공인·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5. 직장훈련·체력검정, 당직·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 6.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 7.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8. 태백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체험교육 운영지원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평가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4. 문제출제, 교육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 5. 교육생 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6.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 7. 교수요원 능력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교육과정별 교육진행 및 교육안내에 관한 사항
- 9. 강의실 및 교육장 관리·배정에 관한 사항
- 10. 외래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교육훈련 및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 3. 소방 관계 법령 및 소방시설 교육에 관한 사항
 - 4.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5. 교수·교관요원의 교육·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소방교육자료의 수집 및 분석
 - 7.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8. 전국 소방학교 공통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 9. 채용·승진시험 문제출제에 관한 사항
 - 10. 교육용 차량, 교육기자재 및 훈련·실습장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지휘역량강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 2. 현장지휘 훈련기법 연구·매뉴얼 개발·교육에 관한 사항
 - 3. 지휘훈련 교안 작성 및 시뮬레이션 운영에 관한 사항
 - 4. 특수·대형재난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사항
 - 5.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지휘훈련에 관한 사항
 - 6.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자 양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 7. 무인비행장치 소방 재난현장 전술운영, 항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5절 소방서

제38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9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 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대응총괄과·현장대응단을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 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 4. 청사 신·증축 및 공유재산·장비·물품의 수급관리
 - 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 6. 예산의 집행 운영
 - 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③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재예방업무 지도·감독
 - 2. 화재예방업무 지도·감독

- 3. 소방민원사무 처리
- 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 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감독
- 6. 소방안전대민교육에 관한 사항
- 7. 화재예방 및 홍보·지원·단속
- ④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감독
- 2.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
-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

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재난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 2.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
- 3.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출동대 편성·화재진압 및 현장조사·보존
- 5.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6.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7.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40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 ① 관할인구 15만 미만 소방서에 소방행정과·대응총괄과·현장대응단을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 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 4. 청사 신·축축 및 공유재산·장비·물품의 수급관리
- 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 6. 예산의 집행 운영
- 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재예방업무 지도·감독
- 2. 소방관련 홍보활동 및 대민교육에 관한 사항
- 3. 소방민원사무 처리
- 4.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 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감독
- 6.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감독
- 7.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
-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9.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
- 11. 화재예방 및 홍보·지원·단속

④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재난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 2.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
- 3. 출동대 편성·화재진압 및 현장조사·보존
- 4.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 5.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6.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41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라 한다) 를 둔다.

② 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안전센터에 안전센터장을 두며, 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다만, 후평안전센터장·혁신안전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④ 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 2. 화재예방 및 계몽·지원·단속
- 3. 출동대 편성·화재진압·구급업무 및 화재현장 조사·보존
- 4. 소방조사 및 「소방기본법」 위반사항 단속
- 5. 진압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 및 관리
- 6.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
- 7. 구조업무 지원 및 일상경비 집행
- 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42조(119구조대의 설치) ①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 구조대(이하 “구조대” 라 한다)를 둔다.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각종 사고 및 재난시 인명구조
- 2. 구조장비의 유지관리
- 3.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원
- 4.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구조대와의 협조체제 유지
- 5. 기타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43조(119지역대의 설치)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이하 “지역대”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6절 특수대응단 및 환동해특수대응단

제44조(단장) 특수대응단장과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45조(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① 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긴급기동대, 횡성항공대, 양양항공대, 터널구조대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긴급기동대장·횡성항공대장·양양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하고, 터널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재해·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지원
- 2. 특수장비 운용교육 및 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3. 테러·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 4. 특수구조계획·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5.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④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특수·대형재난·수난사고현장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특수장비 운용교육 및 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3. 테러·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 4. 특수구조계획·대응·대형·화학·수난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 5.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⑤ 횡성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 2. 항공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
- 4. 항공구조계획·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5. 항공기 운용 및 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⑥ 양양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 2. 항공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
- 4. 항공구조계획·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5. 항공기 운용 및 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인명구조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 ⑦ 터널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터널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2. 춘천~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재난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 3.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터널특수장비 운용 및 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5. 터널 구조계획·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6. 터널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46조(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① 운영지원과·긴급기동대·강릉항공대·산악구조대를 두며 각 과(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재해·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지원
 -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사, 징계, 복무감찰, 감사, 보건·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 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 5. 특수대응 대원의 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6. 특수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환동해특수대응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③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영동지역 대형산불 및 풍·수·설해 등 특수재난·재해 대응에 관한 사항
 - 2. 수난구조 및 산악사고 인명구조 지원
 - 3. 영동지역 주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 4. 영동지역 대형화재 진화 지원
 - 5. 동해북평공단,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 사고대응
 -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 ④ 강릉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 2. 항공 산불진압에 관한 사항
 - 3. 항공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
 - 5. 소방항공기 운용 및 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 ⑤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악구조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2.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산악구조 전문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4. 산악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산악구조장비 운용 및 정비·점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7절 강원도립대학교

제47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립대학교에 교학처·기획홍보처·사무국·산학협력처를 둔다.

② 교학처장·기획홍보처장·산학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 2. 학적관리(휴학, 복학, 제적, 전과, 등록)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3. 시험,학점 등 성적관리·학사징계 및 학적조회·제증명 발급
-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5. 학생 상벌·집회·행사 및 간행물 지도·감독
- 6. 학생자치회·학생복지·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
-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 8. 학술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 관리
- 9. 연구실 안전관리
- 10. 교원임용 등 인사관리
- 11. 감염병 예방 등 학생 보건관리
- 12. 산업체 위탁교육 관련 사항
- 13. 인권 및 학생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교무·학생 및 실험 실습 등 교육에 관한 사항

④ 기획홍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2. 대학의 대외 홍보
- 3. 학생 해외유학·연수 및 여행에 관한 사항
- 4. 대내외(국제) 교류 협력
- 5. 대학 특성화 등 재정지원 사업
- 6. 기관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업무
- 7. 대학관련 통계 업무
- 8. 입학 및 학생정원, 학과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 9. 신입생 모집 등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기획 및 홍보, 입학, 대학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 심사와 발령 등 규정 관련 업무 및 도의회 관련 업무
- 2. 관인 관수 및 문서관리, 보안 및 통계업무

- 3.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업무
- 4. 교원 외의 직원 인사관리
- 5. 급여·연금·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
- 6.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의 유가증권 출납
- 7. 시설물의 영선 및 유지관리
- 8. 국유·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 9. 각종 물품의 수급 및 차량 운영·관리
- 10. 실험실습관리위원회 운영
- 1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수급 관리
- 12. 실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
- 13. 실습선에 관한 사항
- 14.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15. 해기품질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6. 해기품질 관련 위원회의 운영
- 17.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수급 관리
- 18. 그 밖에 대학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산학협력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학협력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교수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3. 취업·창업 교육·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4.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 6.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 7. 4차산업 실현, 창의 혁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8. 산·학·연·관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산학협력 및 취업·창업 및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제48조(부속기관 및 특수법인) ① 강원도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종합정보관과 학생생활관, 평생교육원을 두며, 관계 법령 또는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 등은 학칙으로 정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강원도립대학교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

③ 특수법인과 부속기관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본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제49조(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0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에 총괄기획관을 둔다.

② 총괄기획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영동·남부권 정책 기획 및 조정
- 2. 영동·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 3. 행정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
- 5. 계약(공사·용역·물품)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6. 예산·경리 및 물품조달관리
- 7. 민원창구 운영
- 8. 관할구역안 동향관리
- 9. 그 밖에 다른 국·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장 사업소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제51조(원장) ①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개발부를 두며, 연구개발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여성·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2.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복지 정책개발
- 3.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4.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지원
- 5. 주요정책의 성 평등적 관점에 따른 분석·평가
- 6. 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 연구
- 7. 여성·가족·복지 정책포럼 개최 및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협력사업
- 8. 그 밖에 여성·가족 발전에 필요한 연구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

제53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4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7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② 지소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 2. 청사·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 3. 감자 우량종서의 생산 보급
- 4. 채종포산 종서의 후대 검정
- 5. 원종서 생산 업무
- 6. 그 밖에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5조(관할구역 등)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56조(소장)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7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질병진단과·축산식품검사과를 두며, 방역과장·질병진단과장·축산식품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복무·문서·보안 및 공인관수
- 2.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 3. 차량유지 관리 및 물품관리·조달
- 4. 가축의 방역업무 기획·조정
- 5. 가축질병의 방역과 법정가축전염병 검진
- 6. 해외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
- 7. 가축질병 예찰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 8.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질병 교육
- 9. 착유가축의 검사 및 유방염 방제사업
- 10. 중축질병관리·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 11. 가축전염병 및 위생관련 시험·연구
- 12.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분석
- 13.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 14.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
- 15.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보상평가 업무
- 16. 산학연 공동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 17. 가축방역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 18. 그 밖에 동물방역 및 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축 및 어류질병진단·혈청검사 및 지방병 조사
- 2. 각종 병리시험, 미생물, 면역, 유전공학적 검사
- 3. 야생동물 치료 및 질병조사
- 4.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예찰
- 5.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운영
- 6. 실험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 7.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 운영
- 8.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 9.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 10. 연구사업선정평가협의회 운영
- 11. 가축질병·진단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 12. 그 밖에 각종 실험 및 신종질병에 관한 업무
- ④ 축산식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축산물검사 업무 기획·조정
 - 2.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 감시 및 지도
 - 3.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 4. 축산물 내 미생물·항생제 내성균 검사
 - 5. 식육·원유·알 및 가공품 등 축산물 검사
 - 6.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 7. 관리수의사 및 검사원에 대한 지도·관리
 - 8. 시험·검사기관 능력평가 관련 업무
 - 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 10.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정밀정량 분석검사
 - 11. 한우유전자 및 쇠고기이력제 DNA검사
 - 12. 강원자치도 농수산 특산물 품질보증품 검사
 - 13. 축산물위생 및 검사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 14. 그 밖에 축산물 위생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제58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7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 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지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 2. 청사·물품·장비·시설물·재산의 유지 관리
 - 3. 가축방역·진단·혈청검사 및 법정가축전염병 검진
 - 4.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질병 교육
 - 5. 가축질병 예찰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 6. 착유가축의 검사 및 유방염 방제사업
 - 7. 중축질병관리·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 8.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분석
 - 9. 인수공통가축전염병 검진
 - 10.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
 - 11.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보상평가 업무
 - 12. 야생동물 치료 및 질병조사
 - 13.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 14. 식육, 원유, 알 등 축산물 검사
 - 15.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 및 미생물 검사
 - 16.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 17.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 18.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 19.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제59조(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업무는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제60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1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에 관리운영과 및 임업연구실을 두며, 관리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임업연구실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유림 경영 및 관리운영 총괄
- 2. 도유림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 3. 임산부산물·개발행위 지장임목 및 사전 승인된 임산물의 취득·처분 및 매각
- 4. 도유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및 기간갱신, 재허가, 반지처분
- 5. 도유림내 휴양림 등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 6. 강원숲체험장 조성·운영·관리
- 7.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운영·관리
- 8. 도유림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재해예방 등 산림사업 시행 및 관리
- 9. 도유림 내 산촌주택 관리·운영

③ 임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계에 관한 연구
- 2. 우량 종·묘 생산 및 기술보급 지도
- 3. 임산 버섯·산약초 등 유용임산물 재배기술 연구
- 4. 강원지역 휘귀·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 5. 임산 소득자원 개발연구 및 기술지도
- 6.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 7. 강원자치도 대표수종 발굴 및 증식 보급
- 8.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연구
- 9. 임업시험림 조성 및 관리
- 10. 그 밖의 산림소득원 개발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제62조(지원의 설치) ① 조례 제8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동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에 두고, 남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창죽동 9-479번지에 둔다.

③ 지원에 지원장을 두며, 동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남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 2.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
- 3.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 4. 탐방객의 체험학습 및 자연관찰 활동지원
- 5. 백두대간 자생식물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
- 6. 고산지대 특용수종 개발 및 보급
- 7. 생태복원 기법 등 각종 시험연구사업
- 8.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 9. 강릉·동해·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 지역의 도유림 관리 및 산림사업 추진

⑥ 남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 2. 매봉산 천상의 숲 시설 관리·운영
- 3. 매봉산 천상의 숲 활성화 사업 추진
- 4.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및 사용·대부 허가
- 5.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홍보·운영

제5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63조(소장)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 운영지원과, 도로보수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2. 공인, 민원, 보안, 복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 3. 소속직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4.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운영
- 5. 국·도비 예산집행 및 회계 관리
- 6. 각종 공사계약 체결 및 지도·감독
- 7.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
- 8. 과적차량 고정 검문소 운영 등

③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로보수 유지 및 시설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2. 도로포장공사 측량·설계·시공 및 도로유지 보수 관리
- 3. 교통안전시설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 4.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 5. 재해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6. 지방도 수로원 관리 및 도로유지 기동보수반 운영
- 7.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수급 및 저장관리

- 8.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 9. 장비의 정비 및 정비공장 운영 등

제65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9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 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 3. 청사·장비·시설·물품·재산 등의 유지관리
 - 4. 관할구역 내 포장도·비포장도의 유지보수 및 재해대책
 - 5. 지방도 기동보수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 6. 관할구역내 교량·터널·고가도로·지하차도·복개도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7. 과적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 8. 그 밖에 도로와 관련한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제66조(관할구역 등)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6절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제67조(센터장)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8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에 산불정책실, 예방대책실, 상황대응실, 통합지원실을 두며, 산불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예방대책실장, 상황대응실장, 통합지원실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산불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불예방, 대비, 진화 등 산불방지 업무 총괄
 - 2. 강원자치도 산불정책 기획 총괄 및 조정
 - 3. 산불관련 주요시책 발굴 및 개선 건의
 - 4. 시기별, 연도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 5. 강원자치도 산불정책분야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6. 산불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 7.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변경
 - 8. 강원자치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결산
 - 9. 산불방지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
 - 10. 강원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11. 산불관련 기록물 제작 및 관리
 - 12. 산불 유공자 포상·훈장에 관한 사항
 - 13. 동시다발 대형산불 지휘통제 방안 개선대책
 - 14. 강원자치도 산불안전관계관 회의 개최 및 운영
 - 15. 산불발생 언론대응 및 자료배포

- 16. 도민제안, 산불 소송, 민원 처리
- 17. 예산·회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18. 인사·복무·조직 및 공인관리
- 19.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0. 산불현장 영상 및 사진자료 수집·기록에 관한 사항
- ③ 예방대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불예방 정책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산불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3. 산불위험 취약지 조사계획 수립·시행
 - 4.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 5. 입산통제 및 등산로 지정·폐쇄고시 등 관리
 - 6. 산불지상진화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 7.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 8. 산불감시원 근무요령 및 초기진화대응 교육·훈련 추진
 - 9.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요령 및 진화대응 교육·훈련 추진
 - 10. 산불예방 교육·훈련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
 - 1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및 관리
 - 12. 군(軍)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 13. 산불예방임도 조성 및 관리
 - 14. 산불예방·진화 장비 및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 15. 산불예방·진화·감시 IOT 시설 및 장비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16.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
 - 17. 대형산불 위험예보 예측·분석
 - 18. 강원자치도 기상특성 분석 및 예보
- ④ 상황대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불 경보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
 - 2. 산불 상황대응 총괄·기획·조정
 - 3. 산불발생 상황접수 및 관계 기관 전파
 - 4. 산불 상황판단 초기대응, 지휘·조정·통제
 - 5. 상황실 상황관리 업무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6. 무선중계기 장비시설 구축 및 보수
 - 7. 산불 위기징후 감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 분석
 - 8. 산불재난 상황 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
 - 9.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0. 임차헬기 운영·관리·지휘에 관한 사항
 - 11. 산림청 진화헬기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공중진화를 위한 담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 13.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재난관련 통신망 통합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 15.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
 - ⑤ 통합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불 현장지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2. 산불지상진화 강화 업무에 관한 사항
 - 3.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4. 산불발생 현장 진화 지휘 총괄
 - 5. 산불발생 상황관리 및 긴급조치
 - 6. 산불진화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 7.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 8. 산불발생 원인조사·분석 계획 수립
 - 9. 산불조사 감식팀 안전관리계획 수립
 - 10. 산불대피시설 관리
 - 11. 산불 유형별 진화대책 개발에 관한 사항
 - 12. 산불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 13. 산불피해지 발생원인 조사·감식·복구 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4. 산불관련 각종 연구과제 추진 및 협업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 15. 무인항공기 활용한 현장정보 취득·상황지원에 관한 사항
 - 16. 산불현장대책본부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ICT 공간정보 기술기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 18. 산불진화 빅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69조(분소의 설치) ① 조례 제8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영서분소(이하 “영서분소”라 한다)를 둔다.

- ② 영서분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241에 둔다.
- ③ 영서분소에 분소장을 두며, 분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④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영서권 산불 상황대응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2. 영서권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3. 영서권 산불 발생원인 조사·분석계획 수립
 - 4. 영서권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영서권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7절 그 밖의 사업소

제70조(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 ① 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2조(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의 장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3조(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4조(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5조(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의 원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6조(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7조(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78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 이라 한다)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9조(하부조직)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80조(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1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정책과와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장·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2.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 3. 강원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4.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 5.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 6. 자치경찰 사무별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 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 9.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8조 중 도청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물정책관"을 "해양수산물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교육법무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재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에 두는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제26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길 26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감자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216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114-5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1. 도내 전지역 총괄 2. 전담지역(12시군)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1. 전담지역(6시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센터 및 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춘 천 소방서	후평119안전센터	춘천시 후석로 446	춘천시 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교동·효자3동·동면
	소양119안전센터	춘천시 금강로 15	춘천시 소양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
	효자119안전센터	춘천시 효명길 8	춘천시 효자1동·효자2동·강남동
	대룡119안전센터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7	춘천시 동산면·동내면·석사동·퇴계동 및 신동면 일부
	강촌119안전센터	춘천시 소주고개로 680	춘천시 남면·남산면 및 서면·신동면 일부
	신북119안전센터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5	춘천시 신사우동·신북읍·사북면·북산면 및 서면 일부
원 주 소방서	혁신119안전센터	원주시 동부순환로 201	원주시 반곡동·행구동·봉산동
	명륜119안전센터	원주시 남원로 467	원주시 명륜1동·명륜2동·개운동·단계동
	학성119안전센터	원주시 학성길 122	원주시 중앙동·학성동·원인동·일산동
	단구119안전센터	원주시 강변로 255	원주시 단구동·관설동
	우산119안전센터	원주시 우산공단길 9	원주시 우산동·호저면
	태장119안전센터	원주시 태장공단길 4	원주시 소초면·태장1동·태장2동
	소초119지역대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치악로 2842	원주시 소초면
	문막119안전센터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원주시 문막읍·부론면
	부론119지역대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부귀로 6	원주시 부론면
	신림119안전센터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	원주시 신림면·판부면
	홍업119안전센터	원주시 홍업면 북원로 1569-81	원주시 홍업면·귀래면·무실동
	귀래119지역대	원주시 귀래면	원주시 귀래면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운남리 운남길 5	
	기업119안전센터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20	원주시 지정면
강 룡 소방서	유천119안전센터	강릉시 선수촌로 64-28	강릉시 중앙동·교1~2동·홍계동 및 경포동(유천동)·성산면(금산리, 위촌리, 송암리, 관음리) 일부
	옥천119안전센터	강릉시 용지로 139	강릉시 옥천동·포남1동 및 성덕동(입암동, 청량동) 일부
	경포119안전센터	강릉시 해안로 502	강릉시 사천면·초당동 및 경포동(지변동, 죽현동, 대전동, 운정동, 난곡동, 저동, 안현동) 일부
	내곡119안전센터	강릉시 범일로 660	강릉시 왕산면·구정면·내곡동·강남동 및 성산면(구산리, 보강리, 어흘리, 오봉리, 산북리) 일부
	주문진119안전센터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26	강릉시 주문진읍·연곡면
	포남119안전센터	강릉시 하평2길 23	강릉시 포남2동·송정동 및 성덕동 일부(두산동, 학동, 병산동, 남향진동)
	옥계119안전센터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163	강릉시 옥계면·강동면
	정동119지역대	강릉시 강동면 정동5길 21	강릉시 강동면
동 해 소방서	천곡119안전센터	동해시 천곡로 120	동해시 천곡동·부곡동
	목호119안전센터	동해시 일출로 12-4	동해시 발한동·목호동·망상동·동호동
	북삼119안전센터	동해시 효자남길 33-10	동해시 북삼동·삼화동
	삼화119지역대	동해시 무릉1길 6(이로동)	동해시 삼화동
	북평119안전센터	동해시 공단1로 21	동해시 북평동·송정동
태 백 소방서	황지119안전센터	태백시 태백로1120	태백시 황지동·상장동 및 삼수동(구, 황지3동) 일부
	장성119안전센터	태백시 석공길 16-9	태백시 장성동·문곡소도동
	철암119안전센터	태백시 동태백로 552	태백시 구문소동·철암동
	화전119안전센터	태백시 태백로 814	태백시 황연동 및 삼수동 일부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속 초 소방서	노학119안전센터	속초시 미시령로 3226	속초시 조양동·청호동·교동·노학동 및 금호동 일부
	영랑119안전센터	속초시 동해대로 4217	속초시 영랑동·동명동 및 금호동 일부
	설악119안전센터	속초시 청봉로 5길 39	속초시 대포동
삼 척 소방서	봉황119안전센터	삼척시 봉황로 101	삼척시 남양동·교동·성내동·정라동·미로면
	미로119지역대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4037	삼척시 미로면
	도계119안전센터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46	삼척시 도계읍·신기면·하장면
	하장119지역대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522	삼척시 하장면
	신기119지역대	삼척시 신기면 신기역길 16	삼척시 신기면
	원덕119안전센터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504	삼척시 원덕읍·임원읍·가곡면
	임원119지역대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228	삼척시 임원읍
	가곡119지역대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509	삼척시 가곡면
	근덕119안전센터	삼척시 근덕면 교가길 37	삼척시 근덕면·노곡면
	노곡119지역대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8	삼척시 노곡면
홍 천 소방서	홍천119안전센터	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99	홍천군 홍천읍·화촌면·동면·북방면·두촌면
	북방119지역대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5길 3-5	홍천군 북방면
	화촌119지역대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95	홍천군 화촌면
	영귀미119지역대	홍천군 영귀미면 공작산로 505	홍천군 영귀미면
	두촌119지역대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9	홍천군 두촌면
	양덕원119안전센터	홍천군 남면 시동로 46	홍천군 남면
	서석119안전센터	홍천군 서석면	홍천군 서석면·내촌면·내면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내촌119지역대	구룡령로 2512	홍천군 내촌면
		홍천군 내촌면 아홉사리로1152-6	
	내면119지역대	홍천군 내면 창촌리 대한동길 57	홍천군 내면
	팔봉119안전센터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523	홍천군 서면
횡 성 소방서	횡성119안전센터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횡성군 횡성읍·갑천면
	갑천119지역대	횡성군 갑천면 갑천로 41	횡성군 갑천면
	둔내119안전센터	횡성군 둔내면 고원남로 42	횡성군 둔내면·청일면
	청일119지역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813	횡성군 청일면
	우천119안전센터	횡성군 우천면 우향3길 5-2	횡성군 우천면·안흥면·강림면
	안흥119지역대	횡성군 안흥면 안흥로 33-1	횡성군 안흥면
	강림119지역대	횡성군 강림면 태종로 50	횡성군 강림면
	공근119안전센터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30-5	횡성군 공근면·서원면
	서원119지역대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64	횡성군 서원면
영 월 소방서	영월119안전센터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63	영월군 영월읍·북면·남면
	남면119지역대	영월군 남면 연당로 160	영월군 남면
	북면119지역대	영월군 북면 방재로 229	영월군 북면
	주천119안전센터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15	영월군 주천면·한반도면·무릉도원면
	한반도119지역대	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732-7	영월군 한반도면 일부(신천리, 광전리, 옹정리)
	쌍용119지역대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126	영월군 한반도면 일부(쌍용리, 후탄리)
	산술119안전센터	영월군 산술면 응고개길 10-17	영월군 상동읍·산술면·김삿갓면
상동119지역대	영월군 상동읍	영월군 상동읍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김삿갓119지역대	구래로 211 영월군 김삿갓면 버드나무길 3-4	영월군 김삿갓면
평 창 소방서	평창119안전센터	평창군 살구실길 10	평창군 평창읍·미탄면
	미탄119지역대	평창군 미탄면 평안한치길 13	평창군 미탄면
	진부119안전센터	평창군 진부면 진부로 37	평창군 진부면
	봉평119안전센터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07-6	평창군 봉평면·용평면
	용평119지역대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04	평창군 용평면
	대관령119안전센터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20	평창군 대관령면
	대화119안전센터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934	평창군 대화면·방림면
	방림119지역대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672	평창군 방림면
정 선 소방서	조양119안전센터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27	정선군 정선읍·화암면·북평면
	화암119지역대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12	정선군 화암면
	북평119지역대	정선군 북평면 북평8길 5	정선군 북평면
	고한119안전센터	정선군 고한읍 강원남로 6455	정선군 고한읍
	신동119안전센터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342-4	정선군 신동읍
	임계119안전센터	정선군 임계면 송계4길 9	정선군 임계면·여량면
	여량119지역대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74	정선군 여량면
	사북119안전센터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9	정선군 사북읍·남면
	남면119지역대	정선군 남면 벌어곡1길 37	정선군 남면
철 원 소방서	태봉119안전센터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	철원군 갈말읍 일부(문혜리, 내대리, 상사리, 동막리, 지경리, 토성리, 정연리)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송119안전센터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김화119안전센터	철원군 서면 약수로 76	철원군 김화읍·서면·근남면
	자등119지역대	철원군 서면 자등로 523	철원군 서면
	갈말119안전센터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29	철원군 갈말읍 일부(군탄리1~3리, 신철원리1~4리, 지포리1~3리, 강포리)
화 천 소방서	화천119안전센터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길 47	화천군 화천읍·간동면·상서면·하남면
	간동119지역대	화천군 간동면 동림길 17	화천군 간동면
	상서119지역대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7759-15	화천군 상서면
	사내119안전센터	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1길 6	화천군 사내면
양 구 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92	양구군 동면·국토정중앙면·방산면·해안면
	동면119지역대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89-5	양구군 동면
	국토정중앙 119지역대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삼팔선로 17-1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방산119지역대	양구군 방산면 장거리길 36	양구군 방산면
	해안119지역대	양구군 해안면 편치불로 1312	양구군 해안면
인 제 소방서	인제119안전센터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71	인제군 인제읍·남면
	남면119지역대	인제군 남면 삼팔선로 2104	인제군 남면
	원통119안전센터	인제군 북면 원통로 276	인제군 북면·서화면
	서화119지역대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81번길 37	인제군 서화면
	기린119안전센터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4100	인제군 기린면·상남면
	상남119지역대	인제군 상남면 구름울길 48	인제군 상남면
고 성 소방서	간성119안전센터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7-11	고성군 간성읍 및 죽왕면 일부(향목리, 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구성리)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광119안전센터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320	고성군 토성면 및 죽왕면 일부
	거진119안전센터	고성군 거진읍 수외길 19	고성군 거진읍·현내면
	현내119지역대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286	고성군 현내면
양 양 소방서	양양119안전센터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양양군 양양읍·손양면·서면
	하조대119안전센터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155-33	양양군 현북면·현남면
	강현119안전센터	양양군 강현면 장산1길 26	양양군 강현면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2조제2항 관련)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춘천소방서	춘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원주소방서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강릉소방서	강릉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동해소방서	동해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태백소방서	태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속초소방서	속초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삼척소방서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홍천소방서	홍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횡성소방서	횡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영월소방서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평창소방서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로 37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정선소방서	정선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철원소방서	철원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화천소방서	화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양구소방서	양구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인제소방서	인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고성소방서	고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양양소방서	양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11	도내 전지역 총괄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동물위생시험소 · 지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5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춘천시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동 부 지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모산로 214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남 부 지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내길 47	원주시 · 홍천군 ·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중 부 지 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8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북 부 지 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성천길 15-14	속초시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6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1. 지방도 총괄 관리 2. 다음지역 지방도의 전담관리 춘천시(신동면, 동산면, 남산면, 남면, 서면 일부지역) 원주시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 동면, 내촌면, 남면, 서면) 횡성군 영월군(수주면, 남면, 서면, 북면, 주천면) 평창군(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미탄면) 인제군(상남면 일부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내면), 평창군(진부면, 도암면, 용평면) 정선군(북평면) 인제군(남면, 기린면, 상남면, 북면 일부지역) 고성군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정선군(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동면, 남면, 신동읍)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춘천시(사북읍, 신북읍, 서면 일부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서화면, 북면 일부지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 개편에 따른 과 단위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2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출장소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 (총괄)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8	1,762	137	4,594	18	39	438	60
정무직	계	4	1						3
	도지사	1	1						
	감사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11	10	1					
4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5급상당	소계	7	6	1					
	국제관계대사	1	1						
	비서관	5	4	1					
	정책특보	1	1						
6급상당	소계	2	2						
	비서	2	2						
8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일반직	계	2,253	1,477	136	140	18	39	386	57
1급	소계	1	1						
	관리관 · 별정	1	1						
2급	소계	2				1	1		
	이사관	2				1	1		
2~3급	소계	2	1	1					
	이사관 · 부이사관	2	1	1					
3급	소계	14	12		1		1		
	부이사관	14	12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3~4급	소계	2	1						1
	부이사관·서기관	2	1						1
4급	소계	109	72	11	7	1	3	14	1
	행정	48	25	9	6	1	3	3	1
	기술	15	15						
	행정·기술	37	32	2	1			2	
	행정·별정								
	기술·농업연구	2						2	
	기술·녹지연구	1						1	
	기술·수의연구	1						1	
	기술·어촌지도	1						1	
	기술·해양수산연구	1						1	
	기술·소방정	1						1	
	행정·전문경력관가군								
	행정·기술·별정								
	행정·기술·해양수산연구	1						1	
	기술·농업연구·수의연구	1						1	
5급	소계	427	336	20	15	3	9	31	13
	행정	207	156	17	10	3	5	6	10
	공업	7	7						
	녹지	14	8					6	
	수의	5	5						
	농업	11	9		1			1	
	해양수산	9	9						
	보건	2	2						
	환경	12	12						
	시설	36	32		1		2		1
	의무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방송통신	3	3						
	행정 · 사회복지	10	10						
	행정 · 사서	2	2						
	행정 · 속기	1		1					
	행정 · 공업	9	9						
	행정 · 녹지	2	1					1	
	행정 · 농업	9	7	1	1				
	행정 · 해양수산	5	4					1	
	행정 · 보건	5	5						
	행정 · 환경	5	5						
	행정 · 시설	23	18	1	1		1		2
	행정 · 방송통신	4	4						
	행정 · 별정								
	행정 · 전문경력관가군								
	행정 · 학예연구	2	1					1	
	공업 · 시설	7	3					4	
	공업 · 환경	1	1						
	공업 · 방송통신								
	공업 · 운전	1	1						
	농업 · 수의								
	농업 · 시설	1	1						
	농업 · 농업연구	3	2					1	
	녹지 · 환경	2	2						
	녹지 · 녹지연구	1						1	
	수의 · 수의연구	7						7	
	해양수산 · 시설	1	1						
	해양수산 · 어촌지도	1	1						
	보건 · 간호	3	3						
	보건 · 약무								
	보건 · 약무 · 간호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환경 · 시설	2	1				1		
	시설 · 방재안전	2	2						
	시설 · 학예연구	1	1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시설 · 녹지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농업 · 농업연구	1						1	
	행정 · 시설 · 학예연구								
	행정 · 해양수산 · 환경	1	1						
	공업 · 보건 · 환경								
	공업 · 환경 · 시설	1	1						
	의무 · 보건 · 간호	1	1						
	환경 · 녹지 · 환경연구 · 녹지연구	1						1	
	의무 · 보건 · 간호 · 약 무 · 수의	1	1						
6급	소계	790	512	51	38	5	17	134	33
	행정	298	187	46	15	4	7	22	17
	세무	9	8						1
	사회복지	3	3						
	전산	12	8		3		1		
	사서	1		1					
	속기	2		2					
	공업	33	21		6		1	3	2
	농업	26	22					3	1
	녹지	33	21					11	1
	수의	56	11					45	
	해양수산	31	23		4			4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보건	11	9				1		1
	식품위생	1	1						
	간호	4	2		2				
	환경	21	19				1		1
	시설	98	76		2		4	9	7
	방재안전								
	방송통신	14	11			1	1	1	
	운전	10	3		3			4	
	행정 · 세무	2	2						
	행정 · 전산	9	8						1
	행정 · 사회복지	8	7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4	2					2	
	행정 · 공업	6	6						
	행정 · 농업	2	2						
	행정 · 해양수산	2	1	1					
	행정 · 보건	3	3						
	행정 · 환경	8	8						
	행정 · 시설	10	8					2	
	행정 · 방재안전	1	1						
	행정 · 시설관리	1			1				
	행정 · 전문경력관나군	1	1						
	전산 · 방송통신	1	1						
	전산 · 시설	1	1						
	전산 · 농업								
	사회복지 · 보건	1	1						
	공업 · 농업	1			1				
	공업 · 방송통신	1	1						
	공업 · 시설	1						1	
	공업 · 환경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농업·농지	1					1		
	농업·해양수산	2	2						
	농업·농업연구	6						6	
	농업·수의								
	수의·수의연구								
	보건·간호	4	4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사서·기록연구	2	2						
	시설·농지	1	1						
	시설·방재안전	3	3						
	해양수산·시설								
	해양수산·어촌지도	5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농업·식품위생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농업·전문경력관나군	1						1	
	공업·운전·기계운영	11						11	
	농업·수의·농업연구	1						1	
	농업·농업연구·전문경력관나군								
	사무운영	3	3						
	통신운영	3	2		1				
	기계운영								
	농림운영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선박기관운영								
	선박항해운영								
	통신운영 ·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 전기운영								
	기계운영 · 운전	5	1	1				3	
	선박항해운영 · 선박기관운영	1	1						
7급	소계	585	407	27	34	5	7	98	7
	행정	226	169	15	10	3	5	18	6
	세무	5	5						
	사회복지	8	8						
	전산	11	10		1				
	사서	1			1				
	속기	5		5					
	공업	44	22	1	8		1	12	
	농업	22	14		2			6	
	녹지	22	8					14	
	수의								
	해양수산	17	8		4			5	
	보건	11	11						
	식품위생								
	간호	1	1						
	환경	14	14						
	시설	69	53	1				14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6	13		1			2	
	운전	10	4	1	2	2		1	
	위생	1	1						
	행정 · 세무	2	2						
	행정 · 사회복지	4	4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체 행정기관
	행정 · 전산	8	7	1					
	행정 · 녹지	1						1	
	행정 · 공업	6	5					1	
	행정 · 농업	3	3						
	행정 · 보건								
	행정 · 환경	2	2						
	행정 · 시설	12	11				1		
	행정 · 방송통신	1	1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별정								
	행정 · 사무운영	1	1						
	전산 · 시설	1	1						
	전산 · 방송통신	3	2	1					
	농업 · 해양수산								
	농업 · 농업연구	1						1	
	농업 · 농촌지도								
	공업 · 환경	1	1						
	공업 · 보건	1	1						
	공업 · 시설	7	5	1				1	
	공업 · 운전	3			1			2	
	공업 · 방송통신	1	1						
	공업 · 시설관리	1			1				
	해양수산 · 시설	2	2						
	해양수산 · 어촌지도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	2						2	
	환경 · 녹지	1	1						
	환경 · 시설	2	2						
	녹지 · 시설								
	보건 · 간호	3	2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보건·사회복지								
	사서·기록연구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환경·공업	2	2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공업·시설·방재안전								
	공업·운전·기계운영	12						12	
	보건·환경·시설								
	사무운영	2	1	1					
	토목운영								
	전기운영								
	통신운영								
	기계운영	3						3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사육운영								
	기계운영·공업	1			1				
	기계운영·운전	4	2		1			1	
	기계운영·전기운영	2						2	
8급	소계	214	110	14	18	2	1	67	2
	행정	82	57	6	3	2		12	2
	사회복지	1	1						
	전산	2	2						
	사서								
	속기	3		3					
	방호								
	공업	25	6	1	7			1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녹지	5						5	
	농업	3						3	
	해양수산	21	12		2			7	
	시설	24	10					14	
	방송통신	5	4		1				
	환경	4	4						
	보건	1	1						
	운전	5		1	2		1	1	
	시설관리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회복지								
	행정 · 공업	1			1				
	행정 · 환경								
	행정 · 보건	2	2						
	행정 · 시설	2	2						
	행정 · 방재안전	1	1						
	행정 · 방송통신	1	1						
	행정 · 사무운영								
	행정 · 시설관리								
	공업 · 환경	1	1						
	공업 · 방송통신	1	1						
	공업 · 운전	2						2	
	공업 · 시설	1						1	
	농업 · 농업연구	1						1	
	농업 · 기계운영								
	녹지 · 시설								
	환경 · 시설	1	1						
	보건 · 식품위생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사무운영	2	1		1				
	통신운영	2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사육운영	1						1	
	기계운영 · 공업								
	기계운영 · 전기운영								
	기계운영 · 시설관리	1			1				
	기계운영 · 운전								
	선박항해운영 · 선박기관운영								
	공업 · 운전 · 기계운영	6						6	
9급	소계	92	20	11	22	1		38	
	행정	8	4	3	1				
	사회복지	1	1						
	숙기	2		2					
	공업	9			2			7	
	농업	4						4	
	방송통신	2	2						
	환경								
	운전	27		1	12	1		13	
	위생	1	1						
	해양수산	7	4		2			1	
	방재안전	1	1						
	시설관리	3	1					2	
	사무운영	9	4	3	2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열관리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1						1	
	사육운영	1						1	
	행정 · 환경	1	1						
	행정 · 사무운영								
	공업 · 시설관리								
	공업 · 운전	5						5	
	사무운영 · 시설관리	3		1	2				
	기계운영 ·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 열관리운영								
	기계운영 · 농림운영								
	기계운영 · 운전	2			1			1	
	통신운영 · 전기운영								
	선박항해운영 · 선박기관운영								
전문경력관	소계	15	5	1	5			4	
	가군								
	문화재연구관								
	나군	8	2		5			1	
	기자재관리원								
	농기계교육교관	4			4				
	비상대비원	1	1						
	향토사편찬원	1	1						
	직업훈련교사	1						1	
	VTR촬영편집원	1			1				
	다군	7	3	1				3	
	의전관리원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비상대비원								
	VTR영상편집원	1		1					
	열관리운영원	1	1						
	사육운영원	2						2	
	기록발간물관리원	1	1						
	건설기계정비원	1						1	
연구직	계	237	7		182			48	
연구관	소계	48			43			5	
	녹지연구	2						2	
	농업연구	21			20			1	
	보건연구	8			8				
	수의연구	1						1	
	해양수산연구	1						1	
	환경연구	10			10				
	보건연구 · 환경연구	5			5				
연구사	소계	189	7		139			43	
	녹지연구	13	1					12	
	농업연구	61			56			5	
	보건연구	37			37				
	수의연구	13						13	
	학예연구	6	3					3	
	해양수산연구	9	1					8	
	환경연구	42			40			2	
	기록연구	2	2						
	보건연구 · 환경연구	6			6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농촌지도	9			9				
지도사	농촌지도	24			24				
소방직	계	4,463	267		4,192			4	
4급	소방정	27	7		20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5급	소방령	122	31		91				
6급	소방경	314	42		269			3	
6급	소방위	468	51		416			1	
7급	소방장	825	85		740				
8급	소방교	1,507	45		1,462				
9급	소방사	1,200	6		1,194				
교원직	계	47			47				
총장	총장	1			1				
교수	교수	32			32				
조교	조교	14			14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2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3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 을 “소속기관장” 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 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군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회계과	1	총괄청 소관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관한 사무 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 등 처분 다. 국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징수 라. 국유재산대장등 공부의 작성관리 마.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바. 국유재산변상금의 징수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9조,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2	은닉국유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환수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7조
경제정책 과	1	가격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된 도·소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7조,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너지정 책과	1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산물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를 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49조제2항제1호
	2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제50조
	3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 연장,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광업법」 제42조제3항, 제42조의2제2항, 제3항
	4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5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3항
	6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4조제1항,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
	7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부분 접수	같은 법 제84조
	8	석탄품질유지 의무위반자(석탄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광업권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나. 고발	「석탄산업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2항
접경지역 과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거주지보호 실태조사 및 대장의 작성·관리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친환경농 업과	1	양곡의소유자, 매매업자, 가공업자, 수출수입 및 보관 또는 수송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마. 사용료 징수 바. 사용료 면제 사.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자. 행정재산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차.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인계 카. 용도 폐지된 재산중 총괄청이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토록 지정한 재산의 관리 타. 국유재산의대장·등기부등본과도면의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4호 같은 법 제66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 등·초본의 교부 등 과. 변상금 징수 하.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처리 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4조
산림정책 과	1	조립비의 반환 조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산림관리 과	1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2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같은 법 제6조
	3	사방지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20조
	4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설치·관리사업 및 산지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사업의 시행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다. 공무원의 조사 등 라. 손실보상 등 마. 보상금의 결정 바. 재결의 신청 사. 사업의 위탁 아. 수익의 귀속 자. 사방사업 공부의 비치 차.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정책 과	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2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3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4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제6항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8조의5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중 다음의 권한 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사항 등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측정결과 접수, 주변지역영향조사 결과 접수, 오염물질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조사결과 공개 등 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집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통보, 징수, 납부,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이행률의 결정 등 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통보, 적립계획서수리, 납부 통보 등 마. 토지이용의제한, 계획서수리, 토지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람 등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4조
	8	위임된 사무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9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10	위임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나.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제62조제4항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11	라.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2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대기·폐수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마. 자료제출 요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같은 법 제39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1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13에 따른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나.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다.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 의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라. 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마.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자.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차.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카.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의뢰 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 하.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배출시설의 인정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4	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더.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러.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뢰,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15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제60조제3항, 제4항
	16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8조제1항
	17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72조
	18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제82조
	19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토지매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토지매수협의회” 운영은 제외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20	가. 빙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 보상금의 지급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외의 대기·폐수 2~5종 사업장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만 해당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제외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수질보전 과	1	오수·분뇨·축산시설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제49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마. 자료제출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2	특정 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명령, 시설장비검사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3	과태료 부과·징수(「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7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80조제4항
	4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검사 나.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다.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시정조치 명령 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마.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강제징수 바.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지역도시 과	1	국유재산(구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 신청의 접수·내용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86조제1항제1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과	1 2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기부채납 다.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마. 국유재산의 관리 위탁 바. 관리전환의 협의결과와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및 승인 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차. 대부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파.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도로법」 제40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같은 법 제7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하. 사용료 징수 등 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너. 청문 더.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러.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며.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버.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처목
교통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고속형시외버스 운송사업 제외, 그 외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운송 시설의 확인에 한함) 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기준 및 요율은 시외버스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내·농어촌버스는 도지사가 정함) 라.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계획변경인가,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 은 제외한다) 바.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 양도·양수신고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 사업은 제외 한다) 아. 상속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자.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차.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카. 개선명령(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타. 사업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파. 청문(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하.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7조
	2	과태료 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4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제3항
	4	택시미터검정기관 지정 및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7조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라.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마.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소속운송가맹점 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신고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아. 상속신고 자.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차.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수리 및 반환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파. 청문 하. 책임보험 계약 등의 미체결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거. 사업의 임시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제3조제9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조제12항
	6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나. 청문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다. 사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3조제9항, 제24조제7항 같은 법 제27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라. 운송주선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제28조
		마. 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38조
		바.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점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 신고	같은 법 제11조, 제28조
		사.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제28조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같은 법 제16조, 제28조
		자. 상속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 제28조
		카. 청문	같은 법 제22조, 제28조
		타.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8	과태료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9	물류창고업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제21조의7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1조의7
		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2항, 제21조의7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1조의7
		사.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의7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2항
		자. 청문	같은 법 제62조제1호, 제1호의2
		차.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10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
	1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경의 취소 및 효력정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나.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8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다. 청문	같은 법 제19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3조제3항
하천과	1	<p>댐 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p> <p>가.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 운항 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허가</p> <p>나. 동권리·의무이전의 신고수리, 같은법령 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p> <p>다. 동 허가·처분 등을 위한 댐 수탁관리자와의 협의</p>	<p>「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p>
	2	<p>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나. 토지의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p> <p>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p> <p>라.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 및 이의 고시</p> <p>마.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바.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의고시</p> <p>사.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아.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자.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하천법」 제5조제2항</p> <p>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p> <p>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p> <p>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73조</p>
	3	<p>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같은 법 제48조
	4	<p>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p>	같은 법 제68조
	5	<p>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같은 법 제75조
	6	<p>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같은 법 제90조
	7	<p>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같은 법 제91조
	8	<p>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 제6호, 제7호
	9	<p>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다음의 권한(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항만법」 등</p>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을 제외한다)</p> <p>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p> <p>나. 기부채납</p> <p>다.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라.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p> <p>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p> <p>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p> <p>사. 사용허가기간의 갱신</p> <p>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p> <p>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p> <p>차. 대부</p> <p>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p> <p>타. 관리전환의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 및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p> <p>파.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p> <p>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사실의 통보</p> <p>거. 청문</p> <p>너.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p> <p>더. 불법시설물의 철거</p>	<p>「국유재산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24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8조제3항</p> <p>같은 법 제41조, 제46조</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p> <p>「국유재산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72조, 제73조</p> <p>같은 법 제74조</p>
수산정책과	1	<p>「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어업허가</p> <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합여부</p>	<p>「어업자원보호법」 제2조</p> <p>「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의2제6항제2호</p>
	2	<p>조사·점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저장 및 출하되기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정한 기준에 의한 등록된 시설에 한한다)</p>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 0조, 제76조</p>
	3	<p>생산·가공시설의 중지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의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한다)</p>	<p>같은 법 제70조, 제76조</p>
	4	<p>원산지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p>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p>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5	한한다) 출입·조사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7조
	6	원산지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9조, 제13조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예방안전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 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방서장
도로과	1	위임국도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운영 나.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다.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마. 부대공사의 시행 바.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사.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 아.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자. 진출입로 연결허가 차.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도로법」 제110조제1항,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6호) 같은 법 제34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7호) 같은 법 제3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8호) 같은 법 제3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0호) 같은 법 제5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5호) 같은 법 제5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6호) 같은 법 제54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7호) 같은 법 제5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8호)	도로관리 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 기관
		타.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제5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19호)	
		파. 도로관리원의 임명	같은 법 제5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0호)	
		하.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2호)	
		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65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3호)	
		너.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4호)	
		더. 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5호)	
		러.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같은 법 제7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5호)	
		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같은 법 제71 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6호)	
		버.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7호)	
		서. 원상회복의 명령	같은 법 제7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8호)	
		어.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 명령	같은 법 제7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29호)	
		저.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같은 법 제7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0호)	
		처.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같은 법 제8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1호)	
		커.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같은 법 제82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2호)	
		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같은 법 제8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3호)	
		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9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4호)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 기관
		허.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고.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징수 및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파기 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도. 공익을 위한 처분 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모. 수수료의 징수 보.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소.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5호)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6호) 같은 법 제9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7호) 같은 법 제9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8호) 같은 법 제100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39호) 같은 법 제103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0호) 같은 법 제106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1호) 같은 법 제117조 (시행령제100조제3항제42호)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과	1	대기폐수배출사업장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 설치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마. 자료제출 요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등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시설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명령,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적합여부 조사 라. 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마.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바.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 확인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오염도검사의뢰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아.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자.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차.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카.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다.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파.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 및 오염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내지 제3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검사의뢰</p> <p>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p> <p>거. 과징금의 부과·징수</p> <p>너.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p> <p>더.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 지시·의뢰</p> <p>러.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신고의 수리</p> <p>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기타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p> <p>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7조제1항</p> <p>같은 법 제60조제1항</p> <p>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p> <p>같은 법 제72조</p>
	3	<p>「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p> <p>나. 보고서의 제출명령</p> <p>다. 보고명령 및 검사</p> <p>라. 조치명령</p> <p>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p>	<p>「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제6항</p> <p>같은 법 제38조제3항</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9조</p>
	4	<p>「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대기·폐수 1~5 중 사업장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만 해당된다)</p> <p>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p> <p>나. 영업정지명령</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p> <p>같은 법 제43조제1항</p> <p>같은 법 제49조</p>
	5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2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4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을 각각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인·허가사항”을 “인가·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을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다목 중 “인·허”를 “인가·허가”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소관”을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소관”으로,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을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을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을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공 통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합 계	263	22	108	94	28	11	
1. 정원조정 요구	1. 실·국·본부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 요구 2. 실·국·본부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가. 정원 증원요구 나. 직급 상향조정 요구 다. 직급·직렬 간 상계조정 요구			○			자치행정과장
2. 공무직 정원 관리	1. 공무직 정원책정(신규) 요구 2. 공무직 정원보전 요구		○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 실·국·본부간 사무분쟁 2. 실·과간 사무분쟁 3. 실·과내 사무분쟁		○	○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가. 실·국·본부 간 직제개정 요구 나. 실·국·본부 내 직제개정 요구			○	○		자치행정과장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국·본부장 (단, 부지사의 경우 도지사가 결재) 나. 4급 다. 5급이하 (단, 외출·조퇴·지참은 팀장 전결) 2.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가. 3급이상 나. 4급이하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	○	○	○		예산과장, 총무과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2. 실·국내 전보 3. 교육과견 명령 4. 호봉승급획정·정정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나. 5억원 미만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3. 예산의 이용방침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12. 예산집행품의 가.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법정경비 교부 다.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예산과장 예산과장 예산과장 예산과장 예산과장
8. 지방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		○	기획조정실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도지 사	협조
		권자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나. 그 밖에 사항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나. 건당 1억원미만 3. 용역착공 명령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나. 1건당 1억원미만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나. 건당 1억원미만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단속 라. 감리단 이력승인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방침)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 ○ ○	○			
13. 물건의 제조·구매·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건당 20억원 이하 나. 건당 10억원 이하 다. 건당 2억원 이하 3. 물품구매·임대차 등 가. 건당 20억원 이하 나. 건당 10억원 이하 다. 건당 2억원 이하			○ ○ ○ ○	○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14. 재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일반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1) 건당 10,000㎡ 이상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4) 건당 330㎡ 이하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급전				○ ○ ○ ○ ○ ○		예산과장, 회계과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도지 사	협조
		권자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나. 건당 1억원 미만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회계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세정과장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3. 분담금 감액 결정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2) 시군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다. 지급결정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 ○ ○ ○ ○ ○ ○	○	회계과장 예산과장
16. 보상	1. 보상업무 계획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나. 1억원미만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4. 보상금 채심결정 5. 보상금 채감정 결정 6. 보상금 재결신청 7. 보상금 사건확인 8. 보상금 지급				○ ○ ○ ○ ○ ○ ○ ○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나. 건당 1,000만원미만 2. 수입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2. 특별표창 계획수립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	○	○	총무과장	
20. 의회업무	1. 도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2.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21. 행정심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보충서면 등 제출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1.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가. 중요 소송 나. 일반 소송 다. 집행정지 2.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	○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		정책기획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	정책기획관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나. 조례·규칙의 개정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7.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			○	정책기획관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도지사 발의 조례안)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도지사 발의 조례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9. 고시·공고문의 결정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10. 시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가.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				정책기획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나. 제소 지시를 결정하는 경우			○			
24.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5. 정기보고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	○ ○ ○ ○ ○ ○ ○				
25.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가. 위원장이 도지사인 경우 나. 위원장이 부지사인 경우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2. 위원회 개최, 안전상정 및 결과 보고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 ○ ○ ○	○	
26. 회 의	1. 회의소집 가. 시군,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나. 그 밖의 직원회의			○ ○			
27. 민원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처리진행 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 제외)의 종결처리		○ ○ ○ ○ ○ ○ ○ ○	○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7.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28. 지방공기업 지도 감독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나. 사업계획 승인 다. 기구조정 라. 정원조정 마. 임원의 임면승인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위탁범위, 기관변경) 2. 실행계획 수립·집행			○ ○ ○ ○	○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30. 시군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1.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		자치행정과장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			
32. 의전행사	1. 도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가. 주요행사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	○			총무과장
33.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2. 실·국간의 사업협조 3. 소관업무에 관한 시군,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				도지 사	협조
		권자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지사간 사무인계인수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나. 4급 부여자 다. 5급이하 부여자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10. 물품의 반납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14. 차량 배차신청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 기관) 16. 소속직원 교육 17. 대부알선 18. 대여장학금 승인 19. 사망조위금 신청			○			
			○			○	
				○			
			○				
				○			
				○			
				○			
				○			
				○			
				○			
				○			
				○			
				○			
				○			
				○			
				○			
34.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5.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본부장	부지사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	○ ○ ○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나. 정책자료집 발간		○	○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 ○	○			
39.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3. 기록물 폐기 4. 기록물 인계·인수	○	○ ○ ○				
40.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나. 6급(상당)이하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11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는” 을 “사람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증빙하여야” 를 “증빙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드는” 을 “해당하는”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한도액(제2조 관련)

전형 유형		징수한도액	비 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30,000원	강원과학고, 민족사관고
실기 전형	예술계열	30,000원	강원예술고, 강원애니고
	체육계열	10,000원	강원체육고

※ 내신성적만으로 전형하거나 전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중 자기주도학습 입학전형 실시 학교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을 반영한 조문 현행화로 규칙 운영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자기주도학습 전형 해당 고등학교 정비[별표 1]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삭제: 2024. 3. 1. 일반고 전환
 - 민족사관고등학교 추가: 2025. 3. 1. 자기주도학습 전형 적용
- 자기주도학습 전형 징수한도액 상향 조정[별표 1]
 - 개정 전: 20,000원 → 개정 후: 30,000원
 - 변경사유: 학교별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한도액 전형 유형 정비 [별표 1]
 - ‘그 밖의 전형’ 삭제
 - 변경사유: ‘그 밖의 전형’ 에 해당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제3조,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1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괄	합 계		4,155	7	801	1,132	2,215
	정무직		1		1		
	일반직		3,743	7	627	894	2,215
	연구직		18		2	16	
	특정직		388		166	222	
	별정직		5		5		
정무직	정무직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일반직계		3,743	7	627	894	2,215
	3급	소 계	5		5		
		지방부이사관	5		5		
	4급	소 계	18	1	17		
		지방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17	1	16		
	5급	소 계	129	1	50	25	53
		교육행정	93	1	34	7	51
		교육행정·행정	0		0		
		행정	2		2		
		교육행정·공업·시설	5		2	1	2
		교육행정·행정·공업·시설	14			14	
		교육행정·식품위생	2		2		
		사서	7		7		
	공업·시설	6		3	3		
6급	소 계	947	1	150	177	619	
	교육행정	617	1	72	81	463	
	교육행정·식품위생	2		2			
	전산	16		7	9		

직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사서	32		32		
		공업	14		4	10	
		공업·시설	14		2	12	
		식품위생	19		2	17	
		간호	1		1		
		시설	25		11	14	
		운전	65		2	24	39
		위생·조리	4		1		3
		시설관리	118		5	9	104
		기계운영	7		4		3
		사무운영	13		5	1	7
7급	소 계	1,351	3	227	345	776	
	교육행정	851	1	132	204	514	
	전산	34		19	15		
	사서	40		37	3		
	속기	2	2				
	공업	20		3	17		
	공업·시설	17			17		
	식품위생	23		2	21		
	의료기술	1				1	
	간호	2		2			
	시설	41		9	32		
	운전	102		4	15	83	
	위생·조리	4				4	
	시설관리	169		9	20	140	
	기계운영	15		4		11	
사무운영	29		6	1	22		
전기운영	1				1		

직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소 계						
8급	소 계		1,289	1	174	347	767	
	교육행정		786		103	228	455	
	전산		11		8	3		
	사서		34		34			
	속기		1		1			
	공업		20		1	19		
	식품위생		10		1	9		
	간호		4		3	1		
	시설		30		1	29		
	운전		168			18	150	
	시설관리		194		12	38	144	
	기계운영		4				4	
	사무운영		21	1	7	2	11	
	전기운영		2				2	
	농림운영		1				1	
	보건운영·사무운영		3		3			
	전문경력관	소계		4		4		
		가군		1		1		
		비상대비업무		1		1		
		나군		3		3		
학생수련지도			2		2			
영상제작			1		1			
연구직	연구직계		18		2	16		
	연구사	기록연구사	18		2	16		
특정직	특정직계		388		166	222		
	일반직 3급상당 장학관		1		1			
	일반직 3급상당 교육연구관		3		3			
	일반직 4급상당 장학관		24		7	17		
	일반직 4급상당 교육연구관		7		7			

직종, 직급,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5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5		24	21	
	장학사·교육연구사		308		124	184	
별정직	별정직계		5		5		
	4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6급 상당	소계	2		2		
		비서	2		2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개정이유 ◇

○ 강원교육정책 추진 및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직종·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 일반직: 3,761명 → 3,76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6급: 941명 → 947명 (증 6명)
 - 교육행정6급 4명 증, 시설관리6급 2명 증
 - 일반직 7급: 1,349명 → 1,351명 (증 2명)
 - 교육행정7급 3명 증, 사무운영7급 1명 감
 - 일반직 8급: 1,297명 → 1,289명 (감 8명)
 - 교육행정8급 1명 감, 시설관리8급 2명 감, 사무운영8급 5명 감

훈 령

강원도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훈령 제191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촉진지구 조례”라 한다)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통일되고 공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가. 촉진지구조례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의 관할 시군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
- 나. 이 규정은 강원특별법과 촉진지구 조례에 따라 수립·추진되는 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관리에 한해 적용하고, 계획내용에 대한 각종 인가·허가 등 절차와 방법은 해당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추진체계



제2장 축진지구 계획의 수립 및 내용

계획의 성격

- 가. 축진지구 계획은 강원특별법 제49조와 축진지구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진지구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 나. 축진지구 기본·시행계획은 축진지구 조례 제3조·제5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수립

2. 법적 근거

축진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강원특별법 제49조 및 축진지구 조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

3. 축진지구 지정요건

시장·군수는 축진지구를 지정받으려면 ①부터 ③까지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계획을 수립

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강원특별법】

-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농촌활력축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지역특화산업 또는 농촌공간재생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지역일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 또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촌활력창출이 가능할 것
 - 농촌지역 내에서 이미 수립(예정된 것을 포함)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농촌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
- ② 지정할 면적이 3만㎡ 이상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 ③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4. 계획의 역할

- 가. 축진지구 계획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
- 나. 축진지구는 지정요건에 맞도록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축진지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간투자촉진, 재원 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

5.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축진지구 계획은 실질적인 지구조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축진지구 지정시점(축진지구 지정 고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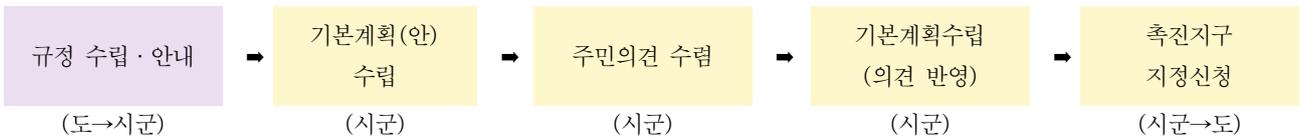
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

나. 공간적 범위

- 1) 축진지구 면적을 3만㎡(농지, 비농지 포함) 이상으로 설정하되, 1개 지구를 1개 구역 또는 2개 이상 구역으로 설정가능
- 2) 지구내 개별구역은 구역내 토지가 연결되도록 경계를 설정, 2개 이상 구역으로 축진지구 설정시 구역간 거리는 접근성·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접하게 설정

6. 계획의 수립 및 신청

가. 기본계획



- 1)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내 주민제안 또는 민간개발, 시군 필요 등에 의해 축진지구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축진지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별지 제1호서식)**

* 축진지구 방향 및 목표, 사업내용, 재원조달계획, 기대효과 등 개략적으로 작성

** 설명회, 공고(공보·홈페이지·일간지 등), 개별통지 등 의견수렴 방법은 시군 자율결정

- 2) 시장·군수는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축진지구 지정요건 및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축진지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 주민의견 수렴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 증빙서류로 첨부

- 3) 시장·군수는 축진지구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반영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축진지구 지정신청(시군 총괄부서 취합 일괄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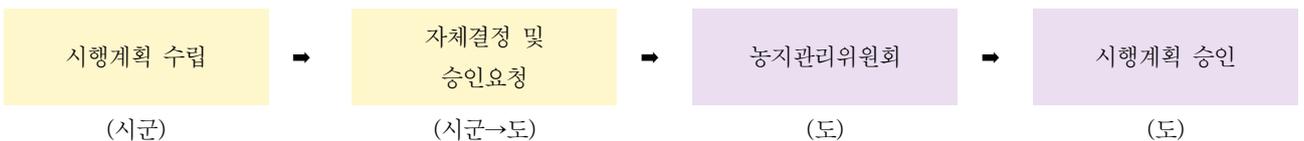
* 축진지구 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축진지구 추진 가능성, 지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시군 자체 검토서(별지 제3호서식)

- 4) 시군 간 연결된 축진지구인 경우 시장·군수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각각 해당 관할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축진지구 지정신청

- 5) 시군 간 연결된 축진지구의 지정신청은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신청은 시군 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 시장·군수가 신청

- 6) 도 발주계획의 경우 도 사업부서는 도·시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축진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을 통해 신청토록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

나. 시행계획



- 1) 시장·군수는 도에서 통보된 축진지구 지정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2) 시군은 심의의견 이외 기본계획 대비 위치·경계 또는 면적,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시행계획

작성

* 작성방법: 기본계획에 축진지구 부지 확보·이용 계획, 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연차별 지구조성 계획(투자계획 포함), 축진지구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각각 동시 수립이 가능하나,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승인요청

3) 진행중인 각종 개발계획 등을 축진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계획이 축진지구 목적 및 지정요건 등에 부합해야 함

4) 시행계획 수립시 축진지구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에 별첨하여 제출

5) 시군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자체 결정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도에 승인요청

* 시행계획 수립 및 도 제출기한: 기본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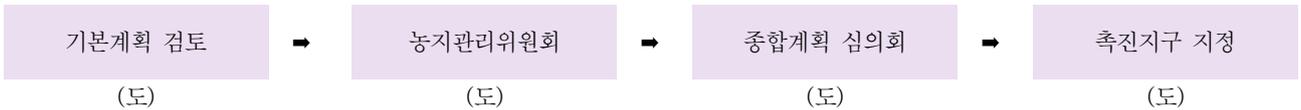
6)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비 변경내용 유무, 종합계획심의회 의견 반영여부, 축진지구 조례에서 정한 사항 포함여부 및 적절성 등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종합 검토·확인

* 농지관리위원회 안전 검토·심의 등 운영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도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내용에 대해 축진지구 조례에 따라 고시 등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시군에 통보

제3장 축진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1. 축진지구 지정



가. 기본계획 검토

- 1) 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기본계획에 대해 축진지구 지정요건 부합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해 검증 등 검토
- 2) 축진지구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영결과, 사업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적합성 등 검토
- 3) 실무검토결과 지구별 요약자료 작성,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나. 농지관리위원회

- 1) 도 농지관리위원회는 지정요건 적합성, 기본계획 내용의 타당성·적절성, 실행가능성, 농촌활력창출 기대효과 등 종합 검토
- 2) 자문·심의 후 자문의견이 포함된 심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요청
- 3)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시 필요한 경우 해당 축진지구 시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자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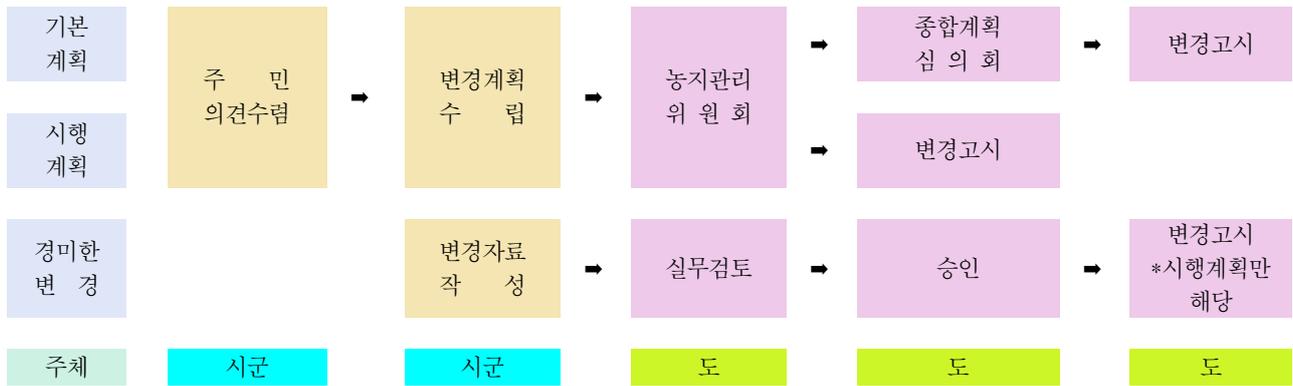
다. 종합계획심의회 및 축진지구 지정

- 1)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결과를 확인하고, 축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의 타당성·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중

합계획심의회 심의

- 2)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승인된 축진지구 기본계획에 대해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내용을 시군에 통보
- 3) 도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검토된 의견과 관계서류 사본을 시군에 통보, 시군은 검토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고시한 내용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인 열람조치

2. 계획의 변경



가.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 승인·고시 후 시행계획 수립전까지 해당 축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 변경조건
 - 가) 강원특별법과 축진지구 조례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맞을 것
 - 나) 사업위치가 승인 고시된 지역(해당 행정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 * 고시된 행정구역을 벗어날 경우 신규 축진지구로 판단
- 2) 변경절차: 주민의견수렴 → 변경계획 수립 → 농지관리위원회 → 종합계획 심의회 → 변경고시
- 3) 변경검토
 - 가) 시군은 변경내용과 사유(별지 제4호서식), 지정요건 충족여부, 변경내용 입증자료를 검토 후 변경계획 수립 후 도에 승인요청
 - 나) 도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계획변경 적절성, 사업기간내 완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승인
 - * 단, 축진지구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절차·방법에 따름

나. 시행계획 변경

시행계획 고시 후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도 승인 후 변경

- 1) 변경조건
 - 가) 사업위치가 기본계획 위치(해당 행정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 나) 지구구성 내용이 기본계획과 상이하지 않을 것
- 2) 변경절차: 주민의견수렴 → 변경계획 수립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지관리위원회 → 변경고시
- 3) 변경검토: 기본계획 변경과 같음

- *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 단, 축진지구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절차·방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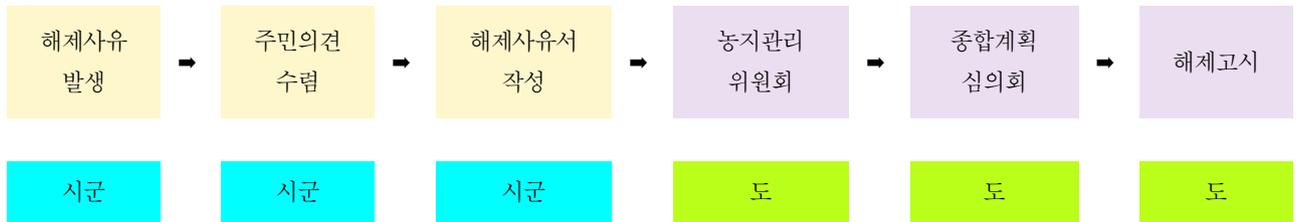
다. 경미한 변경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진

- 1) 경미한 변경(축진지구 조례 제6조)
 - 가) 지구의 면적 또는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나) 축진지구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 다)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라)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계획이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2) 변경절차: 변경된 내역서와 입증자료 제출 후 도 승인
 - 가) 기본계획: 변경된 내용과 사유서 작성(별지 제4호서식) → 도 승인
 - 나) 시행계획: 변경된 내용과 사유서 작성(별지 제4호서식) → 도 승인·고시
- 3) 변경검토: 경미한 변경요건 적합 여부 판단 후 승인

제4장 축진지구 해제

1. 축진지구 해제



가. 시군은 축진지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해제사유 발생시 해당 축진지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축진지구 해제신청서 및 사유서(별지 제6호서식)를 도에 제출

* 주민의견 청취방법 및 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름

나.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축진지구 해제신청서와 사유서를 검토,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 결정 후 고시 등 절차 이행

다. 축진지구 추진상황 점검(별지 제7호서식)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

《촉진지구 해제사유》

- ① 기본계획이 고시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② 시행계획의 승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④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⑤ 촉진지구 추진상황 점검결과 촉진지구 조성 또는 운영 가능성이 낮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촉진지구 조성 및 점검

1. 촉진지구 조성

시군은 촉진지구 조성시 필요한 관련 인가·허가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시군 직접 또는 관련법에 따른 위탁·대행, 민간투자자를 선택하여 시행 가능

가. 지구 내 각종 시설설치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개발행위허가 등 사전절차는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가·허가 추진

나. 시군 직접외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 시군은 시행자 지정시 자금조달능력, 개발사업 시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위탁·대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다. 시군은 지구조성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에 완료보고

* 내역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해당 서류를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2. 추진상황 점검

도는 반기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군은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

가. 점검대상: 도에서 승인·고시한 시행계획에 대해 점검 실시

나. 점검시기: 점검 실효성 및 특례 존속기한 평가대비를 고려하여 승인·고시 후 6개월이 지난 계획에 한하여 실시

다. 점검계획: 도는 점검 대상·항목·일정, 점검자료 작성방법, 점검결과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라. 점검방법

1) 총 공정율, 사업내용별 추진상황, 관련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재원조달상황, 조성에 필요한 인가·허가 승인여부 등 점검

2) 시군은 민원발생, 사업지연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 및 필요사항 등을 도에 보고(별지 제7호서식)

* 세부 점검방법은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 안내

마. 점검결과 조치

1) 도는 점검결과 부진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정 등 문제점 해소방안을 시군에 제시

*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컨설팅 추진

2) 지구조성 가능성이 낮거나 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촉진지구 해제 필요 조치 등 시군 통보

3) 시군은 인가·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된 조성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에 사업기간 연장 요청(별지 제9호서식) 등 필요 조치

제6장 도 및 시군 역할

1. 도

가. 총 관: 농정국 농정과

1) 촉진지구지정(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종합계획심의회 → 지정고시)

2) 시행계획승인(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승인고시)

3) 계획변경승인(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종합계획심의회 → 변경고시)

4) 촉진지구해제(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종합계획심의회 → 해제고시)

나. 사업부서: 도 발주계획의 경우 도 사업부서는 도·시군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을 통해 신청토록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 주민 의견수렴, 계획수립 소요예산 등

2. 시군

가. 총 관: 시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총괄부서 지정

1) 촉진지구 제도 및 성격을 고려하여 시군 총괄부서 자체 결정

2)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촉진지구 기본 또는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도에 촉진지구 지정신청

나. 사업부서: 해당 지구의 개발계획·사업 담당부서

1) 촉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 소속기관 총괄부서에 촉진지구 기본계획을 도에 신청토록 요청

2) 촉진지구 지정 후 시행계획 수립 및 촉진지구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가·허가 등 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다. 기타 행정사항

1) 촉진지구 기본·시행계획 승인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이 가능한 원인행위에 불과하며, 지구조성에 대한 각종 인가·허가 효력은 없음

* 지구조성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인가·허가 등은 개별법에 따라 시군 책임 진행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해제 주민 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촉진지구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토지소유자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민

의견 내용	<p>○</p> <p>○</p> <p>○</p>
----------	----------------------------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지 구 명	○○시군 ○○읍면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구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지구면적	총	m ²		
계획기간	20○○년 ~ 20○○년(○년간)			
투자규모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주요 지역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조성개요	비전 및 발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기술 		
	지역여건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주요 조성내용	조성내용	투자규모(백만원)	
시행방법	시군직접, 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 등			
기대효과	○ 지구 지정 및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 간략히 기술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서 2. 시군 기본계획 자체 검토서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자체 검토서

지구명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내용			
검증 요약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과의 조화 여부 ▪ 상급 자치단체에서 협조 및 지원 가능 여부 	
	사업계획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필요성과 적절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확보 여부 ▪ 지방비의 지원확정 여부 및 지원계획 ▪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 업 추진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의 역량과 추진여건 ▪ 촉진지구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 토지 확보 용이성 ▪ 사업에 대한 주요 갈등 및 민원발생 여부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부서	구분	총괄부서	사업부서
	성 명		
	부서명		
	전 화		
	이메일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계획변경 요약서

사업개요

위 치					사업기간	당초	
사업시행자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					변경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당초					
		변경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및 규모				
		당초					
		변경					

○ 변경사유 *내용별 구분 작성

- 사업기간:
- 사업비:
- 사업내용:

○ 사업도면

사업계획 변경 전후가 나타나는 도면 첨부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견서

0000년도 제00차 농지관리위원회

00월 00일

지 구 명:

구성내용			
지정면적 (㎡)	재정규모 (백만원)	시행기간	기대효과
		~	

자문결과

자문내용	적합여부 *해당란에 “○” 표시	
	적 합	부적합
지정요건		
사업내용 타당성·적절성		
실행 가능성 <small>*재정규모, 법령검토결과 등</small>		
기대효과		
종합검토 (지정 적합여부)		

보완해야 할 사항

**사업내용 또는 조성내용 관계법령 적합성 등 보완 의견, 의견없음 경우 “의견없음”으로 기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 사유서

지구명	
해제근거	○
주민의견 수렴결과	○ ○ ○ ○ ○
해제내용	○ ○ ○ ○ ○
해제사유	○ ○ ○ ○ ○
향후 조치계획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상황 보고서

지구명:

작성자	구 분	총괄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개요	면적(㎡)						
	위 치						
	시행승인일	년	월	일	계획변경일	년	월

추진 상황	행위 허가 (신고)내용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 허가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건축 등 <input type="checkbox"/> 공작물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토지의 형질변경 <input type="checkbox"/> 토석의 채취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사업내용별 추진상황	사업내용	공정율(%)	추진상황(구체적으로)			
	전체 공정율	%					
완료 예정시기							

조치결과 및 필요사항 (요약)	
---------------------	--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조치결과 및 필요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4. 기타 추진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완료보고서

작성자	구 분	총괄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촉진지구 개 요	지 구 명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목적			
	위치			
	면적	m ²		
	시행기간	. . . ~ . . .		
	착수년도			
	투자규모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m ²)				

조성개요	계획승인	기본계획 승인일자:			
		시행계획 승인일자:			
	주요사업		사업내용	추진기간	
				. . ~ . .	
			. . ~ . .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촌활력촉진지구 세부 추진보고서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기간 연장신청서

촉진지구 개요	지구명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목적					
	위치					
	면적	m ²				
	시행기간 ~				
	착수년도					
	투자규모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m ²)					
구성개요	계획승인	기본계획 승인일자:				
		시행계획 승인일자:				
	주요사업	사업내용			추진기간	
					. . . ~ . . .	
			. . . ~ . . .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 신청 사유
	기간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연장 사유서(근거자료 포함) 2. 사업 추진경과 등 연장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조성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	---

강원도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훈령 제191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정국 농정국장
- 2. 농정국의 농산경영, 농업기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3. 건설교통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 4. 산림환경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 5. 산림환경국의 산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농지보전·농업·농촌·환경·공간정보·토지이용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 부서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 1. 위원장
- 2. 위원, 간사 및 서기
- 3. 해당 안건의 담당자
-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도지사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강원특별법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서면심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시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상정안건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 로 한다.
 -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 로 한다.
 -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시 위원 발언내용은 주요 요지로 작성하고, 전자기록(녹음테이프·전자파일)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서명
- 3. 심의사항
- 4. 회의진행상황
- 5. 위원발언 내용
- 6. 심의결과
-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 간사의 서명을 받아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심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 표 용 지

0000년도 00월 00일 제00차 농지관리위원회

안건번호	안건명

찬성	반대

※ 찬성하는 곳에 O표로 표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차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

일 시 : ○○○○년 ○○월 ○○일(○요일), ○○:○○ ~ ○○:○○

장 소 : ○○○○○○○○○○○○○○○

출석위원 : ○○○(위원장), ○○○,

.....

..... (이상 ○명)

진행순서 :

상정 안건 목록

【보고사항】		
1		(공개)
2		(비공개)
.		.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작성자 : 위원회 서기 000 (서명)

○ 확인자 : 위원회 간사 (서명)

1. _____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다. 주요내용

(1) 신청자 또는 보고자 :

(2) 신청내용 또는 보고내용 :

라. 주요 발언 요지

○ 발언자의 실명은 표기하지 않고 ○○○으로 기재

마. 결정사항

○

바. 표결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39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2024. 5. 23.)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륜
합계	8,017,391,878	7,586,161,000	431,230,878	5.68%
일반회계	7,131,625,986	6,797,500,000	334,125,986	4.92%
특별회계	885,765,892	788,661,000	97,104,892	12.3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792,000	11,792,000	0	0.00%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866,437	6,680,000	186,437	2.7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91,992,678	376,266,000	15,726,678	4.18%
소방특별회계	470,114,777	388,923,000	81,191,777	20.88%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5,000,000	5,000,000	0	0.0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4차, 2021년 제2차 강원 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철원군 도덕탄, 새마을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0년 제4차, 2021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2. 변경내역

사업 시행자 (지구명)	위 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필지 수	면적 (㎡)	사업기간	필지 수	면적 (㎡)	사업기간	
철원군수 (도덕탄지구)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 일원	314	120,053.0	'20.01.01. ~ ' 23.12.31.	315	121,454.0	'20.01.01. ~ ' 24.12.31.	지구계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 수, 면적 변경
철원군수 (새마을지구)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 일원	363	105,304.9	'21.01.01. ~ ' 23.12.31.	336	92,669.0	'21.01.01. ~ ' 24.12.31.	

3.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토지 조서

<철원군>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합계	철원군			314필지		120,053.0	315필지		121,454.0	
소계	도덕탄지구			314필지		120,053.0	315필지		121,454.0	증 1필지 / 증 1,401㎡
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	도로	684	63-5	도로	684	
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7	답	10	63-67	답	10	
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7	대	31	63-227	대	31	
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9	답	184	63-229	답	184	
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0	답	154	63-230	답	154	
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4	전	291	63-274	전	291	
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1	답	132	63-281	답	132	
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2	전	50	63-282	전	50	
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3	도로	160	63-303	도로	160	
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4	도로	88	63-304	도로	88	
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1	도로	50	63-311	도로	50	
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2	도로	10	63-312	도로	10	
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3	도로	17	63-313	도로	17	
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4	도로	16	63-314	도로	16	
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7	도로	40	63-317	도로	40	
1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2	대	52	63-352	대	52	
1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6	대	135	63-356	대	135	
1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8	대	134	63-358	대	134	
1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9	대	73	63-359	대	73	
2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0	전	3	63-360	전	3	
2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1	대	121	63-361	대	121	
2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2	대	114	63-362	대	114	
2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3	전	20	63-363	전	20	
2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4	대	103	63-364	대	103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5	대	78	63-365	대	78	
2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9	주유소용지	166	63-369	주유소용지	166	
2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70	답	90	63-370	답	90	
2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71	답	71	63-371	답	71	
2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19	전	54	71-19	전	54	
3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7	도로	135	71-27	도로	135	
3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8	도로	142	71-28	도로	142	
3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9	도로	30	71-29	도로	30	
3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0	도로	16	71-30	도로	16	
3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1	도로	34	71-31	도로	34	
3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2	도로	26	71-32	도로	26	
3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3	도로	116	71-33	도로	116	
3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4	도로	36	71-34	도로	36	
3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9	전	207	71-39	전	207	
3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40	대	114	71-40	대	114	
4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41	대	56	71-41	대	56	
4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42	전	41	71-42	전	41	
4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43	답	188	71-43	답	188	
4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30	도로	113	72-30	도로	113	
4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31	도로	46	72-31	도로	46	
4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32	도로	34	72-32	도로	34	
4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38	대	232	72-38	대	232	
4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39	대	114	72-39	대	114	
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0	대	161	72-40	대	161	
4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1	대	95	72-41	대	95	
5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3	대	111	72-43	대	111	
5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4	대	98	72-44	대	98	
5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5	대	108	72-45	대	108	
5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57-3	답	219	2757-3	답	219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5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4-1	답	14	2774-1	답	14	
5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4-2	답	315	2774-2	답	315	
5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9-1	전	95	2779-1	전	95	
5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80-1	전	427	2780-1	전	427	
5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22-2	답	863	2822-2	답	863	
5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1	답	2,089	72-11	답	2,089	
6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5	답	218	72-25	답	218	
6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6	대	281	63-236	대	281	
6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9	도로	212	63-269	도로	212	
6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3	구거	721	63-273	구거	721	
6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2	도로	136	63-302	도로	136	
6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31	도로	950	2031-1	도로	938	지구계 분할(면적감소)
6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36	도로	58	2036	도로	58	
6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37	구거	314	2037-1	구거	1,776	지구계 분할(면적증가)
6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56-1	구거	45	2756-1	구거	45	
6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7	구거	1,054	2777	구거	1,054	
7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7-2	구거	317	2777-2	구거	317	
7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8	도로	950	2778	도로	950	
7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8-1	도로	47	2778-1	도로	47	
7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6	도로	2,011	2806	도로	2,011	
7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6-1	도로	125	2806-1	도로	125	
7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7	구거	1,643	2807	구거	1,643	
7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7-1	구거	94	2807-1	구거	94	
7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1	구거	1,090	2831	구거	573	지구계 분할 후, 지구계 변경(전필 편입)
7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1-1	구거	517	지구계 변경(전필)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편입)
7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	도로	4,146	63-2	도로	4,146	
8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9	도로	96	63-19	도로	96	
8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3	도로	1,218	63-73	도로	1,218	
8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2	도로	93	63-232	도로	93	
8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4	도로	76	63-264	도로	76	
8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3	도로	36	63-283	도로	36	
8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9	도로	73	63-289	도로	73	
8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99	전	21	63-299	전	21	
8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0	도로	26	63-350	도로	26	
8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3	도로	69	63-353	도로	69	
8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7-1	답	17	67-1	답	17	
9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7	도로	99	72-7	도로	99	
9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9	도로	192	72-19	도로	192	
9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2	도로	36	72-42	도로	36	
9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6	전	96	63-76	전	96	
9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7	전	33	63-77	전	33	
9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8	전	23	63-78	전	23	
9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1	대	127	63-221	대	127	
9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1	도로	1,858	63-261	도로	1,858	
9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0	전	85	63-300	전	85	
9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7	대	32	63-357	대	32	
10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6	전	1	63-366	전	1	
10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	답	64	71-3	답	64	
10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0	답	512	71-20	답	512	
10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3	답	59	71-23	답	59	
10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6	답	138	71-26	답	138	
10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3	전	23	72-13	전	23	
10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8	전	25	72-28	전	25	
10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35	전	10	72-35	전	10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0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60	묘지	143	160	묘지	143	
10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3	답	93	63-253	답	93	
1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6	전	1,101	72-16	전	1,101	
1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5	답	8,000	63-65	답	8,000	
1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5	대	496	71-5	대	496	
1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7	대	347	71-37	대	347	
1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38	전	932	71-38	전	932	
1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4	대	170	72-14	대	170	
11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9	전	884	2779	전	884	
11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80	전	1,207	2780	전	1,207	
11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6-4	전	145	2016-4	전	145	
11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7-4	전	106	2017-4	전	106	
12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1	답	1,954	63-71	답	1,954	
12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2	답	1,048	72-12	답	1,048	
12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2	대	360	63-242	대	360	
12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6-5	전	166	2016-5	전	166	
12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7-5	전	93	2017-5	전	93	
12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1	전	478	63-341	전	478	
12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3	대	308	72-23	대	308	
12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9	전	36	72-29	전	36	
12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	대	542	72-4	대	542	
12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8	대	394	72-18	대	394	
13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4	전	132	72-24	전	132	
13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90	대	496	63-290	대	496	
13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7	대	278	63-237	대	278	
13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6	전	175	63-56	전	175	
13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8	대	621	63-268	대	621	
13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3	대	590	63-223	대	590	
13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4	대	344	63-224	대	344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3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7	답	426	63-277	답	426	
13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6	대	377	63-66	대	377	
13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0	대	288	63-270	대	288	
14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3	대	331	63-243	대	331	
14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9	대	460	63-259	대	460	
14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8	대	325	63-248	대	325	
14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3	주유소용지	391	63-13	주유소용지	391	
14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4	주유소용지	671	63-14	주유소용지	671	
14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4	답	2,639	63-64	답	2,639	
14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7	답	810	72-47	답	810	
14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0	대	417	63-240	대	417	
1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6-1	전	103	2016-1	전	103	
14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7-1	전	143	2017-1	전	143	
15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9	전	215	63-59	전	215	
15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9	대	430	63-249	대	430	
15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83	대	233	63-83	대	233	
15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9-2	답	2,555	69-2	답	2,555	
15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1	대	276	71-21	대	276	
15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5	전	73	63-285	전	73	
15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7	대	350	63-287	대	350	
15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91	대	54	63-291	대	54	
15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44	전	415	63-44	전	415	
15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47	전	311	63-47	전	311	
16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48	전	274	63-48	전	274	
16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3	대	433	63-63	대	433	
16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9	답	2,149	63-69	답	2,149	
16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49	전	271	63-49	전	271	
16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4	대	374	63-74	대	374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6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6	대	324	63-256	대	324	
16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5	대	479	63-235	대	479	
16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2	전	119	63-342	전	119	
16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7	전	267	63-57	전	267	
16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7	대	449	63-247	대	449	
17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9	답	225	63-279	답	225	
17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43	전	255	63-43	전	255	
17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6	대	344	63-266	대	344	
17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7	대	284	63-267	대	284	
17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3	대	288	63-233	대	288	
17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93	답	109	63-293	답	109	
17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94	전	248	63-294	전	248	
17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4	전	43	71-4	전	43	
17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7	전	109	72-27	전	109	
17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0	전	245	63-60	전	245	
18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답	75	72-5	답	75	
18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0	답	684	72-10	답	684	
18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1	대	340	63-241	대	340	
18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6-3	전	133	2016-3	전	133	
18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7-3	전	130	2017-3	전	130	
18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5	답	155	63-265	답	155	
18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6	대	212	63-246	대	212	
18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2	대	165	63-222	대	165	
18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6	전	271	63-16	전	271	
18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18	대	288	63-218	대	288	
19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9	대	536	63-239	대	536	
19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46	잡종지	590	63-46	잡종지	590	
19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0	전	261	63-340	전	261	
19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15	대	223	63-215	대	223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9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16	대	285	63-216	대	285	
19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17	대	161	63-217	대	161	
19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3	전	296	63-343	전	296	
19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57	답	513	2757	답	513	
19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57-1	전	1,630	2757-1	전	1,630	
19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57-2	답	392	2757-2	답	392	
20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2	대	397	63-252	대	397	
20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3	대	756	72-3	대	756	
20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6	전	199	63-226	전	199	
20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8	대	373	63-288	대	373	
20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2	대	554	72-22	대	554	
20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2	전	193	63-62	전	193	
20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0	대	407	63-260	대	407	
20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5	전	202	63-55	전	202	
20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1	전	231	63-61	전	231	
20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4	대	281	63-244	대	281	
2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1	대	298	63-251	대	298	
2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68	대	150	63-68	대	150	
2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0	대	319	72-20	대	319	
2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45	대	552	63-45	대	552	
2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8	잡종지	347	63-228	잡종지	347	
2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6	대	198	63-346	대	198	
21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4	답	246	71-24	답	246	
21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6	답	393	72-6	답	393	
21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19	답	73	63-219	답	73	
21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0	대	239	63-220	대	239	
22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1	대	291	63-271	대	291	
22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2	대	390	63-272	대	390	
22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6	전	108	2016	전	108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2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7	전	162	2017	전	162	
22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45	대	635	63-245	대	635	
22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20	답	660	2020	답	660	
22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20-1	답	1,808	2020-1	답	1,808	
22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8	답	1,064	72-8	답	1,064	
22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1	대	349	63-231	대	349	
22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5-2	도로	47	2775-2	도로	47	
23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5	대	377	63-75	대	377	
23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72	전	524	63-72	전	524	
23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21	답	1,904	2021	답	1,904	
23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1	구거	1,965	63-11	구거	1,965	
23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8	전	185	63-58	전	185	
23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8	대	489	63-258	대	489	
23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9-6	답	311	69-6	답	311	
23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1	전	456	63-51	전	456	
23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62	답	483	63-262	답	483	
23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78	답	357	63-278	답	357	
24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4	전	188	63-284	전	188	
24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92	대	251	63-292	대	251	
24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0	전	264	63-50	전	264	
24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2	전	231	63-52	전	231	
24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3	전	215	63-53	전	215	
24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54	전	347	63-54	전	347	
24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	전	910	72-1	전	910	
24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4	대	116	63-234	대	116	
2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95	답	23	63-295	답	23	
24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1	대	165	72-21	대	165	
25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26	대	40	72-26	대	40	
25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46	답	160	72-46	답	160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5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4	대	264	63-254	대	264	
25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5	대	377	63-255	대	377	
25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1-22	답	427	71-22	답	427	
25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15	대	1,066	72-15	대	1,066	
25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25	대	492	63-225	대	492	
25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86	대	373	63-286	대	373	
25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50	대	298	63-250	대	298	
25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8	답	2,149	63-368	답	2,149	
26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238	대	350	63-238	대	350	
26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6-2	전	123	2016-2	전	123	
26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7-2	전	140	2017-2	전	140	
26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9	답	50	63-39	답	50	
26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67-1	도로	114	2467-1	도로	114	
26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5-1	도로	68	2775-1	도로	68	
26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5-3	답	236	2775-3	답	236	
26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6-1	도로	125	2776-1	도로	125	
26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76-3	답	77	2776-3	답	77	
26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10	답	70	2810-1	답	21	지구계 분할(면적감소)
27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23-1	구거	57	2823-1	구거	57	
27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24-1	도로	73	2824-1	도로	73	
27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2-1	답	1,060	2832-1	답	1,060	
27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3-2	답	363	2833-2	답	363	
27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3-3	답	409	2833-3	답	409	
27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19	전	60	63-119	전	60	
27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6	도로	62	63-306	도로	62	
27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7	도로	328	63-307	도로	328	
27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6	도로	13	63-316	도로	13	
27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4	도로	83	63-344	도로	83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8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5	도로	332	63-345	도로	332	
28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8	도로	4,577	63-348	도로	4,577	
28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4	전	37	63-354	전	37	
28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55	답	752	63-355	답	752	
28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67	도로	237	63-367	도로	237	
28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0-1	답	122	70-1	답	122	
28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0-18	도로	9	70-18	도로	9	
28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0-19	도로	54	70-19	도로	54	
28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0-2	도로	294	70-2	도로	294	
28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0-20	도로	33	70-20	도로	33	
29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9-45	도로	70	29-45	도로	70	
29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9-50	답	176	29-50	답	176	
29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9-48	답	23	29-48	답	23	
29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9-49	답	237	29-49	답	237	
29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9-27	답	42	29-27	답	42	
29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9-29	답	127	29-29	답	127	
29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22	전	195	63-122	전	195	
29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1	전	135	63-301	전	135	
29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5	도로	191	63-315	도로	191	
29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8	도로	10	63-308	도로	10	
30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09	도로	123	63-309	도로	123	
30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23	전	102	63-123	전	102	
30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24	도로	71	63-124	도로	71	
30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10	도로	203	63-310	도로	203	
30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125	도로	99	63-125	도로	99	
30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4-1	답	727	2834-1	답	727	
30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78-1	도로	36	2878-1	도로	36	
30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49-1	구거	116	2849-1	구거	116	
30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51-2	답	226	2851-2	답	226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30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50-1	답	114	2850-1	답	114	
3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54-2	구거	3	2854-2	구거	3	
3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7-13	도로	1,215	727-13	도로	1,215	
3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32-3	도로	216	32-3	도로	216	
3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32-2	도로	397	32-2	도로	397	
3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63-349	도로	4	63-349	도로	4	
3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7-10	도로	41	727-10	도로	41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토지 조서

<철원군>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합계	철원군			363필지		105,304.9	336필지		92,669.0	
소계	새마을지구			363필지		105,304.9	336필지		92,669.0	감 27필지 / 감 12,635.9㎡
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3-8	도로	195				제외
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3-12	도로	93	243-12	도로	93	
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5-2	도로	955	245-2	도로	955	
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5-26	도로	196	245-26	도로	196	
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6-1	도로	10	246-1	도로	10	
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1	전	579	247-1	전	579	
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2	도로	356	247-2	도로	356	
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4	전	136	247-4	전	136	
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5	전	159	247-5	전	159	
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6	전	119	247-6	전	119	
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7	대	438	247-7	대	438	
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9	대	354	247-9	대	354	
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47-10	도로	244	247-10	도로	244	
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0-1	구거	83	250-1	구거	83	
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0-2	구거	59	250-2	구거	59	
1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1-1	답	68	251-1	답	68	
1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2	답	157	252	답	157	
1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2	대	69	258-2	대	69	
1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3	대	112	258-3	대	112	
2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4	대	17	258-4	대	17	
2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5	전	133	258-5	전	133	
2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6	대	162	258-6	대	162	
2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8	전	631	258-8	전	631	
2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0	전	278	258-10	전	278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1	전	96	258-11	전	96	
2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2	전	102	258-12	전	102	
2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3	전	268	258-13	전	268	
2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4	전	26	258-14	전	26	
2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5	전	33	258-15	전	33	
3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6	대	33	258-16	대	33	
3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7	대	152	258-17	대	152	
3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9-1	대	235	259-1	대	235	
3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9-2	전	245	259-2	전	245	
3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9-3	대	357	259-3	대	357	
3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9-4	대	426	259-4	대	426	
3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9-5	대	30	259-5	대	30	
3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	대	668	260-1	대	668	
3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2	대	969	260-2	대	969	
3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3	대	765	260-3	대	765	
4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4	대	515	260-4	대	515	
4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6	전	221	260-6	전	221	
4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7	대	20	260-7	대	20	
4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8	전	23	260-8	전	23	
4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9	도로	278	260-9	도로	278	
4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0	전	377	260-10	전	377	
4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1	창고용지	374	260-11	창고용지	374	
4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2	전	93	260-12	전	93	
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3	대	423	260-13	대	423	
4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5	대	688	260-15	대	688	
5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6	대	130	260-16	대	130	
5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7	대	22	260-17	대	22	
5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8	전	261	260-18	전	261	
5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19	대	96	260-19	대	96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5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20	전	516	260-20	전	516	
5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21	전	122	260-21	전	122	
5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22	주차장	463	260-22	주차장	463	
5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24	전	80	260-24	전	80	
5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31	대	47	260-31	대	47	
5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32	대	87	260-32	대	87	
6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33	대	87	260-33	대	87	
6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34	대	73	260-34	대	73	
6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0-35	전	3	260-35	전	3	
6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1-1	대	46	261-1	대	46	
6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1-4	전	142	261-4	전	142	
6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1-5	대	291	261-5	대	291	
6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1	대	79	262-1	대	79	
6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2	전	268	262-2	전	268	
6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4	대	463	262-4	대	463	
6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5	전	370	262-5	전	370	
7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6	전	139	262-6	전	139	
7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7	전	281	262-7	전	281	
7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8	전	83	262-8	전	83	
7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10	대	453	262-10	대	453	
7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3-2	구거	423	263-2	구거	423	
7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3-8	대	66	263-8	대	66	
7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3-9	전	139	263-9	전	139	
7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1	답	32				지구지정 전 합병
7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5	대	215	264-5	대	215	
7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6	대	524	264-6	대	524	
8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7	대	831	264-7	대	831	
8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8	대	58	264-8	대	58	
8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9	대	145	264-9	대	145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8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10	대	129	264-10	대	129	
8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11	대	367	264-11	대	367	
8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16	대	24	264-16	대	24	
8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17	대	55	264-17	대	55	
8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18	대	68	264-18	대	68	
8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0	대	55	264-20	대	55	
8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2	대	77	264-22	대	77	
9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3	대	5	264-23	대	5	
9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4	대	11	264-24	대	11	
9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5	대	10	264-25	대	10	
9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6	대	55	264-26	대	55	
9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7	대	69	264-27	대	69	
9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8	대	124	264-28	대	124	
9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29	대	165	264-29	대	165	
9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4-30	대	273	264-30	대	273	
9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	대	212	265-1	대	212	
9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2	도로	970	265-2	도로	970	
10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3	대	643	265-3	대	643	
10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5	종교용지	249	265-5	종교용지	249	
10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7	도로	328	265-7	도로	328	
10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0	대	380	265-10	대	380	
10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1	대	292	265-11	대	292	
10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2	대	129	265-12	대	129	
10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3	전	128	265-13	전	128	
10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4	대	329	265-14	대	329	
10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5	전	46	265-15	전	46	
10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7	도로	24	265-17	도로	24	
1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8	도로	49	265-18	도로	49	
1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19	도로	20	265-19	도로	20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20	도로	28	265-20	도로	28	
1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21	도로	31	265-21	도로	31	
1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22	도로	32	265-22	도로	32	
1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23	도로	53	265-23	도로	53	
11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24	도로	11	265-24	도로	11	
11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5-25	도로	80	265-25	도로	80	
11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6-1	대	139	266-1	대	139	
11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6-3	대	288	266-3	대	288	
12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6-5	대	20	266-5	대	20	
12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7-1	대	181	267-1	대	181	
12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7-2	도로	20	267-2	도로	20	
12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7-3	대	66	267-3	대	66	
12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7-4	대	23	267-4	대	23	
12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7-5	도로	37	267-5	도로	37	
12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8-1	대	262	268-1	대	262	
12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8-2	도로	191	268-2	도로	191	
12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8-4	도로	7	268-4	도로	7	
12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9-1	도로	29	269-1	도로	29	
13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9-4	도로	23	269-4	도로	23	
13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	대	139	270-1	대	139	
13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	도로	562	270-2	도로	562	
13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3	대	122	270-3	대	122	
13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4	대	508	270-4	대	508	
13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5	대	423	270-5	대	423	
13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6	대	43	270-6	대	43	
13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7	도로	239	270-7	도로	239	
13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8	대	522	270-8	대	522	
13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9	대	291	270-9	대	291	
14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0	대	281	270-10	대	281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4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1	대	162	270-11	대	162	
14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2	도로	167	270-12	도로	167	
14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3	대	469	270-13	대	469	
14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4	대	720	270-14	대	720	
14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5	대	463	270-15	대	463	
14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7	도로	60	270-17	도로	60	
14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8	대	355	270-18	대	355	
1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19	도로	91	270-19	도로	91	
14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0	대	328	270-20	대	328	
15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1	대	225	270-21	대	225	
15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2	도로	7	270-22	도로	7	
15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3	도로	22	270-23	도로	22	
15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4	도로	22	270-24	도로	22	
15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6	도로	5	270-26	도로	5	
15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7	도로	2	270-27	도로	2	
15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8	도로	12	270-28	도로	12	
15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29	도로	3	270-29	도로	3	
15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30	도로	5	270-30	도로	5	
15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31	도로	5	270-31	도로	5	
16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0-34	대	39	270-34	대	39	
16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	전	258	271-1	전	258	
16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	도로	807	271-2	도로	807	
16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5	구거	73	271-5	구거	73	
16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6	대	218	271-6	대	218	
16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7	도로	228	271-7	도로	228	
16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8	대	10	271-8	대	10	
16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9	대	662	271-9	대	662	
16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0	대	377	271-10	대	377	
16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1	대	298	271-11	대	298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7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2	대	225	271-12	대	225	
17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3	도로	551	271-13	도로	551	
17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4	대	291	271-14	대	291	
17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5	대	271	271-15	대	271	
17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6	대	655	271-16	대	655	
17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7	대	466	271-17	대	466	
17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8	대	458	271-18	대	458	
17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19	대	347	271-19	대	347	
17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0	대	327	271-20	대	327	
17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1	대	522	271-21	대	522	
18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3	대	526	271-23	대	526	
18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4	대	198	271-24	대	198	
18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5	대	294	271-25	대	294	
18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6	대	20	271-26	대	20	
18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7	도로	10	271-27	도로	10	
18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8	도로	32	271-28	도로	32	
18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29	도로	28	271-29	도로	28	
18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30	도로	23	271-30	도로	23	
18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1-32	도로	4	271-32	도로	4	
18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	도로	40	272-1	도로	40	
19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2	도로	476	272-2	도로	476	
19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3	대	506	272-3	대	506	
19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4	구거	33	272-4	구거	33	
19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5	대	731	272-5	대	731	
19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6	대	344	272-6	대	344	
19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7	대	368	272-7	대	368	
19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8	대	607	272-8	대	607	
19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9	대	320	272-9	대	320	
19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0	대	296	272-10	대	296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19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1	대	346	272-11	대	346	
20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2	대	340	272-12	대	340	
20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3	대	627	272-13	대	627	
20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4	대	926	272-14	대	926	
20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5	대	280	272-15	대	280	
20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6	대	402	272-16	대	402	
20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7	대	392	272-17	대	392	
20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8	대	480	272-18	대	480	
20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19	대	134	272-19	대	134	
20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20	도로	26	272-20	도로	26	
20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21	도로	6	272-21	도로	6	
2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22	도로	28	272-22	도로	28	
2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2-23	도로	14	272-23	도로	14	
2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	도로	245	273-1	도로	245	
2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	대	278	273-2	대	278	
2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3	도로	358	273-3	도로	358	
2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4	대	22	273-4	대	22	
21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5	대	423	273-5	대	423	
21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6	대	246	273-6	대	246	
21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7	대	508	273-7	대	508	
21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8	대	582	273-8	대	582	
22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9	대	1,290	273-9	대	1,290	
22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1	대	60	273-11	대	60	
22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2	대	514	273-12	대	514	
22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3	대	1,241	273-13	대	1,241	
22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4	대	143	273-14	대	143	
22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5	대	411	273-15	대	411	
22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6	대	324	273-16	대	324	
22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7	대	547	273-17	대	547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2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8	대	127	273-18	대	127	
22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19	대	620	273-19	대	620	
23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0	대	353	273-20	대	353	
23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1	대	593	273-21	대	593	
23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2	구거	312	273-22	구거	312	
23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3	대	67	273-23	대	67	
23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4	대	109	273-24	대	109	
23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5	구거	8	273-25	구거	8	
23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6	대	24	273-26	대	24	
23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7	도로	17	273-27	도로	17	
23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8	도로	22	273-28	도로	22	
23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29	도로	4	273-29	도로	4	
24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30	도로	33	273-30	도로	33	
24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3-32	도로	6	273-32	도로	6	
24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1	전	87	274-1	전	87	
24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	도로	1,716	274-2	도로	1,716	
24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	주유소용지	732	274-4	주유소용지	732	
24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5	구거	173	274-5	구거	173	
24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6	대	232	274-6	대	232	
24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7	대	253	274-7	대	253	
2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8	전	188	274-8	전	188	
24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9	대	158	274-9	대	158	
25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10	전	140	274-10	전	140	
25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11	대	670	274-11	대	670	
25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14	대	682	274-14	대	682	
25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15	대	725	274-15	대	725	
25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16	대	94	274-16	대	94	
25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18	대	43	274-18	대	43	
25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0	대	7	274-20	대	7	

구분	토지소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5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1	대	209	274-21	대	209	
25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2	주유소용지	191	274-22	주유소용지	191	
25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5	도로	61	274-25	도로	61	
26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6	도로	12	274-26	도로	12	
26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7	도로	17	274-27	도로	17	
26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8	도로	14	274-28	도로	14	
26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29	도로	28	274-29	도로	28	
26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0	도로	83	274-30	도로	83	
26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1	도로	10	274-31	도로	10	
26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2	도로	16	274-32	도로	16	
26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3	도로	3	274-33	도로	3	
26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4	도로	17	274-34	도로	17	
26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6	도로	16	274-36	도로	16	
27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7	도로	21	274-37	도로	21	
27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39	도로	8	274-39	도로	8	
27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3	대	140	274-43	대	140	
27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4	전	116	274-44	전	116	
27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5	전	133	274-45	전	133	
27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6	전	1,371	274-46	전	1,371	
27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7	전	35	274-47	전	35	
27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8	전	31	274-48	전	31	
27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49	전	40	274-49	전	40	
27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74-50	전	28	274-50	전	28	
28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	답	251	280-4	답	251	
28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7	대	659	280-7	대	659	
28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8	구거	1,115	280-8	구거	1,115	
28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9	답	238	280-9	답	238	
28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0	답	274	280-10	답	274	
28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1	대	365	280-11	대	365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28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2	대	348	280-12	대	348	
28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3	전	89	280-13	전	89	
28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4	전	60	280-14	전	60	
28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5	전	42	280-15	전	42	
29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6	전	10	280-16	전	10	
29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8	전	316	280-18	전	316	
29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19	대	1,176	280-19	대	1,176	
29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0	대	203	280-20	대	203	
29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1	대	857	280-21	대	857	
29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2	대	203	280-22	대	203	
29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3	전	84	280-23	전	84	
29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4	답	480	280-24	답	480	
29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5	대	1,508	280-25	대	1,508	
29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6	전	66	280-26	전	66	
30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7	대	1,194	280-27	대	1,194	
30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29	대	700	280-29	대	700	
30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30	대	316	280-30	대	316	
30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31	대	243	280-31	대	243	
30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33	구거	347	280-33	구거	347	
30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34	전	327	280-34	전	327	
30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35	전	660	280-35	전	660	
30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0	전	66	280-40	전	66	
30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1	전	119	280-41	전	119	
30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2	전	60	280-42	전	60	
31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3	전	233	280-43	전	233	
31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4	대	694	280-44	대	694	
31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5	대	1,134	280-45	대	1,134	
31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6	대	203	280-46	대	203	
31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7	대	147	280-47	대	147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31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48	전	75	280-48	전	75	
31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0-58	전	166	280-58	전	166	
31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3	대	167	283-3	대	167	
31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4	대	96	283-4	대	96	
31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5	대	173	283-5	대	173	
32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6	대	252	283-6	대	252	
32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7	전	165				지구지정 전 합병
32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9	대	16	283-9	대	16	
32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83-10	대	50	283-10	대	50	
32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27-4	도로	102				제외
32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28-4	도로	330				제외
32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28-6	도로	867				제외
32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29-2	도로	498				제외
32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1-1	구거	42	441-1	구거	42	
32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3-2	도로	559				제외
33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3-7	도로	42				제외
33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4-2	답	133	444-2	답	133	
33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5-2	구거	28	445-2	구거	28	
33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7-1	답	30	447-1	답	30	
33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7-3	답	645	447-3	답	645	
33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7-6	대	70	447-6	대	70	
33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7-7	대	280	447-7	대	280	
33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7-8	대	83	447-8	대	83	
33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8-2	구거	63	448-2	구거	63	
33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48-3	답	60	448-3	답	60	
34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53-20	구거	113	453-20	구거	113	
34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53-72	구거	75	453-72	구거	75	
34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31-5	도로	65				제외
34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35	도로	111	735	도로	111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34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17-4	답	61				제외
34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17-5	답	40				제외
34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45-1	도로	10				제외
34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45-3	도로	73				제외
3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46	답	664				제외
34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46-1	도로	176				제외
35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46-4	도로	102				제외
35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47	답	124				제외
35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63	구거	4,507.4				제외
35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63-20	구거	69				제외
354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63-21	구거	92				제외
355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71	도로	2,584	1071	도로	2,584	
356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74-2	도로	65				제외
357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74-3	도로	125				제외
35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366	구거	836				제외
359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371	구거	631				제외
360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372	도로	2,299.5	2372	도로	2,258	지구계 분할(면적 감소)
361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14	구거	3,497	2614	구거	3,497	
362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6	대	660				제외
363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626-1	전	1,504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7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고시

- 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 공공청사,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결정(변경) 취지

- 현(現)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청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기결정(춘천시 고시 제2023-156호) 하였고,
- 추후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의 복합화와 건축물의 밀도 확보 등을 위하여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신청사 부지에 편입되는 자연취락지구 일부 해제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 공공청사, 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0,758.6	-	100,758.6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0,758.6	100,758.6	100	
자연녹지지역	28,840	감) 28,840	-	-	
생산녹지지역	71,918.6	감) 71,918.6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동내면 고은리 225-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840	250% 이하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1,918.6	250% 이하	

2) 용도지구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고은리 2	자연취락 지구	동내면 고은리 231	-	48,700	감) 21,045	27,655	2003.07.23 강원도고시 제2003-159호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3	자연취락 지구	• 면적 변경 - 면적 : 48,700㎡ → 27,655㎡, 감) 21,045㎡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용도지구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5	공공청사	강원도청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0,758	증) 0.6	100,758.6	-	-

(2) 공공청사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	비 고
60% 이하	250% 이하	10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	공공청사 (강원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면적 : 100,758㎡ → 100,758.6㎡ (증)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분할측량에 따라 면적 변경

4)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22	23	집산도로	1,094	광장41	광로3-1호선	일반 도로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83번지 일원 - 폭원 : 23m - 연장 : 1,09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도로 신설

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청 청사건립추진단(☎ 033-249-4518), 춘천시 도시계획과(☎ 033-250-3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8호

섬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세목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94(2023.12.28.)호로 고시된 “섬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1. 사 업 명 : 섬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외 3개리 일원
- 3. 사업목적 :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
- 4. 수혜면적 : 193.5ha
- 5. 사 업 량
 - 평야부 용배수로 개보수 13조 6,979m
 - 용수간선 : 4조 2,555m
 - 용수지선 : 1조 978m
 - 배수지선 : 8조 3,446m
 - 부대공사 : 가설공사, 시험비 등
- 6. 사 업 비 : 5,190백만원
- 7. 사업기간 : 2023. 12. ~ 2026. 12.
- 8.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10. 지형도면 :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열람가능)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033-749-1651)

[붙임]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비 고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1	170	170					170	170	변경
	1	47,571	135	-			1	47,571	135	당초
답	-			-			-			
전	-			-			-			
구거	-			-			-			
도로	-			-			-			
임야	1	170	170					170	170	변경
	1	47,571	135	-			1	47,571	135	당초
대지	-			-			-			
유지	-			-			-			
공장	-			-			-			
하천	-			-			-			
제방	-			-			-			
잡종지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건등리)										
구 분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비 고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1	170	170	-			1	170	170	변경
	1	47,571	135	-			1	47,571	135	당초
답	-			-			-			
전	-			-			-			
구거	-			-			-			
도로	-			-			-			
임야	1	170	170	-			1	170	170	변경
	1	47,571	135	-			1	47,571	135	당초
대지	-			-			-			
유지	-			-			-			
공장	-			-			-			
하천	-			-			-			
제방	-			-			-			
잡종지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사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	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산84 -2	임야	170	170	김현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3길 111(화양동)				토지 정정 토지 분할
	당초	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산84	임야	47,571	135	김인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1길 19-17, 204 (녹번동,준성새롬빌)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9호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6. 7.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변경)

- 명 칭 : (기정) ㈜하이원 추추파크 대표 장학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김익환, 삼척시 시장 김양호(변경)
 ㈜하이원 추추파크 대표 정의성,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규연, 삼척시 시장 박상수
- 소재지 : ㈜하이원 추추파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99
 한국광해광업공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 명 칭: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5-2번지 일원
- 면 적: 707,186㎡
- 사업내용: 레일바이크, 인클라인철도, 심포정수장, 심포뷰티스마켓 등
- 목 적
 - 폐광지역인 도계지역에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구간을 역사·문화적 자원으로써 보존하고, 폐광지역의 문화·관광아이템 발굴과 고품스럽고 이국적인 명품리조트의 조성으로 기존폐광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특색있는 관광명소로써 쇄신 및 지역민의 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 시행기간: 2008년 ~ 2024년
- 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51호

원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설치(변경)인가 고시

‘원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 원주시장
 -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 2. 사업 목적 :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의 급격한 유입유량 변동 및 수질 균등화를 위해 유입침사지 및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구역
 -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144번지 일원(원주하수처리장 내)
 - 나. 면적 : 10,365.6㎡(영구점용 4,199.6㎡, 일시점용 6,166.0㎡)
- 4. 설치(변경)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유입침사지 증설(25,000㎡/일), 유량조정조 신설(130,000㎡/일)
-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52.978km²
-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원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 7. 사업시행기간 : 2021 ~ 2026년(공사기간 : 2024~2026)
- 8. 기타 설계도서 및 사업관련 관계서류는 원주시 하수과(033-737-461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총계					4,199.60	6,166.00					
1	가현동	155	잡	12,884	1,089.6	1,410.3		원주시			
2	가현동	155-7	도	2,871	133.9	171.5		국(건설부)			
3	가현동	149-19	체	1,010	4.8	23.3		원주시			
4	가현동	156	잡	2,807	779.6	1,486.4		원주시			
5	가현동	155-1	구	550	253.8	313.0		국(농수산부)			
6	가현동	154	잡	5,246	1,286.8	1,624.0		원주시			
7	가현동	150-5	수	1,137	24.1	118.7		원주시			
8	가현동	149-4	답	1,001	30.4	109.0		원주시			
9	가현동	151-3	답	1,508	596.5	898.9		원주시			
10	가현동	152-2	답	2,810		10.9		국(농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8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1. 모집인원: 00명
- 2. 모집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에너지, 건축방재, 건축시공, 건축환경, 경관/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건축물 설치광고, 주택정책, 소방, 교통, 한옥 민원(분쟁)/사회, 정보기술 등
- 3. 위촉기간: 3년(위촉일로부터 3년) ※ 2024. 8.12. ~ 2027. 8.11.
- 4. 주요기능
 - 가.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한 사항
- 5. 응모자격
 - 가. 모집분야에 관한 선정 기준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6. 응모기간 및 제출처
 - 가. 기 간: 2024. 6. 3.(월) ~ 7. 2.(화)
 - 나.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다. 제출방법: 이메일(zendo@korea.kr) 또는 방문 제출
 -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게재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 도정마당 ⇨ 공고/고시
- 7. 선정기준 및 결과 통지
 - 가.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존 위원은 우선 재위촉
 - 나. 전문 분야, 기관(단체), 경력, 연령, 성별 비율(40% 이상) 적정 배분

다. 자체 선정기준 심사 후 위촉 선정자에게만 개별 통지(8.11.한)

8. 제출서류

- 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
- 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다.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위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동일인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동일 위원으로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건축팀(033-249-2826)으로 연락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	------	--	-----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 및 경력, 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해촉시 까지)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 정보의 이용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해촉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공개모집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합니다.
2. E-Mail 제출 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3. 지원서 작성 시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4. 공개모집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응모분야" 는 모집 분야 중 해당 모집분야명 기재
 - ③ "직위(급)"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장, 이사, 사장, 회장 등 구체적으로 기재
 - ④ "사진"은 첨부할 것
 - ⑤ "주소"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및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 ⑥ "연락처"는 핸드폰, 이메일 기재
 - ⑦ "학력"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 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 ⑧ "자격증"은 당해 분야 최종 취득 자격을 정확히 기재
 - ⑨ "주요경력"은 당해 분야 주요 경력을 기재하며,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위원 경력 및 중앙부처·대학교·공공기관 등 경력 모두 인정
 - ⑩ 상기 각 "항"에 대한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용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86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신규 등록(1개 단체)

구 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비고
1 신규등록	제2024-강원특별자치도-2호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8. 2층	교육정책연구, 교육도서 및 자료의 발간, 세미나 및 정책포럼 개최,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지원 등	2024.05.21.	신규등록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95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영업정지 1개월)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17.(14일간)

2.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신위전기 대표자 김유성 / 경북-01967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3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발생일 : 2023. 11. 21.) - 기술자 1인 부족	
처분 내용	영업정지 1개월 (2024. 5. 16. ~ 6. 1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제2항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제1항제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033-249-2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행정

춘천시 고시 제2024-301호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수립 고시

- 1. 강원도 고시 제2010-221호(2010.7.16.)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춘천시 고시 제 2014-92호(2014.3.7.)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24-231호(2024.4.26.)로 개발계획 변경(17차) 수립, 실시계획 변경(12차) 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8차) 수립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7일

춘 천 시 장

□ 개발계획 변경(18차)에 관한 사항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60번지 일원
 - 나. 면 적 : 320,376.3㎡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 춘천시의 증가하는 주택수요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이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업무용지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심생활권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가. 시행자: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대웅
 -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0. 7. 16.) ~ 2024. 12. 31.

나.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개발계획의 변경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확정측량 전 (변경있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합 계	250필지		321,036.3	321,036.3							
변 경	합 계	250필지		321,036.3	321,036.3							
기 정	사유지	218필지		315,843.3	315,843.3							
변 경	사유지	218필지		315,843.3	315,843.3							
기 정	국·공 유지	32필지		5,193.0	5,193.0							
변 경	국·공 유지	32필지		5,193.0	5,193.0							
기 정	1	춘천시 학곡리	338	답	264.0	26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	춘천시 학곡리	339	전	533.0	53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	춘천시 학곡리	339 -1	전	99.0	9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	춘천시 학곡리	339 -2	전	463.0	46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5	춘천시 학곡리	339 -3	대	563.0	56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	춘천시 학곡리	339 -4	대	72.0	7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	춘천시 학곡리	339 -5	전	394.0	39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	춘천시 학곡리	339 -6	답	918.0	91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	춘천시 학곡리	339 -13	전	697.0	69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9	춘천시 학곡리	339 -29	전	697.0	69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춘천시 학곡리	339 -14	전	685.0	68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0	춘천시 학곡리	339 -30	전	685.0	68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1	춘천시 학곡리	339 -15	전	3,233.0	3,23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1	춘천시 학곡리	339 -31	전	3,233.0	3,23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2	춘천시 학곡리	339 -16	전	46.0	4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2	춘천시 학곡리	339 -32	전	46.0	4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3	춘천시 학곡리	339 -17	전	579.0	57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3	춘천시 학곡리	339 -33	전	579.0	57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춘천시 학곡리	339 -18	대	87.0	8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4	춘천시 학곡리	339 -34	대	87.0	8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5	춘천시 학곡리	339 -19	대	186.0	18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5	춘천시 학곡리	339 -35	대	186.0	18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춘천시 학곡리	339 -20	전	112.0	11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6	춘천시 학곡리	339 -36	전	112.0	11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7	춘천시 학곡리	339 -21	답	469.0	46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7	춘천시 학곡리	339 -37	답	469.0	46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8	춘천시 학곡리	339 -22	답	869.0	86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변 경	18	춘천시 학곡리	339 -38	답	869.0	86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9	춘천시 학곡리	340	답	346.0	34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춘천시 학곡리	340 -1	답	770.0	77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춘천시 학곡리	340 -2	답	368.0	36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2	춘천시 학곡리	341 -17	답	116.0	11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춘천시 학곡리	341 -19	답	390.0	39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춘천시 학곡리	341 -20	답	1,424.0	1,42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5	춘천시 학곡리	376 -16	답	389.0	38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6	춘천시 학곡리	376 -17	도	1.0	1.0		국(기획재정부)					
기 정	27	춘천시 학곡리	376 -18	답	175.0	175.0		국(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28	춘천시 학곡리	376 -19	답	199.0	19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9	춘천시 학곡리	376 -20	답	69.0	6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0	춘천시 학곡리	376 -21	답	1,056.0	1,05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1	춘천시 학곡리	378 -2	전	214.0	21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2	춘천시 학곡리	378 -5	답	1,177.0	1,17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3	춘천시 학곡리	378 -6	전	61.0	6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4	춘천시 학곡리	378 -7	전	383.0	38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5	춘천시 학곡리	378 -8	답	120.0	12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36	춘천시 학곡리	378 -9	답	1,602.0	1,60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7	춘천시 학곡리	378 -10	답	185.0	18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8	춘천시 학곡리	379 -1	임	38.0	3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9	춘천시 학곡리	379 -2	전	162.0	16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0	춘천시 학곡리	379 -3	임	38.0	3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1	춘천시 학곡리	379 -4	전	829.0	82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2	춘천시 학곡리	379 -5	전	672.0	67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3	춘천시 학곡리	379 -6	전	399.0	39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44	춘천시 학곡리	379 -7	전	1.0	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5	춘천시 학곡리	380 -1	대	417.0	41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6	춘천시 학곡리	380 -2	전	370.0	37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7	춘천시 학곡리	380 -3	전	231.0	23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8	춘천시 학곡리	380 -4	전	4,430.0	4,43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9	춘천시 학곡리	381 -2	전	315.0	31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50	춘천시 학곡리	381 -3	전	1,980.0	1,98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51	춘천시 학곡리	381 -6	대	182.0	18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52	춘천시 학곡리	381 -7	전	2.0	2.0		국(기획재정부)					
기 정	53	춘천시 학곡리	381 -8	전	241.0	241.0		국(기획재정부)					
기 정	54	춘천시 학곡리	381 -10	도	1.0	1.0		국(건설부)					
기 정	55	춘천시 학곡리	381 -11	도	45.0	45.0		국(기획재정부)					
기 정	56	춘천시 학곡리	381 -12	도	5.0	5.0		국(건설부)					
기 정	57	춘천시 학곡리	388 -3	대	355.0	35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58	춘천시 학곡리	388 -5	대	32.0	3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59	춘천시 학곡리	389 -4	전	773.0	77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0	춘천시 학곡리	389 -6	대	935.0	93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1	춘천시 학곡리	389 -7	대	340.0	34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2	춘천시 학곡리	389 -8	전	1.0	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리자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3	춘천시 학곡리	390 -1	대	96.0	9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4	춘천시 학곡리	390 -2	대	1,722.0	1,72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5	춘천시 학곡리	390 -3	대	331.0	33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6	춘천시 학곡리	390 -4	대	60.0	6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7	춘천시 학곡리	390 -5	대	175.0	17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8	춘천시 학곡리	391	대	536.0	53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9	춘천시 학곡리	392 -2	잡	153.0	15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0	춘천시 학곡리	392 -3	잡	65.0	6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1	춘천시 학곡리	392 -4	잡	1,240.0	1,24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2	춘천시 학곡리	392 -5	잡	1,249.0	1,24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3	춘천시 학곡리	392 -6	잡	338.0	33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4	춘천시 학곡리	392 -7	잡	47.0	4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5	춘천시 학곡리	392 -8	잡	692.0	69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6	춘천시 학곡리	392 -9	잡	251.0	25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7	춘천시 학곡리	392 -10	잡	454.0	45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8	춘천시 학곡리	392 -11	잡	201.0	20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9	춘천시 학곡리	392 -12	잡	4.0	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0	춘천시 학곡리	392 -13	잡	1,366.0	1,36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1	춘천시 학곡리	392 -14	잡	224.0	22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2	춘천시 학곡리	392 -15	잡	1,753.0	1,75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3	춘천시 학곡리	394 -4	대	866.0	86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4	춘천시 학곡리	394 -5	전	334.0	33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5	춘천시 학곡리	394 -7	도	461.0	46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6	춘천시 학곡리	394 -8	잡	1,029.0	1,02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7	춘천시 학곡리	394 -9	대	291.0	29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8	춘천시 학곡리	394 -10	전	202.0	20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9	춘천시 학곡리	394 -12	대	187.0	18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0	춘천시 학곡리	394 -14	대	231.0	23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1	춘천시 학곡리	394 -15	전	244.0	24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2	춘천시 학곡리	394 -17	대	227.0	22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3	춘천시 학곡리	394 -18	도	75.0	7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4	춘천시 학곡리	394 -19	창	35.0	3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리자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5	춘천시 학곡리	394 -20	임	53.0	5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6	춘천시 학곡리	394 -21	도	132.0	132.0	국(건설부)					
기 정	97	춘천시 학곡리	394 -22	임	1,411.0	1,41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8	춘천시 학곡리	394 -23	임	288.0	28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9	춘천시 학곡리	394 -24	임	127.0	12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0	춘천시 학곡리	394 -25	도	18.0	1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1	춘천시 학곡리	394 -26	잡	18.0	1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2	춘천시 학곡리	394 -27	대	14.0	1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0 3	춘천시 학곡리	394 -28	대	4.0	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4	춘천시 학곡리	394 -29	대	24.0	2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5	춘천시 학곡리	394 -30	대	229.0	22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6	춘천시 학곡리	394 -31	도	255.0	25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7	춘천시 학곡리	394 -32	창	89.0	8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8	춘천시 학곡리	394 -33	임	157.0	15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0 9	춘천시 학곡리	394 -34	임	67.0	6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1 0	춘천시 학곡리	394 -35	임	1.0	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	11 1	춘천시 학곡리	394 -36	도	27.0	27.0		국(건설부)				
기 정 2	11 2	춘천시 학곡리	394 -37	임	498.0	49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	11 3	춘천시 학곡리	394 -38	임	891.0	89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	11 4	춘천시 학곡리	394 -39	임	1,143.0	1,14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5	11 5	춘천시 학곡리	394 -40	임	142.0	14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	11 6	춘천시 학곡리	394 -41	임	545.0	54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	11 7	춘천시 학곡리	394 -42	임	939.0	93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	11 8	춘천시 학곡리	394 -43	임	419.0	41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9	11 9	춘천시 학곡리	394 -44	임	274.0	27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2 0	춘천시 학곡리	394 -45	임	1,954.0	1,95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2 1	춘천시 학곡리	394 -46	임	599.0	59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2 2	춘천시 학곡리	394 -47	임	231.0	23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2 3	춘천시 학곡리	394 -48	임	231.0	23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2 4	춘천시 학곡리	425 -5	답	142.0	142.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2 5	춘천시 학곡리	425 -11	답	97.0	97.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2 6	춘천시 학곡리	426 -1	답	103.0	103.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2 7	춘천시 학곡리	426 -2	답	87.0	8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2 8	춘천시 학곡리	426 -8	답	926.0	926.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2 9	춘천시 학곡리	426 -9	도	6.0	6.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3 0	춘천시 학곡리	426 -10	답	185.0	185.0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3 1	춘천시 학곡리	426 -11	답	473.0	47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3 2	춘천시 학곡리	426 -12	답	296.0	296.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3 3	춘천시 학곡리	427 -6	답	19.0	19.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3 4	춘천시 학곡리	427 -8	도	310.0	310.0		국(건설부)					
기 정 13 5	춘천시 학곡리	427 -10	도	155.0	155.0		국(건설교통부)					
기 정 13 6	춘천시 학곡리	428 -7	임	400.0	40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3 7	춘천시 학곡리	428 -16	잡	1,653.0	1,65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3 8	춘천시 학곡리	428 -17	임	125.0	12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3 9	춘천시 학곡리	428 -18	임	601.0	60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0	춘천시 학곡리	428 -19	잡	1,584.0	1,58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4 1	춘천시 학곡리	428 -20	잡	180.0	18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2	춘천시 학곡리	428 -21	잡	58.0	5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3	춘천시 학곡리	428 -22	임	19.0	1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4	춘천시 학곡리	428 -23	임	8,494.0	8,49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5	춘천시 학곡리	428 -24	도	8.0	8.0		국(건설부)					
기 정 14 6	춘천시 학곡리	428 -26	도	61.0	6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7	춘천시 학곡리	428 -27	잡	195.0	19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8	춘천시 학곡리	428 -28	잡	541.0	54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4 9	춘천시 학곡리	428 -29	잡	470.0	47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0	춘천시 학곡리	428 -30	잡	1,316.0	1,31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1	춘천시 학곡리	428 -31	잡	1,324.0	1,32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2	춘천시 학곡리	428 -32	잡	201.0	20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3	춘천시 학곡리	428 -33	잡	14.0	1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4	춘천시 학곡리	428 -34	잡	3,029.0	3,02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5	춘천시 학곡리	428 -35	잡	3,566.0	3,56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6	춘천시 학곡리	428 -36	잡	386.0	38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7	춘천시 학곡리	432 -2	대	391.0	39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8	춘천시 학곡리	432 -3	대	587.0	58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5 9	춘천시 학곡리	441 -2	묘	1,531.0	1,53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0	춘천시 학곡리	441 -3	묘	588.0	58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1	춘천시 학곡리	562 -25	답	46.0	4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2	춘천시 학곡리	562 -26	답	159.0	15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3	춘천시 학곡리	562 -35	답	1.0	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4	춘천시 학곡리	562 -70	답	1,056.0	1,05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5	춘천시 학곡리	562 -71	답	641.0	64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6	춘천시 학곡리	562 -72	답	942.0	94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7	춘천시 학곡리	562 -73	답	108.0	10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6 8	춘천시 학곡리	575 -4	도	102.0	102.0	국(건설부)					
기 정	16 9	춘천시 학곡리	576 -9	구	278.0	278.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0	춘천시 학곡리	576 -10	구	16.0	16.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1	춘천시 학곡리	576 -11	구	110.0	110.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2	춘천시 학곡리	576 -12	구	242.0	242.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3	춘천시 학곡리	576 -13	구	125.0	125.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4	춘천시 학곡리	576 -14	구	274.0	274.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5	춘천시 학곡리	576 -15	구	190.0	190.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6	춘천시 학곡리	576 -16	구	349.0	349.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7	춘천시 학곡리	576 -17	구	194.0	194.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7 8	춘천시 학곡리	576 -18	구	320.0	320.0	춘천시	춘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7 9	춘천시 학곡리	576 -19	구	117.0	117.0		춘천시	춘천시				
기 정	18 0	춘천시 학곡리	858	대	49,376.0	49,37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기 정	18 1	춘천시 학곡리	859	대	39,217.1	39,217.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기 정	18 2	춘천시 학곡리	860	대	39,758.3	39,758.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 금융센터)				
기 정	18 3	춘천시 학곡리	861	대	13,123.9	13,123.9		주식회사새담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 정	18 4	춘천시 학곡리	산1- 4	임	187.0	18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8 5	춘천시 학곡리	산2- 4	임	2,881.0	2,88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8 6	춘천시 학곡리	산2- 5	임	1,817.0	1,81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8 7	춘천시 학곡리	산2- 6	임	251.0	25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8 8	춘천시 학곡리	산2- 7	임	205.0	20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8 9	춘천시 학곡리	산2- 8	임	5.0	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0	춘천시 학곡리	산3- 3	임	2,363.0	2,36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1	춘천시 학곡리	산4- 4	임	16,612.0	16,61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2	춘천시 학곡리	산5- 1	임	1,044.0	1,04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3	춘천시 학곡리	산6- 9	임	2,012.0	2,01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4	춘천시 학곡리	산6- 10	임	118.0	11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5	춘천시 학곡리	산6- 11	임	304.0	30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6	춘천시 학곡리	산6- 12	임	1,770.0	1,77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9 7	춘천시 학곡리	산7-3	임	1,511.0	1,51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8	춘천시 학곡리	산7-4	임	1,465.0	1,46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19 9	춘천시 학곡리	산7-5	임	150.0	15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0	춘천시 학곡리	산7-6	임	565.0	56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1	춘천시 학곡리	산7-7	임	392.0	39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2	춘천시 학곡리	산7-8	임	33.0	3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3	춘천시 학곡리	산7-9	임	361.0	36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4	춘천시 학곡리	산7-10	임	171.0	17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20 5	춘천시 학곡리	산7- 11	임	939.0	93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6	춘천시 학곡리	산7- 12	임	82.0	8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7	춘천시 학곡리	산7- 13	임	419.0	41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8	춘천시 학곡리	산7- 14	임	936.0	93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0 9	춘천시 학곡리	산7- 15	임	1,252.0	1,25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0	춘천시 학곡리	산7- 16	임	7.0	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1	춘천시 학곡리	산8	임	335.0	33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2	춘천시 학곡리	산8- 1	임	260.0	26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21 3	춘천시 학곡리	산11 -1	임	1,450.0	1,45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4	춘천시 학곡리	산11 -2	임	455.0	45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5	춘천시 학곡리	산11 -3	임	6.0	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6	춘천시 학곡리	산11 -4	임	2,115.0	2,11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7	춘천시 학곡리	산11 -5	임	1,202.0	1,20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8	춘천시 학곡리	산11 -6	임	2,622.0	2,62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1 9	춘천시 학곡리	산12 -3	임	362.0	36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2 0	춘천시 학곡리	산12 -5	임	6,845.0	6,84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1	22 춘천시 학곡리	산12 -6	임	362.0	36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	22 춘천시 학곡리	산13	임	578.0	57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3	22 춘천시 학곡리	산13 -2	임	569.0	569.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4	22 춘천시 학곡리	산13 -3	임	681.0	68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5	22 춘천시 학곡리	산13 -4	임	757.0	75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6	22 춘천시 학곡리	산13 -5	임	500.0	50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7	22 춘천시 학곡리	산13 -6	임	274.0	27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8	22 춘천시 학곡리	산13 -7	임	2,454.0	2,45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22 9	춘천시 학곡리	산13 -8	임	1,228.0	1,22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0	춘천시 학곡리	산13 -9	임	205.0	20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1	춘천시 학곡리	산 13-1 0	임	220.0	22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2	춘천시 학곡리	산 13-1 1	임	2,736.0	2,73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3	춘천시 학곡리	산 13-1 2	임	1,303.0	1,30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4	춘천시 학곡리	산 13-1 3	임	3,680.0	3,68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5	춘천시 학곡리	산 13-1 4	임	2,692.0	2,69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6	춘천시 학곡리	산 13-1 5	임	43.0	4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23 7	춘천시 학곡리	산 13-1 6	임	570.0	57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8	춘천시 학곡리	산 13-1 7	임	54.0	5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3 9	춘천시 학곡리	산14	임	595.0	59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0	춘천시 학곡리	산15 -2	임	771.0	771.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1	춘천시 학곡리	산15 -3	임	5.0	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2	춘천시 학곡리	산15 -5	임	3.0	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3	춘천시 학곡리	산15 -6	임	713.0	71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4	춘천시 학곡리	산15 -7	임	847.0	847.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리자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24 5	춘천시 학곡리	산15 -8	임	532.0	53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6	춘천시 학곡리	산15 -9	임	150.0	15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7	춘천시 학곡리	산16 -4	임	1,378.0	1,37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8	춘천시 학곡리	산16 -6	임	8,033.0	8,03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4 9	춘천시 학곡리	산16 -7	임	13.0	1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 정 25 0	춘천시 학곡리	산16 -8	임	693.0	69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 확정측량 후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49필지		320,376.3	320,376.3							
사유지		49필지		320,376.3	320,376.3							
국·공유지		0필지		-	-							
기정	1	춘천시 학곡리	858 대	49,376.0	49,37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로, 부산국제금융센터)				부분 준공
기정	2	춘천시 학곡리	859 대	39,217.1	39,217.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로, 부산국제금융센터)				부분 준공
기정	3	춘천시 학곡리	860 대	39,758.3	39,758.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로, 부산국제금융센터)				부분 준공
기정	4	춘천시 학곡리	861 대	13,123.9	13,123.9		주식회사새담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부분 준공
기정	5	춘천시 학곡리	862 공	56,295.6	56,295.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6	춘천시 학곡리	863 공	385.6	385.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7	춘천시 학곡리	864 공	293.4	293.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8	춘천시 학곡리	865 공	444.3	444.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9	춘천시 학곡리	866 공	770.9	770.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0	춘천시 학곡리	867 공	1,108.9	1,108.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1	춘천시 학곡리	868 공	1,160.0	1,16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2	춘천시 학곡리	869 공	690.6	690.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리자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3	춘천시 학곡리	870	대	860.6	860.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4	춘천시 학곡리	870-1	대	1,310.4	1,310.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5	춘천시 학곡리	871	도	200.4	200.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6	춘천시 학곡리	872	대	1,318.8	1,318.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7	춘천시 학곡리	872-1	대	1,995.4	1,995.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8	춘천시 학곡리	873	도	207.9	207.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19	춘천시 학곡리	874	대	1,673.7	1,673.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0	춘천시 학곡리	874-1	대	1,737.7	1,737.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1	춘천시 학곡리	875	도	221.5	221.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2	춘천시 학곡리	876	대	1,982.9	1,982.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3	춘천시 학곡리	877	대	784.9	784.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4	춘천시 학곡리	877-1	대	909.2	909.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5	춘천시 학곡리	878	도	165.9	165.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리자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26	춘천시 학곡리	879	대	909.2	909.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7	춘천시 학곡리	879-1	대	783.9	783.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8	춘천시 학곡리	880	공	1,232.5	1,232.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29	춘천시 학곡리	881	차	2,055.9	2,055.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0	춘천시 학곡리	882	대	9,955.4	9,955.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1	춘천시 학곡리	883	대	6,631.5	6,631.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2	춘천시 학곡리	884	대	9,598.3	9,598.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3	춘천시 학곡리	885	도	719.4	719.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4	춘천시 학곡리	886	학	13,258.7	13,258.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5	춘천시 학곡리	887	공	963.7	963.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6	춘천시 학곡리	888	공	3,940.2	3,940.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7	춘천시 학곡리	889	대	782.4	782.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38	춘천시 학곡리	889-1	대	905.0	90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39	춘천시 학곡리	890	도	166.3	166.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0	춘천시 학곡리	891	대	949.3	949.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1	춘천시 학곡리	891-1	대	3,318.1	3,318.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2	춘천시 학곡리	891-2	대	755.8	755.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3	춘천시 학곡리	891-3	대	734.5	734.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4	춘천시 학곡리	892	공	6,742.7	6,742.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5	춘천시 학곡리	893	도	34,033.8	34,033.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6	춘천시 학곡리	894	도	27.2	27.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7	춘천시 학곡리	895	도	646.5	646.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8	춘천시 학곡리	896	유	922.7	922.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기정 49	춘천시 학곡리	897	유	4,349.4	4,349.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 회사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엔에스타워)				

나. 이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춘천시 고시 제2024-231호(2024.4.26.)와 같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춘천시 고시 제2024-31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7호(2024. 6. 7.)호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7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현(現)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청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기결정(춘천시 고시 제2023-156호) 하였고,
- 추후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의 복합화와 건축물의 밀도 확보 등을 위하여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신청사 부지에 편입되는 자연취락지구 일부 해제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공공청사, 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0,758.6	-	100,758.6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0,758.6	100,758.6	100	
자연녹지지역	28,840	감) 28,840	-	-	
생산녹지지역	71,918.6	감) 71,918.6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동내면 고은리 225-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8,840	250% 이하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1,918.6	250% 이하	

2) 용도지구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고은리2	자연취락 지구	동내면 고은리 231	-	48,700	감) 21,045	27,655	2003.07.23 강원도고시 제2003-159호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3	자연취락 지구	• 면적 변경 - 면적 : 48,700㎡ → 27,655㎡, 감) 21,045㎡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용도지구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5	공공 청사	강원 도청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0,758	증) 0.6	100,758.6	-	-

(2) 공공청사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	비 고
60% 이하	250% 이하	10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	공공청사 (강원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면적 : 100,758㎡ → 100,758.6㎡ (증)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분할측량에 따라 면적 변경

4)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22	23	집산도로	1,094	광장41	광로3-1 호선	일반 도로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83번지 일원 - 폭원 : 23m - 연장 : 1,09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청사 신축을 위한 도로 신설

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18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원주홍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원주홍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결정(변경)[강원도 고시 제2024-225호(2024.05.24.)] 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07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0	원주홍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55번지 일원	72,555	증) 105	72,660	강원도 고시 제2023-120호 (2023. 4. 7.)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원주시 전체(변경)

구 분	용도지역	분 류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868,020,938.0	증) 105	868,021,043.0	100.00	
도시지역	도시지역 계		88,683,978.2	증) 105	88,684,083.2	10.22	
	주거지역	소계	26,251,792.9	증) 67,916	26,319,708.9	3.03	
		제1종전용	240,781.2	-	240,781.2	0.03	
		제2종전용	149,211.6	-	149,211.6	0.02	
		제1종일반	6,747,520.7	-	6,747,520.7	0.78	
		제2종일반	11,661,883.6	증) 67,916	11,729,799.6	1.35	
		제3종일반	5,134,174.3	-	5,134,174.3	0.59	
		준주거	2,318,221.5	-	2,318,221.5	0.27	
	상업지역	소계	2,496,154.1	-	2,496,154.1	0.29	
		중심상업	210,727.2	-	210,727.2	0.02	
		일반상업	2,257,081.9	-	2,257,081.9	0.26	
		근린상업	28,345.0	-	28,345.0	0.00	
		유통상업	0.0	-	0.0	0.00	
	공업지역	소계	6,361,459.7	-	6,361,459.7	0.73	
		전용공업	0.0	-	0.0	0.00	
		일반공업	4,868,714.1	-	4,868,714.1	0.56	
		준공업	1,492,745.6	-	1,492,745.6	0.17	
	녹지지역	소계	53,418,201.9	감) 67,811	53,350,390.9	6.15	
		보전녹지	1,327,717.8	-	1,327,717.8	0.15	
		생산녹지	3,643,241.0	-	3,643,241.0	0.42	
자연녹지		48,447,243.1	감) 67,811	48,379,432.1	5.57		
용도지역 미지정			156,369.6	-	156,369.6	0.02	
비도시지역	비 도시지역 계		779,336,959.8	-	779,336,959.8	89.78	
	관리지역	합계	275,659,117.7	-	275,659,117.7	31.76	
		관리지역	321.0	-	321.0	0.00	
		보전관리	72,554,756.0	-	72,554,756.0	8.36	
		생산관리	41,031,772.5	-	41,031,772.5	4.73	
		계획관리	162,072,268.2	-	162,072,268.2	18.67	
	농림지역		392,564,161.1	-	392,564,161.1	45.23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13,681.0	-	111,113,681.0	12.80		

※ 2023.12.31.일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작성.

2) 용도지역 결정(변경) : 대상지(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555	증) 105	72,66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7,916	67,916	93.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2,555	감) 67,811	4,744	6.5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	25	주간선도로	342	대로 3-25	소초면 홍양리 1754-4잡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77호 (2009.02.27.)	-
변경	대로	3	15	25	주간선도로	301	대로 3-25	대로 1-13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종점변경
기정	대로	3	25	25	주간선도로	4,057	소로 1-701	광로 3-4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549호 (1985.12.16.)	-
변경	대로	3	25	25~28(3)	주간선도로	4,057(140)	소로 1-701	광로 3-4	일반 도로	-	"	변속차로설치 (L=140m)
신설	중로	1	105	21.5	집산 도로	60	대로 1-13	소초면 홍양리 1754-4잡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826	4	국지 도로	67	대로 3-25	소초면 홍양리 1757대	일반 도로	-	-	-

※ ()안은 사업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 공원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24	공원	어린이공원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56-1번지 일원	-	증) 2,205	2,205	-	

나) 녹지

■ 녹지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	제13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원주시 대장동 1507-1 일원	62,457	감) 33	62,424	강원도고시 제51호 (2003.02.27.)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A	A	72,660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55번지 일원	72,660	공동주택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
인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55번 지 일원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조망경관의 조성을 권장한다.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우면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권장한다. 	
A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55번 지 일원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에 의하여 지정된 최고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최고층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한다. 다만, 건축물 1개동 내에서의 10개층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은 저층부, 기준층부(저층부를 제외한 부분)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조화로운 입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냉난방시설 실외기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루버 등을 설치하여 차폐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동의 길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과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동의 길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6호이하로 건축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ㄹ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담장 및 계단,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의 경계 또는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한다. 다만, 부지 고저차에 의해 형성된 옹벽 및 파라펫은 설치할 수 있다.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부대복리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단지의 특화요소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색 채	○ 색채의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권역별 색채계획에 따른다. - 주조색 : 명도 6이상 8이하, 색상 Y, YR계열, 채도 2이상 - 보조색 : 명도 2이상 8이하, 색상 Y, YR계열, 채도 2이상 4이하 - 강조색 : 원색제한, 명도 3이상 5이하, 색상 Y, YR계열, 채도 4이상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2030년 원주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건축한계 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5m, 그 밖의 건축물 : 1m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주출입구	대로 3-25호선 변	주출입구 1개소	단지내 도로와 연계
부출입구	중로 1-105호선 변	부출입구 1개소	단지내 도로와 연계

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55번지 일원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내 차량동선	○ 차도의 교차구간에는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포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조경	○ 단지 내 조경은 「건축법」 및 「원주시 건축 조례」에 의하여 조성한다.
		주차장의 설치기준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상주차장 설치 시 바닥 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3.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188호

원주 도시관리계획[햇빛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햇빛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9	햇빛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원주시 단계동 1083	1,853.3	-	1,853.3	1994.12.21. (강원도 고시 제1994-201호)	세부조성 계획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시 설 내 용	변 경 수 량	변 경 사 유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 면적 : 461.0㎡ → 357.0㎡ 감)104.0㎡	• 배치도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및 광장 • 노후화 된 시설물 폐지
휴양시설	파고라, 휴게쉼터 (파고라,등의자, 앉음벽)	• 면적 : 0㎡ → 14.0㎡ 증)14.0㎡	• 노후화된 파고라 교체 및 휴게쉼터 조성
운동시설	운동공간 (체력단련시설)	• 면적 : 0㎡ → 150.0㎡ 증)150.0㎡	• 노후화된 운동시설 철거 및 신설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시소,그네)	• 면적 : 501.0㎡ → 273.0㎡ 감)228.0㎡	• 어린이놀이터 면적 변경 및 놀이시설 교체
녹지 및 기타	녹지	• 면적 : 891.3㎡ →1059.3.0㎡ 증)168.0㎡	• 배치도 변경으로 면적 변경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 조서 (변경)

구 분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 축 면 적 (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853.3	1,853.3	908.0	794.3	-	-	-	-	시설율 43.0%
시설계	908.0	794.3	908.0	794.3	-	-	-	-	감 113.7m ²
도로 및 광장	461.0	357.0	461.0	357.0	-	-	-	-	감 104.0m ²
도로	-	158.0	-	158.0	-	-	-	-	증 158.0m ²
광 장	461.0	199.0	461.0	199.0	-	-	-	-	감 262.0m ²
운동시설	-	150.0	-	150.0	-	-	-	-	증 150.0m ²
휴양시설	-	14.0	-	14.0	-	-	-	-	증 14.0m ²
유희시설	501.0	273.0	501.0	273.0	-	-	-	-	감 228.0m ²
편익시설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녹지 및 기타	891.3	1059.3	-	-	-	-	-	-	녹지율 : 57.0% 증 168.0m ²

나.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공작물(기)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853.3	1,853.3	908.0	794.3	3	15	
시설	계	-	908.0	794.3	908.0	794.3	3	15	시설율 43.0
도로 및 광장	소 계	-	461.0	357.0	461.0	357.0	-	-	감) 104.0m ²
	도로	-	-	158.0	-	158.0	-	-	
	광장	-	461.0	-	461.0	-	-	-	
	가-1	진입광장	-	199.0	-	199.0	-	-	
휴양 시설	소 계	-	-	14	-	14	-	7	증) 14.0m ²
	나	휴게쉼터	-	14	-	14	-	-	
	나-1	파고라	-	-	-	-	-	1	
	나-2	등의자	-	-	-	-	-	5	
	나-3	앉음벽	-	-	-	-	-	1	
유희 시설	소 계	-	501.0	273	501.0	273	3	3	감) 228.0m ²
	다	어린이놀이터	279.0	273	279.0	273	-	-	
	다-1	조합놀이대	-	-	-	-	1	1	
	다-2	시소	-	-	-	-	1	1	
	다-3	그네	-	-	-	-	-	1	
	다-4	정글짐	-	-	-	-	1	-	
	다-5	다목적구장	222.0	-	222.0	-	-	-	
운동 시설	소 계	-	-	150	-	150	-	5	증) 150.0m ²
	라	운동공간	-	150	-	150	-	5	
	라-1	체력단련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	891.3	1059.3	-	-	-	-	증) 168.0m ²
	-	녹지	891.3	1059.3	-	-	-	-	

다. 도로 총괄조서

구 분	연장(m)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	56.0	-	150.0	-
소로3류	-	56.0	-	150.0	

라.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 ²)		기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신 설	소로	3	연-1	2.7	-	30.0	-	80.0	진입로	북측입구	광장	
신 설	소로	3	연-2	2.7	-	26.0	-	70.0	진입로	남측입구	과장	

■ 도시관리계획(햇빛어린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19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706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706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원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706호)사업
- 명칭 : 금빛따리굴 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원주시장(관광과)
-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결정면적(m ²)	금회시행(m ²)	비고
주차장706호	37,324	37,32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지정: 2022.6.17. ~ 2024.12.31.
- 변경: 2022.6.17. ~ 202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기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관부면 금대리	438-3	답	3	3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253	이현복				
2	관부면 금대리	438-4	답	783	78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	관부면 금대리	438-5	답	1,084	1,0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	관부면 금대리	441-8	전	823	494	재무부	국				
5	관부면 금대리	442-3	답	1,841	1,84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6	관부면 금대리	442-6	답	1,250	1,25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7	관부면 금대리	443	답	979	979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8	관부면 금대리	444	답	3,531	3,53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9	관부면 금대리	445	대	542	54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0	관부면 금대리	445-1	목	166	16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1	관부면 금대리	445-2	전	542	54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2	관부면 금대리	445-3	전	102	10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3	관부면 금대리	446	대	132	13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4	관부면 금대리	449-1	답	1,349	1,349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5	관부면 금대리	449-2	답	1,521	1,52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6	관부면 금대리	450	답	476	47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7	관부면 금대리	451	답	833	83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8	관부면 금대리	452	전	1,450	1,45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9	관부면 금대리	453	전	1,098	1,09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0	관부면 금대리	454	전	188	18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1	관부면 금대리	455	전	843	84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2	관부면	457-1	답	49	49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금대리										
23	관부면 금대리	458-2	답	93	9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4	관부면 금대리	481	전	512	5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31번길 15, 401호	김성자				1/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7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7, 106동 1306호	김성숙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4-19, 113동 1101호	김성진				1/7
25	관부면 금대리	482-1	답	3,466	3,4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31번길 15, 401호	김성자				1/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7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7, 106동 1306호	김성숙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4-19, 113동 1101호	김성진				1/7
26	관부면 금대리	482-2	답	1,045	1,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31번길 15, 401호	김성자				1/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7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7, 106동 1306호	김성숙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4-19, 113동 1101호	김성진				1/7
27	관부면 금대리	482-3	답	1,091	1,09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8	관부면 금대리	482-4	답	117	11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9	관부면 금대리	483-1	답	367	36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30	판부면 금대리	483-2	답	446	446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31번길 15, 401호	김성자				1/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7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7, 106동 1306호	김성숙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4-19, 113동 1101호	김성진				1/7	
31	판부면 금대리	484	답	109	109	원주시 행구동 1799	권영여				1/2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207	서병구				1/2	
32	판부면 금대리	485	답	1,124	1,12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3	판부면 금대리	486	대	635	635	원주시 중앙동 68	조기숙					2/4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8/43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403, 505동 1202호	김정애					12/3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 103동 1304호	안효건					8/3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3, 105동 202호	안효창					8/301
						미국 캘리포니아주 91765 다이아몬드바시 골든스프링스 길 600번지 씨호	백정옥					4/43
						원주시 인동 121	안두혁					4/43
						원주시 원동 109	안희구자					1/43
34	판부면 금대리	487-1	답	965	965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265	김재수					
35	판부면 금대리	487-3	과	171	17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6	판부면 금대리	488	전	212	212	금대리 496	박대범					4/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박대범					2/18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관리의종류및 내용	
						59, 14동 2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59, 14동 206호	박대범				12/18
37	관부면 금대리	489-6	답	460	46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8	관부면 금대리	489-7	답	101	101	원주시 관부면 금대리 489-2	정순자				
39	관부면 금대리	691-3	답	1,282	1,282	원주시 관부면 금대리 529	안성진				
40	관부면 금대리	691-17	답	938	938	원주시 관부면 금대리 529	안성진				
41	관부면 금대리	691-18	답	194	19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2	관부면 금대리	691-19	도	162	162	환경부	국				
43	관부면 금대리	691-16	도	44	4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4	관부면 금대리	692-2	대	365	36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5	관부면 금대리	692-5	대	525	52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6	관부면 금대리	692-6	답	208	208	원주시 중앙동 68	조기숙				2/4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8/43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 403, 505동 1202호	김정애				12/3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 103동 1304호	안효건				8/3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3, 105동 202호	안효창				8/301
						미국 캘리포니아주 91765 다이아몬드바시 골든스프링스 길 600번지 씨호	백정옥				4/43
						원주시 인동 121	안두혁				4/43
원주시 원동 109	안희구자				1/43						
47	관부면 금대리	692-7	도	196	19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8	관부면	692-8	답	630	63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금대리										
49	관부면 금대리	692-9	대	637	63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0	관부면 금대리	692-10	대	628	62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1	관부면 금대리	692-11	답	104	10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2	관부면 금대리	692-12	답	280	28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3	관부면 금대리	1457-5	도	151	151	건설부	국				
	관부면 금대리	1457-6	도	786	786	건설부	국				
54	관부면 금대리	437	철	15,640	24	국토교통부	국				

■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관부면 금대리	438-3	답	3	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	관부면 금대리	438-4	답	783	78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	관부면 금대리	438-5	답	1,084	1,0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	관부면 금대리	441-8	전	823	49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	관부면 금대리	442-3	답	1,841	1,84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6	관부면 금대리	442-6	답	1,250	1,25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7	관부면 금대리	443	답	979	979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8	관부면 금대리	444	답	3,531	3,53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9	관부면 금대리	445	대	542	54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0	관부면 금대리	445-1	목	166	16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1	관부면 금대리	445-2	전	542	54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2	관부면 금대리	445-3	전	102	10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3	관부면 금대리	446	대	132	13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4	관부면 금대리	449-1	답	1,349	1,349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5	관부면 금대리	449-2	답	1,521	1,52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6	관부면 금대리	450	답	476	47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7	관부면 금대리	451	답	833	83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8	관부면 금대리	452	전	1,450	1,45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9	관부면 금대리	453	전	1,098	1,09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0	관부면 금대리	454	전	188	18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1	관부면 금대리	455	전	843	84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22	관부면 금대리	457-1	답	49	49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3	관부면 금대리	458-2	답	93	93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4	관부면 금대리	481	전	512	51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5	관부면 금대리	482-1	답	3,466	3,46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6	관부면 금대리	482-2	답	1,045	1,04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7	관부면 금대리	482-3	답	1,091	1,09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8	관부면 금대리	482-4	답	117	11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9	관부면 금대리	483-1	답	367	36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0	관부면 금대리	483-2	답	446	44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1	관부면 금대리	484	답	109	109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2	관부면 금대리	485	답	1,124	1,12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3	관부면 금대리	486	대	635	63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4	관부면 금대리	487-1	답	965	96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5	관부면 금대리	487-3	과	171	17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6	관부면 금대리	488	전	212	21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7	관부면 금대리	489-6	답	460	46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8	관부면 금대리	489-7	답	101	10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9	관부면 금대리	691-3	답	1,282	1,28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0	관부면 금대리	691-17	답	938	93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1	관부면 금대리	691-18	답	194	19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2	관부면 금대리	691-19	도	162	162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3	관부면	691-16	도	44	44	원주시 시청로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금대리					1					
44	관부면 금대리	692-2	대	365	36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5	관부면 금대리	692-5	대	525	52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6	관부면 금대리	692-6	답	208	20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7	관부면 금대리	692-7	도	196	19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8	관부면 금대리	692-8	답	630	63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9	관부면 금대리	692-9	대	637	637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0	관부면 금대리	692-10	대	628	628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1	관부면 금대리	692-11	답	104	10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2	관부면 금대리	692-12	답	280	28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3	관부면 금대리	1457-5	도	151	15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4	관부면 금대리	1457-6	도	786	786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5	관부면 금대리	437	철	15,640	24	원주시 시청로 1	국				

■ 지장물조서(기정)

순 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관부면 금대리 691-1 7	비닐하우스	4.5m x 2.7m	12.07	㎡	강원도 원주시 관부면 금대리 529	안성진				

■ 지장물조서(변경)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관부면 금대리 442-6	비닐하우스1	11.5m x 1.9m	67.47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비닐하우스2	24.5m x 5.0m	123.59	m ²						
		비닐하우스3	24.2m x 5.1m	122.41	m ²						
		비닐하우스4	24.3m x 5.1m	122.41	m ²						
		비닐하우스5	6.2m x 3.4m	21.17	m ²						
		비닐하우스6	17.6m x 5.9m	104.83	m ²						
		저장시설	5.5m x 3.0m	16.50	m ²						
		창고	1.5m x 1.5m	2.25	m ²						
2	관부면 금대리 444	컨테이너	6.4m x 2.9m	18.48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창고		18.67	m ²						
3	관부면 금대리 445	주택	조적조/경량철골	82.89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창고	목조/목조	30.00	m ²						
		주택	목조/스레트	58.80	m ²						
		잠실	목조/스레트	22.25	m ²						
		비닐하우스	9.4m x 4.3m	40.49	m ²						
		수목(교목)	H=3.0m	6	EA						
4	관부면 금대리 445-1	축사	시멘트블럭/스레트	69.16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	관부면 금대리 446	수목(교목)	H=4.0m	3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6	관부면 금대리 449-1	한전주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7	관부면 금대리 452	한전주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묘지		1	EA						
8	관부면 금대리 454	채신주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9	관부면 금대리 482-2	수목(교목)-1	H=7.0m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교목)-2	H=6.0m	1	EA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수목(교목)-3	H=1.0m	7	EA						
		한천주		1	EA						
		채신주		1	EA						
10	관부면 금대리 483-1	컨테이너	4.1m x 3.0m	12.57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1	관부면 금대리 486	주택	목조/시멘기와	52.36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창고	목조/스레트	17.02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잠실	목조/스레트	10.58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웬스	H=2.0m	10.00	m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관목)	H=1.0m	24.71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2	관부면 금대리 691-17	비닐하우스	4.5m x 2.7m	12.07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3	관부면 금대리 691-5	컨테이너	4.0m x 3.0m	12.00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대추나무)		5	EA						
14	관부면 금대리 692-2	수목(교목)-1	H=3.0m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교목)-2	H=3.0m	1	EA						
		수목(교목)-3	H=4.0m	1	EA						
15	관부면 금대리 692-5	주택	조적조(적벽돌)/스라브	99.39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주택	조적조/아스팔트형글	12.00	m ²						
		창고1		12.19	m ²						
		창고2		1.17	m ²						
		창고3		10.37	m ²						
		창고4		77.42	m ²						
		창고5		12.66	m ²						
		창고6		9.60	m ²						
EGI웬스	H=1.8m	75.00	m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웬스출입문	H=2.0m, L=12.0m	3	EA						
		수목(교목)-1	H=2.0m	1	EA						
		수목(교목)-2	H=3.0m	1	EA						
		수목(교목)-3	H=4.0m	1	EA						
		수목(교목)-4	H=2.0m	1	EA						
		수목(교목)-5	H=2.0m	1	EA						
		수목(관목)		10.60	m ²						
16	관부면 금대리 692-7	비닐하우스	7.2m x 4.5m	32.64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창고		12.09	m ²						
		수목(관목)		88.00	m ²						
17	관부면 금대리 692-8	한전주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18	관부면 금대리 692-5	단독주택	조적조 (시멘트블록)	85.67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일반음식점	조적조 (시멘트블록)	75.26	m ²						
		일반음식점 (화장실)	조적조 (시멘트블록)	5.72	m ²						
		제2종근린생 활시설 (일반음식점)	목조/ 경사지붕(초가)	25.47	m ²						
		제2종근린생 활시설 (일반음식점)	목조/ 경사지붕(초가)	10.60	m ²						
		수목(교목)-1	H=6.0m	1	EA						
		수목(교목)-2	H=6.0m	1	EA						
		수목(교목)-3	H=6.0m	1	EA						
		수목(교목)-4	H=6.0m	1	EA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수목(교목)-5	H=3.0m	1	EA						
19	관부면 금대리 692-10	다가구주택 (1가구)	황토심벽/경사지 붕/방수쉬트	108.60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창고	콘테이너/천막	61.20	m ²						
		수목(교목)-1	H=3.0m	1	EA						
		수목(교목)-2	H=3.0m	1	EA						
		수목(교목)-3	H=3.0m	1	EA						
		한전주		1	EA						
20	관부면 금대리 692-11	콘테이너	2.6m x 2.6m	6.80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교목)	H=6.0m	1	EA						
21	관부면 금대리 692-8	콘테이너	3.0m x 3.0m	9.00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창고		30.84	m ²						
22	관부면 금대리 487-2	수목 (자두나무)		6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3	관부면 금대리 487-1	수목 (복숭아나무)		6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4	관부면 금대리 488	수목 (복숭아나무)		5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 (사과나무)		1	EA						
25	관부면 금대리 442-3	수목 (복숭아나무)		50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6	관부면 금대리 453	수목 (복숭아나무)		100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7	관부면 금대리 691-12	수목(관목)		83.43	m ²	환경부	국				
		한전주		1	EA						
		체신주		1	EA						
28	관부면 금대리 449-2	창고		25.75	m ²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9	관부면 금대리 438-5	수목(교목)-1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교목)-2		1	EA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30	관부면 금대리 485	수목(관목)- 1		1	EA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수목(관목)- 2		1	EA						
		수목(관목)- 3		1	EA						
		수목(관목)- 3		1	EA						
31	관부면 금대리 437	한전주		2	EA	국토교통 부	국				
		체신주		1	EA						
		표지판		2	EA						

원주시 공고 제2024-1569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20호, 중로2-30호)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원 주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33-3번지, 단구동 1702-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20호, 중로2-30호)사업
 - 명칭: 남원로~단관청솔아파트 간(중로1-20)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건설과)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폭원(m)	연장(m)	금회시행(m)	비고
중로1-20호	20	2,526	B=35m, L=372m	(판부구간)
중로1-20호	20	2,526	B=25m, L=367m	(단구구간)
중로2-30호	15	409	B=15m, L=157m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9. 7. 31.
-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6. 7. ~ 2024. 6. 25.
 - 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 토지조서

1) 중로1-20호(판부구간), 중로2-30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판부면 서곡리	429-4	답	1,393	5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7,26층,33층 (삼성동, 아셈타워)			
2	판부면 서곡리	435-7	답	10	10	남원주지역주 택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6	유비 이엔텍	원주시 치악로 2255-1(태장동)	가압류
								김병창	원주시 남원로606번길 2	가압류
								김규민	원주시 봉화로 67	가압류
								김채민	원주시 백간길 17	가압류
								조경란	원주시 늘품로 120	가압류
								이덕환	원주시 포란재로 36	가압류
3	판부면 서곡리	434-4	구	82	6	원주시	공유지			
4	판부면 서곡리	434-3	전	575	8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5	판부면 서곡리	433-2	답	1,124	17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6	판부면 서곡리	433-3	답	262	262	박병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02,103동 1101호(봉산동, 동신아파트)			
7	판부면 서곡리	432-3	답	809	807	이재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백간길 80,102-701 (단계동, 벽산아파트)			
8	판부면 서곡리	390-1	도	16,537	1,100	국토교통부	국유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	관부면 서곡리	392-2	답	436	436	이재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간길 80, 102-701 (단계동, 벽산아파트)			
10	관부면 서곡리	391-2	답	209	209	원용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526			
11	관부면 서곡리	390-4	답	288	226	안재선 외 1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복원로 46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서원주지점)	근저당 권
								안영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시청로 264	
12	관부면 서곡리	1775-1	도	710	66	국토교통부	국유지			
13	관부면 서곡리	389-4	답	1,351	206	원영복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내남송길 17-4			
14	관부면 서곡리	1775-2	도	990	136	국토교통부	국유지			
15	관부면 서곡리	388-1	답	27	27	곽순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안담길 27			
16	관부면 서곡리	산62	묘	5,891	2,583	원주시	공유지			
17	관부면 서곡리	산62-1	도	14,075	125	국토교통부	국유지			
18	관부면 서곡리	383-1	답	2,847	61	외남송토지개발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468-1			
19	관부면 서곡리	381	전	1,231	944	유영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관길 67-28 (단구동)			
20	관부면 서곡리	산54	임	702	258	정의섭	원주시 동진골1길 65 (일산동)	원주우리 새마을금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초교길 44(우산동)	
21	관부면 서곡리	산54-4	임	485	111	정의섭	원주시 동진골1길 65 (일산동)			
22	원주시 단구동	1722	도	5,295	246	원주시	공유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3	관부면 서곡리	397	전	3,596	1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33층(삼성동,아셈타워)			
24	관부면 서곡리	396-2	답	74	7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33층(삼성동,아셈타워)			
25	관부면 서곡리	397-18	임	9	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33층(삼성동,아셈타워)			
26	관부면 서곡리	397-14	임	13	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33층(삼성동,아셈타워)			
27	관부면 서곡리	396	답	1,730	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33층(삼성동,아셈타워)			
28	관부면 서곡리	397-17	전	168	168	박병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02, 103동1101호(봉산동, 동신아파트)			
29	관부면 서곡리	396-3	답	41	41	박병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02, 103동1101호(봉산동, 동신아파트)			
30	관부면 서곡리	397-13	임	314	314	이종민 외 2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8(개운동)	이종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205-37 현대아파트	
31	관부면 서곡리	396-4	답	137	137	박병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02, 103동1101호(봉산동, 동신아파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2	관부면 서곡리	390-3	답	276	274	안재선 외 1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복원로 46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서원주지점)	근저당 권
								안영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시청로 264	
33	관부면 서곡리	386-5	임	268	268	원용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526			
34	관부면 서곡리	389-4	답	1,351	1,151	원영복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부면 내남송길 17-4			
계					10,591					

2) 중로1-20호(단구구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단구동	113-4	임	716	691	한정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07롯데아파트3-1204			
2	단구동	113-36	임	1,000	222	전용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902			
3	단구동	1702-2	도	3,654	3,654	원주시	공유지			
4	단구동	857-4	임	570	485	원주시	공유지			
5	단구동	산113-53	도	1,085	547	원주시	공유지			
6	관설동	1556-25	임	186	134	원주시	공유지			
7	관설동	1556-27	도	175	97	원주시	공유지			
8	관설동	1556-12	임	2,837	791	문현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5-1 개나리푸르지오 303-1704			
9	관설동	1556	전	2,173	510	김진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 센트라우스 아파트 107-1002			
10	관설동	1778	공	14,964	206	원주시	공유지			
계					7,337					

■ 지장물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관부면 서곡리	381	표지판	사각형 80 x 45cm	1	EA	유영자	원주시 단관길67-28				
2	관부면 서곡리	381	표지판	사각형 60 x 42cm	1	EA	유영자	원주시 단관길67-28				
3	단구동	1722	가로등		1	EA	원주시	공유지				
4	관부면 서곡리	381	컨테이너	6.0m x 4.0m	1	EA	유영자	원주시 단관길67-28				
5	관부면 서곡리	390-1	전력주		2	EA	한국 전력 공사	원주시 우산동 316-9				
6	관부면 서곡리	390-1	통신주		1	EA	KT					
7	관부면 서곡리	산62	전력주		1	EA	한국 전력 공사	원주시 우산동 316-9				
8	관부면 서곡리	산62	통신주		1	EA	KT					
9	관부면 서곡리	381	전력주		1	EA	한국 전력 공사	원주시 우산동 316-9				
10	관부면 서곡리	381	통신주		1	EA	KT					
11	관설동	1556	함석창고	사각형 100 x 50cm	1	EA	김진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 센트라우스 아파트 107-1002				
12	관설동	1556	함석창고	사각형 30 x 30cm	1	EA	김진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 센트라우스 아파트 107-1002				

원주시 공고 제2024-158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2-6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단계동 382-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2-6호)사업
- 명칭: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기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호성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금회시행	비고
대로2-6호	B=2m, L=102m, A=19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4. 5 29(접수일)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단계동 382-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2-6호)사업
- 명칭: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기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호성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금회시행	비고
대로2-6호	B=2m, L=102m, A=195m ²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6. 7. ~ 2024. 6. 21.
- 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의종류및내용	
1	원주시 단계동	382-26	전	15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양재동)	기아 주식회사	-	-	-	
2	원주시 단계동	382-27	임	16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양재동)	기아 주식회사	-	-	-	
3	원주시 단계동	382-28	대	20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양재동)	기아 주식회사	-	-	-	
4	원주시 단계동	382-29	도	14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양재동)	기아 주식회사	-	-	-	
5	원주시 무실동	441-10	대	96	96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양재동)	기아 주식회사	-	-	-	
6	원주시 무실동	442-7	주	34	34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양재동)	기아 주식회사	-	-	-	
합 계				195	195						

강릉시 고시 제2024-19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8호선, 중로3-50호선, 중로3-51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20-141호(2020. 4. 7.)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고시되고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도로(중로2-68호선, 중로3-50호선, 중로3-51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강릉시장

1.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강릉 도시계획도로(중로2-68호선, 중로3-50호선, 중로3-51호선)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시 설 명	위 치	총연장 (m)	금회시공					기 점	종 점
			연장 (m)	폭 (m)	면적(m2)				
					당초	증감	변경		
계					8,592 *1,093	감)25	8,567 *1,096		
중로2-68	강릉시 내곡동 144-1번지 일원	300	300	15	4,742.1 *1,093	감)0.1	4,742 *1,096	대1-5 내곡동 92-2도	소1-4 내곡동 607-4
중로3-50	강릉시 내곡동 산7-6번지 일원	422	409	13~15 (3~5)	1,758	감)25	1,733	중2-48 내곡동 산7-6	소2-82 내곡동 102-3
중로3-51	강릉시 내곡동 98번지 일원	255	255	12~14	2,091.9	증)0.1	2,092	중2-68 내곡동 98	소2-82 내곡동 102-3

- ※ ()은 금회 시행분
- ※ 공동주택 사업승인완료에 따른 토지 정리 및 오류사항 정정
- ※ *은 기타 도로개설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2) 성 명: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강릉 도시계획도로(중로2-68호선, 중로3-50호선, 중로3-51호선)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시 설 명	위 치	총연장 (m)	금회시공					기 점	종 점
			연장 (m)	폭 (m)	면적(m2)				
					당초	증감	변경		
계					8,592 *1,093	감)25	8,567 *1,096		
중로2-68	강릉시 내곡동 144-1번지 일원	300	300	15	4,742.1 *1,093	감)0.1	4,742 *1,096	대1-5 내곡동 92-2도	소1-4 내곡동 607-4
중로3-50	강릉시 내곡동 산7-6번지 일원	422	409	13~15 (3~5)	1,758	감)25	1,733	중2-48 내곡동 산7-6	소2-82 내곡동 102-3
중로3-51	강릉시 내곡동 98번지 일원	255	255	12~14	2,091.9	증)0.1	2,092	중2-68 내곡동 98	소2-82 내곡동 102-3

- ※ ()은 금회 시행분
- ※ 공동주택 사업승인완료에 따른 토지 정리 및 오류사항 정정
- ※ *은 기타 도로개설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2) 성 명: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4년 5월 31일

바.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사업비 : 3,964,000,000원(금 삼십구억육천사백만원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자금				비고
	중로2-68	중로3-50	중로3-51	계	
합계	2,059	995	910	3,964	
개설공사비	1,222	803	605	2,630	
토지보상비	837	192	305	1,334	

자금조달계획: 사업주 5.0% + 금융자금 95.0%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총괄 (국공유지 제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기부채납 면적(m2)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계			8,592	감)572	8,020	도시계획시설 (도로)내 설치되는 토지 및 모든 시설물 귀속
도시계획도로	중로2-68	L=300m, B=15m	4,742.1	감)538.1	4,204	
도시계획도로	중로3-50	L=409m, B=3~5m	1,758	감)34	1,724	
도시계획도로	중로3-51	L=255m, B=12~14m	2,091.9	증)0.1	2,092	

- 중로2-68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 ²)	편입 면적(m ²)	소 유 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합 계				5,256	4,742				
무상 귀속 대상 토지	1	내곡동	86-5	구	21	21	성만개발㈜	공사완료 후 강릉시로 무상귀속 (시설 및 토지소유권)	
	2	내곡동	86-3	임	520	520	성만개발㈜		
	3	내곡동	85-1	임	104	104	성만개발㈜		
	4	내곡동	78-1	답	9	9	성만개발㈜		
	5	내곡동	79-2	답	540	540	㈜하나자산신탁		
	6	내곡동	80-1	답	624	624	㈜하나자산신탁		
	7	내곡동	601-14	도	37	35	성만개발㈜		
	8	내곡동	601-16	도	51	49	성만개발㈜		
	9	내곡동	601-18	도	60	60	성만개발㈜		
	10	내곡동	99-2	전	275	171	㈜하나자산신탁		
	11	내곡동	98-1	전	488	82	㈜하나자산신탁		
	12	내곡동	95-2	답	212	212	㈜하나자산신탁		
	13	내곡동	95-1	답	909	909	㈜하나자산신탁		
	14	내곡동	97-28	임	144	144	㈜하나자산신탁		
	15	내곡동	142-6	전	559	559	㈜하나자산신탁		
	16	내곡동	144-3	전	77	77	성만개발㈜		
	17	내곡동	142-10	전	88	88	심**		
합 계				4,718	4,204				
무상 귀속 미대상 토지	1	내곡동	607-37	구	61	61	국(국토교통부)	-	기존 공공시설로 설치 완료된 토지
	2	내곡동	147-6	도	5	5	국(국토교통부)		
	3	내곡동	145-4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4	내곡동	142-9	도	27	27	국(국토교통부)		
	5	내곡동	산8-6	도	1	1	국(국토교통부)		
	6	내곡동	92-7	도	414	414	국(국토교통부)		
합 계				538	538				

• 중로3-50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합 계				1,986	1,733				
무상 귀속 대상 토지	1	내곡동	산110-3	도	1	1	성만개발(주)	공사완료 후 강릉시로 무상귀속 (시설 및 토지소유권)	
	2	내곡동	140-8	도	31	31	성만개발(주)		
	3	내곡동	140-6	도	9	9	성만개발(주)		
	4	내곡동	140-4	전	5	5	(주)하나자산신탁		
	5	내곡동	601-20	도	12	12	성만개발(주)		
	6	내곡동	601-21	도	37	37	성만개발(주)		
	7	내곡동	139-4	도	91	91	성만개발(주)		
	8	내곡동	138-4	전	1	1	성만개발(주)		
	9	내곡동	139-5	전	86	86	(주)하나자산신탁		
	10	내곡동	139-1	도	53	6	성만개발(주)		
	11	내곡동	97-31	임	790	790	(주)하나자산신탁		
	12	내곡동	97-30	임	332	332	(주)하나자산신탁		
	13	내곡동	97-34	임	39	39	성만개발(주)		
	14	내곡동	97-35	임	24	24	성만개발(주)		
	15	내곡동	103-6	전	136	136	(주)하나자산신탁		
	16	내곡동	102-11	도	328	122	성만개발(주)		
	17	내곡동	102-8	임	2	2	(주)하나자산신탁		
합 계				1,977	1,724				
무상 귀속 미대상 토지	1	내곡동	97-12	도	9	9	국(국토교통부)	-	기존 공공시설로 설치 완료된 토지
	합 계				9	9			

• 중로3-5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합 계				2,551	2,092			
무상 귀속 대상 토지	1	내곡동	99-2	전	275	104	㈜하나자산신탁	공사완료 후 강릉시로 무상귀속 (시설 및 토지소유권)
	2	내곡동	601-14	도	37	2	성만개발㈜	
	3	내곡동	98-1	전	488	406	㈜하나자산신탁	
	4	내곡동	601-16	도	51	2	성만개발㈜	
	5	내곡동	100	전	124	124	㈜하나자산신탁	
	6	내곡동	80-3	답	125	125	㈜하나자산신탁	
	7	내곡동	601-12	도	194	194	성만개발㈜	
	8	내곡동	79-3	답	181	181	㈜하나자산신탁	
	9	내곡동	78-2	답	1	1	성만개발㈜	
	10	내곡동	101-3	전	328	328	㈜하나자산신탁	
	11	내곡동	102	임	22	22	㈜하나자산신탁	
	12	내곡동	102-5	임	120	120	㈜하나자산신탁	
	13	내곡동	102-6	임	58	58	㈜하나자산신탁	
	14	내곡동	106-9	대	28	28	㈜하나자산신탁	
	15	내곡동	102-1	임	191	191	㈜하나자산신탁	
	16	내곡동	102-11	도	328	206	성만개발㈜	
합 계				2,551	2,09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붙임] 토지조서(변경)

- 중로2-68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 권리의종 류
합 계				5,256	5,256	4,742. 1	감)0.1	4,742					
1	내곡동	86-5	구	21	21	21	-	21	성만개발 ㈜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 권리의종 류
2	내곡동	607-3 7	구	61	61	61	-	61	국	국토교통부			
3	내곡동	86-3	임	520	520	520	-	520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4	내곡동	85-1	임	104	104	104	-	104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5	내곡동	78-1	답	9	9	9	-	9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6	내곡동	79-2	답	540	540	540	-	540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7	내곡동	80-1	답	624	624	624	-	624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8	내곡동	601-1 4	도	37	37	35	-	35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9	내곡동	601-1 6	도	51	51	49.1	감)0.1	49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0	내곡동	601-1 8	도	60	60	60	-	60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1	내곡동	99-2	전	275	275	171	-	171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2	내곡동	98-1	전	488	488	82	-	82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3	내곡동	95-2	답	212	212	212	-	212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4	내곡동	95-1	답	909	909	909	-	909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5	내곡동	97-28	임	144	144	144	-	144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6	내곡동	142-6	전	559	559	559	-	559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7	내곡동	144-3	전	77	77	77	-	77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8	내곡동	147-6	도	5	5	5	-	5	국	국토교통부			
19	내곡동	145-4	도	30	30	30	-	30	국	국토교통부			
20	내곡동	142-1 0	전	88	88	88	-	88	심**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21	내곡동	142-9	도	27	27	27	-	27	국	국토교통부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 권리의종 류
22	내곡동	산8-6	도	1	1	1	-	1	국	국토교통부			
23	내곡동	92-7	도	414	414	414	-	414	국	국토교통부			

- 중로3-5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합 계				2,022	1,986	1,758	감)25	1,733					
1	내곡동	산110-3	도	1	1	1	-	1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2	내곡동	140-8	도	31	31	31	-	31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3	내곡동	140-6	도	9	9	9	-	9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4	내곡동	140-4	전	5	5	5	-	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5	내곡동	601-20	도	12	12	12	-	12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6	내곡동	601-21	도	37	37	37	-	37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7	내곡동	139-4	도	91	91	91	-	91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8	내곡동	138-4	전	1	1	1	-	1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9	내곡동	139-5	전	97	86	86	-	8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0	내곡동	139-1	도	53	53	6	-	6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1	내곡동	97-12	도	9	9	9	-	9	국	국토교통부			
12	내곡동	97-31	임	790	790	790	-	79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3	내곡동	97-30	임	332	332	332	-	33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4	내곡동	97-36	임	25	-	25	감)25	-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5	내곡동	97-34	임	39	39	39	-	39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6	내곡동	97-35	임	24	24	24	-	24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7	내곡동	103-6	전	136	136	136	-	13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8	내곡동	102-11	도	328	328	122	-	122	성만개발(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9	내곡동	102-8	임	2	2	2	-	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 139-5번지 지적면적 오류정정
 ※ 97-36번지 공동주택획지로 편입 (759번지로 합병)

- 중로3-51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 권리의종 류
합 계				2,463	2,551	2,091.9	증)0.1	2,092					
1	내곡동	99-2	전	275	275	104	-	104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2	내곡동	601-1 4	도	37	37	2	-	2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3	내곡동	98-1	전	488	488	406	-	406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4	내곡동	601-1 6	도	51	51	1.9	증)0.1	2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5	내곡동	100	전	124	124	124	-	124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6	내곡동	80-3	답	125	125	125	-	125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7	내곡동	601-1 2	도	194	194	194	-	194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8	내곡동	79-3	답	181	181	181	-	181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9	내곡동	78-2	답	1	1	1	-	1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10	내곡동	101-3	전	328	328	328	-	328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1	내곡동	102	임	22	22	22	-	22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2	내곡동	102-5	임	120	120	120	-	120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3	내곡동	102-6	임	58	58	58	-	58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4	내곡동	106-9	대	28	28	28	-	28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5	내곡동	102-1	임	191	191	191	-	191	㈜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16	내곡동	102-1 1	도	328	328	206	-	206	성만개발 (주)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 지적면적 합계 오류 정정

- 기타 도로개설을 위해 사용할 토지(중로2-68)

구 분	소재지	지 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 권리의종 류
합 계				12,410	12,413	1,093	증)3	1,096					
1	내곡동	86-1	임	199	199	116	-	116	성만개발 (주)외2인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2	내곡동	86-4	임	379	379	70	-	70	성만개발 (주)외1인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4층 (포남동)			
3	내곡동	85	임	3,281	3,281	210	-	210	전** 외1인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4	내곡동	80-4	답	48	48	48	-	48	양**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5	내곡동	142-7	전	683	683	90	-	90	(주)하나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6	내곡동	147-5	도	133	133	53	-	53	국	국토교통부			
7	내곡동	145-3	도	11	11	11	-	11	국	국토교통부			
8	내곡동	142-1 1	전	196	196	79	-	79	삼**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9	내곡동	142-3	도	39	39	37	-	37	국	국토교통부			
10	내곡동	153-4	도	41	41	13	-	13	국	국토교통부			
11	내곡동	산8-2	도	2,181	2,181	22	-	22	국	국토교통부			
12	내곡동	92-2	도	5,127	5,127	252	-	252	국	국토교통부			
13	내곡동	92-8	도	92	95	92	증)3	95	국	국토교통부			

※ 92-8번지 지적면적 오류 정정

강릉시 고시 제2024-20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금진온천 확대지구」지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실효되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6. 2.

강릉시장

- 1. 명 칭: 금진온천 확대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실효
- 2. 실효지역: 강동면 심곡리·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원
- 3. 실효면적: 2,714,031㎡(528필지)
- 4. 실효일자: 2024. 6. 2.
- 5. 실효사유 : 제한지역 지정 기간 만료
-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7.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릉시청 관광개발과(☎ 033-640-4597)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강릉시 고시 제2024-202호

강릉시 회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02-91호(2002.4.29)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회산동 503-1번지 일원 “강릉시 회산동 도시계획 시설(도로: 소로1-73호선)개설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강릉시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회산동 50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73호선) 사업
- 2) 명 칭: 회산 힐스테이트 도시계획도로(소로1-73)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연장	금회 시행						
기정	소로	1	73	10	국지 도로	297	182.55 (114.45)	대 3-16 회산 201-2	중 1-20 회산 533-4	일반도로		강원도고시 제2002-91호 (2002.4.29.)	-

※ ()는 기계설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3 (홍제동1001)
- 2) 성 명: 강릉시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6년 12월 31일

바. 자금조달계획

- 1) 총 사업비: 119백만원
-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성 후 강릉시에 귀속될 예정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 1-73호선	L=182.55m, B=10m A=1,867㎡	도시계획시설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귀속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9,548	1,867					
1	회산동	532-11	임	24	24	강릉○○주 택조합	강릉시 회산로			
2	회산동	511-1	답	27	27	강릉○○주 택조합	강릉시 회산로			
3	회산동	510-5	답	411	295	강릉○○주 택조합	강릉시 회산로			
4	회산동	510-6	답	41	41	강릉시				
5	회산동	588	구	11122	40	국	환경부			
6	회산동	503-1	답	213	213	강릉시				
7	회산동	504-3	전	44	44	강릉시				
8	회산동	504-4	대	54	54	강릉시				
9	회산동	501-3	전	222	222	강릉시				
10	회산동	445-4	임	308	288	강릉시				
11	회산동	590	도	1,214	76	국	건설부			
12	회산동	510-4	답	98	94	강릉○○주 택조합	강릉시 회산로			
13	회산동	512	답	2,083	2	정○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4	회산동	509-1	답	27	27	강릉시				
15	회산동	508-1	답	1	1	강릉시				
16	회산동	507-1	답	21	21	강릉시				
17	회산동	505-1	전	85	85	강릉시				
18	회산동	587-6	도	3533	293	국	건설부			
19	회산동	500-2	대	18	18	강릉시				
20	회산동	500-3	대	2	2	강릉시				

강릉시 고시 제2024-203호

강릉시 회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4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02-91호(2002.4.29)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회산동 208-2번지 일원 “강릉시 회산동 도시계획 시설(도로: 중로2-14호선)개설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 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강 령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회산동 20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14호선)사업
- 2) 명 칭: 강릉시 회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4호선)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연장	금회 시행						
기정	중로	2	14	15	보조 간선 도로	600	296 (304)	중 3-16 회산 395-1	중 1-4 회산 185-2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2002-91호 (2002.4.29.)	-

※ ()는 기개설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3 (홍제동1001)
- 2) 성 명: 강릉시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6년 12월 31일

바. 자금조달계획

- 1) 총 사업비: 775백만원
-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성 후 강릉시에 귀속될 예정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비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2-14호선	L=296m, B=15m A=4,053㎡	도시계획시설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귀속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7,263	4,053					
1	회산동	204-8	답	319	306	강릉시				
2	회산동	207-2	도	445	298	강릉시				
3	회산동	207-3	답	495	476	강릉시				
4	회산동	208-2	답	2,716	2,716	강릉시				
5	회산동	216-4	대	44	44	강릉시				
6	회산동	216-5	전	2	2	강릉시				
7	회산동	217-2	대	46	41	강릉시				
8	회산동	218-1	답	92	13	강릉시				
9	회산동	581-28	도	110	1	강릉시				
10	회산동	583-2	도	2,994	156	국(건설부)				

동해시 공고 제2024-715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어달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동해시청 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7.

동 해 시 장

- 1. 목 적 : 동해 도시관리계획(어달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 2. 기 간 : 2024.6.7. ~ 2024.6.21.(14일간)
- 3. 열람장소 : 동해시청 도시과 (☎ 033-530-2212)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	6 ~20	보조 간선 도로	1,415	중로2-18 어달동 188-10대	소로1-15 목호동 85-91입	일반 도로		강원고제81호 (1981.7.20)	동해고제89호 (2021.6.11)
변경	중로	1	13	6 ~20	보조 간선 도로	1,372	교통광장20 어달동 56-6대	소로1-15 목호동 85-91입	일반 도로		강원고제81호 (1981.7.20)	동해고제89호 (2021.6.11)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62	중로2-18 어달동 192도	소로1-11 어달동 185-4구	일반 도로		동해고제45호 (1996.12.26)	동해고제50호 (2020.4.10)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221	교통광장20 어달동 59대	소로1-11 어달동 185-4구	일반 도로		동해고제45호 (1996.12.26)	동해고제50호 (2020.4.10)

○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0	광장	교통광장	어달동 52-4번지 일원	-	증)4,537	4,537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 열람 기간 내 도시과로 서면제출 (서식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게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033-530-2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고시 제2024-124호

횡성 군계 획시 설(교 통시 설 : 중 로3-417호 선)사 업 실 시계 획 인 가 고 시

횡성 군계 획시 설(교 통시 설 : 중 로3-417호 선)사 업 실 시계 획에 대 하여 「국 토의 계 획 및 이 용에 관 한 법 률」 제 91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00조에 따 라 실 시계 획 인 가 고 시 합 니 다.

2024년 6월 7일

횡 성 군 수

1. 사 업시 행 지의 위 치 : 강 원 특 별 자 치 도 횡 성 군 횡 성 읍 조 곡 리 521번 지 일 원

2. 사 업의 종 류 및 명 칭

- 사 업의 종 류 : 횡 성 군 계 획 시 설 (교 통 시 설 : 중 로 3-417호 선) 사 업
- 사 업의 명 칭 : 횡 성 조 곡 농 공 단 지 진 입 도 로 개 설 사 업

3. 사 업의 면 적 또는 규 모

노 선 명	총 결 정 현 황	기 시 공	금 회 시 공	향 후 계 획	비 고
중 로 3-417호 선	연 장 : 486m 폭 원 : 11~15m	-	연 장 : 486m 폭 원 : 11~15m	-	

4. 사 업시 행 자의 성 명·주 소

- 성 명 : 횡 성 군 수 (투 자 유 치 과)
- 주 소 : 강 원 도 횡 성 군 횡 성 읍 태 기 로 15

5. 사 업의 착 수 및 준 공 예 정 일

- 실 시 계 획 인 가 일 ~ 2025. 12. 31.

6. 수 용 또는 사 용 할 토 지 또는 건 물의 소 재 지·지 반·지 목 및 면 적, 소 유 권 과 소 유 권 외의 권 리의 명 세 및 그 소 유 자 권 리 자의 성 명·주 소 : 붙 임 참 조

7. 국 토의 계 획 및 이 용에 관 한 법 률 제 99조의 규 정에 의 한 공 공 시 설 등 의 귀 속 및 양 도에 관 한 사 항 : 해 당 없 음

8. 공 익 사 업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8조의 규 정에 의 한 손 실 보 상 협 의 사 항 : 붙 임 참 조

■ 붙임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권리 종류	성명	
합 계				220,044.8	14,056.0	-	-	-	-	
1	횡성읍 조곡리	7-1	답	28.0	3.0	-	국토교통부	-	-	
2	횡성읍 조곡리	10-2	대	334.0	39.0	-	김O길	근저당	OO은행	
3	횡성읍 조곡리	10-3	잡	589.0	96.0	-	김O길	-	-	
4	횡성읍 조곡리	11-10	구	16.0	16.0	-	농림축산식품부	-	-	
5	횡성읍 조곡리	12-4	도	420.0	5.0	11/420	국토교통부	-	-	
						409/420	박O형	-	-	
6	횡성읍 조곡리	16	유	3,835.0	35.0	-	농림축산식품부	-	-	
7	횡성읍 조곡리	20	답	3,203.0	24.0	1/2	강O덕	-	-	
						1/2	홍O표	-	-	
8	횡성읍 조곡리	24	답	2,912.0	116.0	1/2	강O덕	-	-	
						1/2	홍O표	-	-	
9	횡성읍 조곡리	25	전	1,914.0	106.0	-	길O호	근저당	OO은행	
10	횡성읍 조곡리	29	목	1,626.0	122.0	-	신O식	근저당	OO은행	
11	횡성읍 조곡리	29-5	임	2,887.0	1,228.0	-	횡성군	-	-	
12	횡성읍 조곡리	45-18	전	42,374.0	2,420.0	6030.5/ 42374	(주)청OOO오	-	-	
						36343.5 /42374	김O호	-	-	
13	횡성읍 조곡리	45-19	전	90013.0	251.0	-	횡성군	-	-	
14	횡성읍 조곡리	316-3	도	20,747.0	8.0	-	국토교통부	-	-	
15	횡성읍 조곡리	519	창	822.0	43.0	-	김O희	근저당	OO은행	
16	횡성읍 조곡리	519-1	대	4,768.0	58.0	-	횡OOOOOO합	근저당	OO은행	
								근저당	(주)팜OO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권리 종류	성명	
17	횡성읍 조곡리	519-5	도	268.0	3.0	-	국토교통부	-	-	
18	횡성읍 조곡리	519-8	창	3.0	3.0	-	김O희	근저당	OO은행	
19	횡성읍 조곡리	520	구	227.0	105.0	-	농림축산식품부	-	-	
20	횡성읍 조곡리	520-1	구	21.0	21.0	-	농림축산식품부	-	-	
21	횡성읍 조곡리	522	답	1,257.0	485.0	-	김O명	-	-	
22	횡성읍 조곡리	536	도	578.0	33.0	-	국토교통부	-	-	
23	횡성읍 조곡리	537	도	376.7	177.3	-	농림축산식품부	-	-	
24	횡성읍 조곡리	538	도	281.5	132.0	-	국토교통부	-	-	
25	횡성읍 조곡리	539	도	2.0	2.0	-	국토교통부	-	-	
26	횡성읍 조곡리	540	도	91.4	91.4	-	국토교통부	-	-	
27	횡성읍 조곡리	541	도	235.7	235.7	-	국토교통부	-	-	
28	횡성읍 조곡리	542	도	145.1	145.1	-	국토교통부	-	-	
29	횡성읍 조곡리	543	도	33.2	3.0	-	국토교통부	-	-	
30	횡성읍 조곡리	544	도	2.5	2.5	-	기획재정부	-	-	
31	횡성읍 조곡리	547	도	39.7	5.0	-	국토교통부	-	-	
32	횡성읍 조곡리	산35	임	38,989.0	7,204.0	-	밀000000000회	구분지상권	한국철도 시설공단	
33	횡성읍 조곡리	산36	임	1,006.0	838.0	-	남0000000000 중	-	-	

영월군 고시 제2024-105호

영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영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의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영 월 군 수

- 가. 결정(변경) 취지 : 군계획시설 조성 현황 정정 및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금회 시설 정비
 -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주천면 일원
 - 다. 영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과 같음
 - 라. 영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영월군 도시과 비치)
- 1. 영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1	16~20	보조 간선	522	중2-1 영흥리 858-3	대1-1 덕포리 747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73호 (1978.12.7)	영월 도시
변경	중로	1	11	16~20	보조 간선	522	중2-1 영흥리 845-11	2호광장 덕포리 574-55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73호 (1978.12.7)	
기정	중로	2	1	15~16	보조 간선	784	중1-6 하송리 243-1	중1-1 영흥리 846-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7-63호 (1977.4.19)	영월 도시
변경	중로	2	1	15~16	보조 간선	784	중1-6 하송리 253-31	중1-11 영흥리 845-1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7-63호 (1977.4.1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210	중3-7 덕포리 407-2	소3-147 덕포리 428-2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영월 도시
변경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210	중3-7 덕포리 407-2	소3-147 덕포리 428-2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기정	중로	3	1	12	주간 선	3,319	중로2-1 구래리 산53-22	구래리 동측 구역계 구래리 산1-3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04호 (1978.6.10)	상동 도시
변경	중로	3	1	12	주간 선	3,319	중로2-1 구래리 산53-22	구래리 동측 구역계 구래리 산1-3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04호 (1978.6.10)	
기정	소로	2	33	9	국지 도로	369	소2-34 주천리 산33	소2-32 주천리 1246-5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0-94호 (2010.11.26)	주천 도시
변경	소로	2	33	9	국지 도로	369	소2-34 주천리 산33	소2-32 주천리 1246-5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0-94호 (2010.11.26)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
 - 도로 :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1	중로 1-11	○가중점명 정정 - 기점 : 중로2-1(영흥리 858-3) → 중로2-1(영흥리 845-11) - 종점 : 대로1-1(덕포리 747) → 2호 광장(덕포리 574-55)	○기결정된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가중점명 정정
중로 2-1	중로 2-1	○가중점명 정정 - 기점 : 중로1-6(하송리 243-1) → 중로1-6(하송리 253-31) - 종점 : 중로1-1(영흥리 846-3) → 중로1-11(영흥리 845-11)	○기결정된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가중점명 정정
소로 1-13	소로 1-13	○선형 조정 - 폭원 : 10m - 연장 : 210m	○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한 선형 조정
중로 3-1	중로 3-1	○선형 조정 - 선형 조정 연장 : 308m	○미개설 구간 내 건축물 편입에 따른 개설 현황을 반영한 선형 조정
소로 2-33	소로 2-33	○선형 조정 - 폭원 : 9m - 연장 : 369m	○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한 선형 조정

나.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학교	주천 중·고교	주천면 주천리 1430번지 일원	101,089	감)1,808	99,281	강원도고시 제1983-64호 (83.04.28)	주천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

■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학교	○면적 축소 - 101,089㎡→99,281㎡(감 1,808㎡)	○학교 조성 현황 및 현황 도로 제척에 따른 변경

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군청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일원	62,440	-	62,440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영월 도시
변경	6	공공청사	기상대	영월읍 하송리 322번지 일원	19,580	감)9	19,571	강원도고시 제2003-145호 (2003.6.28)	영월 도시
변경	7	공공청사	교육청	영월읍 하송리 306-2번지 일원	12,730	증)9	12,739	강원도고시 제2003-145호 (2003.6.28)	영월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시설 경계 조정(면적 변경 없음) - 62,440㎡→62,440㎡	○조성 현황을 반영한 시설 경계 조정
6	공공청사	○면적 축소 - 19,580㎡→19,571㎡(감 9㎡)	○당초 면적(20,397㎡) 오기 사항 정정 및 도로 중복 구간 제척(826㎡)에 따른 변경
7	공공청사	○면적 증가 - 12,730㎡→12,739㎡(증 9㎡)	○당초 면적(13,349㎡) 오기 사항 정정 및 도로 중복 구간 제척(610㎡)에 따른 변경

정선군 공고 제2024-668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사업(철도, 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군계획시설(철도, 광장) 사업(사업명 : 태백선 사북역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8-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철도, 광장)
- 2) 명 칭 : 태백선 사북역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일반철도	태백선	<input type="checkbox"/> L=38,602m, A=383,680㎡ - 사북역 (A=46,678㎡) - 민동산역 (A=41,995㎡) - 자미원역 (A=7,740㎡) - 예미역 (A=30,800㎡)	<input type="checkbox"/> 사북역 신축 A=10,842㎡ - 건축면적 1,071㎡ - 주차장 346㎡ - 조경부지 245㎡ - 관리부지 9,180㎡	
교통광장	사북역전광장	<input type="checkbox"/> A=1,571㎡	<input type="checkbox"/> 광장 A=566㎡ - 광장,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등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 2)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8.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4. 6. 7. ~ 6. 21.)

사. 공람장소 : 정선군 시설국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철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0-3	철	8,106	8,106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2	사북읍 사북리	378-13	철	896	896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한국철도공사			
3	사북읍 사북리	산150-1 5	철	1,840	1,840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한국철도공사			
계				10,842	10,842					

● 토지조서(교통광장)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0-1 1	철	802	9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2	사북읍 사북리	산150-1 2	철	806	62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3	사북읍 사북리	산150-1 6	철	196	85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			
4	사북읍 사북리	산150-1 7	철	77	4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			
5	사북읍 사북리	산150-1 8	철	169	164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			
6	사북읍 사북리	378-14	도	227	206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			
7	사북읍 사북리	378-3	도	807	36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계				3,084	566					

양양군 고시 제2024-61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양양군 고시 제2023-182(2024. 9. 1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시설:궤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 내용]

가. 인가내용: 본문 참조

나. 취소(폐지) 사유 : 사업시행자의 취하 요청[삭도추진단-1111호(2024. 6. 4.)]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취소

2024년 6월 7일

양 양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양군 서면 오색리 49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양양 군관리계획(시설:궤도) 사업
- 명 칭: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정현황	기 시 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비고
	궤도시설	77,828㎡	-	77,828㎡	-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양군수
- 주 소: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2,839,037	77,828					
1	서면 오색리	산1	임	22,762,964	55,137	산림청				
2		산1-10	도	10,016	211	건설부				
3		산34	임	26,182	1,605	조*수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7*, 10*동 30*호			
4		산34-2	임	5,886	562	양양군				
5		산104	임	4,587	1,523	양양군				
6		산114	임	264	66	산림청				
7		산114-1	임	430	171	산림청				
8		494	전	3,736	1,721	양양군				
9		495-1	전	2,400	2,400	강원도				
10		495-3	도	288	277	양양군				
11		466	잡	10,512	9,829	양양군				
12		466-3	임	10,304	2,858	양양군				
13		497-3	잡	328	328	양양군				
14		498-2	잡	1,140	1,140	양양군				

사. 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